2024회계연도
국방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국 방 부	소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병 무 청	소관
방위사업청	소관

2025. 9.

국 방 위 원 회

【 목 차 】

Ⅰ. 소관부처 회부 결산 ····· 1

Ⅱ. 심사경과 ····· 3

Ⅲ. 제안설명의 요지 ····· 5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11

Ⅴ. 대체토론 요지 ····· 335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336

Ⅶ. 심사결과 ····· 337

Ⅷ. 부대의견 ····· 338

Ⅸ. 소수의견의 요지 ····· 339

Ⅹ. 시정요구사항 ····· 340

2024회계연도 국방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2025. 9. .

국방위원회

Ⅰ. 소관부처 회부 결산

1. 국방부 소관

○ 세입세출결산

- 일반회계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 기금결산

- 군인연금기금
- 군인복지기금

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 세입세출결산

- 일반회계

3. 병무청 소관

○ 세입세출결산

- 일반회계

4. 방위사업청 소관

○ 세입세출결산

- 일반회계

Ⅱ.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5. 5. 30.

2. 회부일자 : 2025. 6. 2.

3. 상정 및 의결일자

가. 국방부 소관

-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 8. 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5. 8. 27.)
  상정, 축조심사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5. 9. 2.)
  축조심사, 원안의결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 9. 2.)
  상정, 소위원회 심사보고, 원안의결

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 8. 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5. 9. 2.)
  상정, 축조심사, 원안의결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 9. 2.)
  상정, 소위원회 심사보고, 원안의결

다. 병무청 소관

-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 8. 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5. 9. 2.)
  상정, 축조심사, 원안의결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 9. 2.)
  상정, 소위원회 심사보고, 원안의결

라. 방위사업청 소관

-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 8. 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5. 9. 2.)
  상정, 축조심사, 원안의결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 9. 2.)
  상정, 소위원회 심사보고, 원안의결

Ⅲ. 제안설명의 요지

1. 국방부 소관

(국방부장관 안 규 백)

2024년 회계연도 국방부 세출예산 현액은 44조 547억 원이며 42조 5,048억 원을 집행하고 7,787억 원을 이월, 7,711억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462억 원을 징수하였고 이 중 4,031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2조 7,286억 원이며 이 중 41조 4,572억 원을 집행하였고 6,709억 원은 이월, 6,002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6,709억 원은 대부분 시설공사 및 장비계약의 지연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6,002억 원은 초급간부 획득 저조에 따른 군인 인건비와 시설공사 및 장비도입 집행잔액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654억 원이고 이 중 미군기지 이전사업 등에 4,765억 원을 지출하였고 356억 원은 이월, 1,533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607억 원이며 이 중 군사시설 이전은 5,708억 원을 지출하였고 723억 원은 이월, 176억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군인연금기금은 4조 3,639억 원을 조성하였고 연금지급금 등으로 4조 3,452억 원을 지출하였고 187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군인복지기금은 9,659억 원을 조성하였고 복지시설 운영 및 전세자금 지원 등에 6,076억 원을 지출하였고 3,562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2. 병무청 소관

(병무청장 홍 소 영)

존경하는 성일종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국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2024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결산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및 현역병 충원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서 이루어진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3600만 원 중 징수결정액은 5억 5100만 원으로 이 중 4억 44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억 7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1억 700만 원은 국외여행 미귀국자 귀국보증인 체납 과태료 및 징계부과금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118억 7300만 원으로 이 중 94.9%인 3908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9억 81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병역의무자 지원과 인건비 사업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재무 결산입니다.

2024년 말 기준 자산은 전년 대비 30억 8400만 원 증가한 3802억 9800만 원이고 부채는 전년 대비 1226억 2900만 원 증가한 1763억 2300만 원입니다.

3.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사업청장 석 종 건)

존경하는 성일종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위사업청에 주시는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한 해 안보를 기반으로 한 신성장 동력을 견인하고 국방 환경 변화에 대비한 첨단 전력 확보, 방산 육성과 방산 수출 지원 강화를 통한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여 충실히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축과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하고 무기 획득체계 혁신 및 범정부적 방산 수출 지원을 통해 국가안보와 방산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는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454억 원이며 1조 1687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5450억 원을 수납하였고 6237억 원은 미수납 상태입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FMS 운용수익금과 계약정산액이며 주요 미수납 내역은 지체상금과 물품대금 반환금입니다. 이는 소송 등 절차로 인해 징수가 지연되어 미수납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7조 9167억 원입니다.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방산업체의 경영 여건 개선과 방위력 개선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17조 1400억 원을 지출하여 95.7%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2962억 원이며 4805억 원은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년 말 기준 자산은 전년 대비 2조 6600억 원 증가한 31조 6407억 원이고 부채는 전년 대비 4794억 원 증가한 5003억 원입니다.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국방부 소관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1. 결산 총괄

○ 2024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재정구조는 일반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그리고 군인연금기금과 군인복지기금으로 이루어져 있음.

가. 세입 및 기금수입 결산

○ 2024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세입 및 기금수입 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액 6조 6,960억원보다 5,925억원 증가한 7조 2,885억원을 징수결정하였고, 그 중 7조 1,031억원이 수납되고 1,850억원이 미수납되었음.

[2024년도 세입 및 기금수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2025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일반회계	241,897	546,150	403,060	256	142,834	329,476
주한미군기지 이전특별회계	642,621	518,543	512,053	-	6,490	572,137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	576,701	950,997	948,879	-	2,118	1,500,274
군인연금기금	4,382,943	4,375,739	4,363,884	0	11,855	4,605,166
군인복지기금	851,806	897,049	875,202	114	21,732	1,011,823
합 계	6,695,968	7,288,478	7,103,078	370	185,030	7,672,894

주: 여유자금회수 및 운용액 순계 기준

주: 기금 예산액은 수정액 기준

○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이 5,462억원으로 예산액 2,419억원보다 3,043억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중 4,031억원이 수납되었음. 징수결정액은 재산수입(198억원), 경상이전수입(4,427억원),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824억원), 관유물매각대(5억원), 기금전입금(7억원)임.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는 예산액 6,426억원보다 1,241억원이 감소한 5,185억원을 징수결정하고 5,121억원을 수납하였음.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는 예산액 5,767억원보다 3,743억원이 증가한 9,510억원을 징수결정하고 9,489억원을 수납하였음.

○ 군인연금기금은 예산액 4조 3,829억원보다 72억원이 감소한 4조 3,757억원을 징수결정하고 4조 3,639억원을 수납하였으며,

군인복지기금은 예산액 8,518억원보다 452억원이 증가한 8,970억원을 징수결정하고 8,752억원을 수납하였음.

나. 세출 및 기금지출 결산

○ 2024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세출 및 기금지출 결산 총액은 47조 7,439억원으로 일반회계 41조 4,575억원,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4,765억원,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5,708억원, 군인연금기금 4조 3,639억원, 군인복지기금 8,752억원임.

[2024년도 세출 및 기금지출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5년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이체					
일반회계	41,771,198	967,166	±522,209	△9,782	42,728,582	41,457,547	670,866	600,169	43,540,241
주한미군 기지이전 특별회계	642,621	22,767	-	-	665,388	476,499	35,554	153,335	572,137
국방·군사 시설이전 특별회계	576,701	84,031	±53,783	-	660,732	570,798	72,321	17,613	1,500,274
군인 연금기금	4,382,943	-	-	-	4,382,943	4,363,884	-	19,059	4,605,166
군인 복지기금	851,806	3,816		-	855,622	875,202	5,379	33,875	1,011,823
합 계	48,225,269	1,077,780	±575,992	△9,782	49,293,267	47,743,930	784,120	824,051	51,140,143

주: 여유자금회수 및 운용액 순계 기준

○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2조 7,286억원으로 그 중 41조 4,575억원을 지출하였고, 6,709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002억원임.

○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654억원으로 그 중 4,765억원을 지출하였고, 356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533억원임.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의 경우 세출예산 현액은 6,607억원으로 5,708억원을 지출하였으며, 723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176억원은 불용하였음.

○ 군인연금기금은 지출 예산현액 4조 3,829억원보다 190억원이 감소한 4조 3,639억원을 지출하였고, 군인복지기금은 지출 예산현액 8,556억원보다 196억원이 증가한 8,752억원을 지출하였음.

2. 재원별 결산 내역

가. 일반회계

(1) 세 입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5,461억 5,000만원 중 4,030억 6,000만원이 수납되었고, 2억 5,600만원이 불납결손, 1,428억 3,4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 재산 수입	16,760	19,847	18,078	6	1,763
- 관유물대여료	14,951	17,555	15,799	6	1,750
- 기타재산수입	1,809	2,292	2,279	0	13
□ 경상이전수입	154,534	442,720	303,516	250	138,954
- 벌금 및 몰수금 등	5,147	18,846	5,020	0	13,826
- 변상금 및 위약금	28,713	56,763	32,518	47	24,198
- 기타 경상이전수입	120,674	367,111	265,978	203	100,930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67,340	82,396	80,279	0	2,117
- 병원 수입	17,761	19,010	19,010	0	0
- 면허료 및 수수료	800	677	677	0	0
- 입학금및수업료	570	564	564	0	0
- 항공항만수입	2,067	1,740	1,740	0	0
- 기타 잡수입	46,142	60,405	58,288	0	2,117
□ 관유물매각대	2,531	455	455	0	0
- 토지매각대	2,531	455	455	0	0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군인복지기금전입금 등)	732	732	732	0	0
합 계	241,897	546,150	403,060	256	142,834

○ 미수납액 1,428억 3,400만원 중 대부분은 경상이전수입(1,389억 5,400만원)이며, 이 외 재산수입(17억 6,300만원),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21억 1,700만원)으로 이루어짐.

(2) 세 출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보면, 세출예산현액은 42조 7,286억원이고 그 중 41조 4,575억원을 집행하였으며, 6,709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6,002억원을 불용하였음.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	전용	이용	이체	예산현액 (A)	지출액 (B)	B/A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일반회계 세출	41,771,198	967,166	±392,883	±129,325	-9,782	42,728,582	41,457,547	97.0	670,866	600,169

○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42조 7,286억원은 당초 예산액 41조 7,712억원보다 9,574억원이 증가한 규모임.

전년도 이월액 9,672억원은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현장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및 설계 지연, 감리방식 변경에 따른 계약체결 지연, 대관협의 지연, 동절기 공사 중지 등에 따른 이월 5,

053억원, 군수지원과 관련하여 계약유찰/민원 등에 따른 계약지연, 정산서류 및 업체대금 미청구 등 행정조치 지연 등에 의한 이월 2,477억원,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 차수별 계약기간으로 인한 계약금액 이월, 해외파병부대 재보급수송일정 지연 등에 따른 이월 529억원, 급식 및 피복과 관련하여 보훈·복지단체 소송, 방탄물자 업체 민원제기 및 조달단가 상승에 따른 계약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 236억원, 과학화훈련 체계계약지연 및 생산기간 부족, 시설사업 공기연장 및 절대공기 부족 등에 따른 이월 664억원, 동원훈련장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공기부족, 전투장구 납품업체 대금청구 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 122억원, 의무장비 및 물자 생산지연, 의무시설 사업 연도말 계약으로 인한 이월 218억원, 국방획득정보체계구축 신규 체계구축사업 계약체결 지연, 시설연계 통신공사 시설본공사 지연으로 인한 이월 224억원, 기타 사유로 인한 이월액 148억원 등임.

○ 다음연도 이월액은 6,709억원이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음.

-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현장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및 설계 지연, 감리방식 변경에 따른 계약체결 지연, 대관협의 지연, 동절기 공사 중지 등에 따른 이월 2,890억원, 군수지원 및 협력과 관련하여 업체 납품지연 및 계약지연, 정산서류 및 업체대금 미청구 등 행정조치 지연 등에 의한 이월 1,481억원, 방위비분담금 군

사시설개선 차수별 계약기간으로 인한 계약금액 이월, 해외파병부대 재보급수송일정 지연 등에 따른 이월 971억원, 급식 및 피복과 관련하여 보훈·복지단체 소송, 방탄복 방탄판 원자재 수급문제, 전투복 및 방탄헬멧 납품 지연으로 인한 이월 143억원, 과학화훈련 체계계약 지연 및 생산기간 부족, 시설사업 공기연장 및 절대공기 부족 등에 따른 이월 677억원, 동원훈련장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기부족, 전투장구 납품업체 대금청구 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 95억원, 의무장비 및 물자 생산지연, 의무시설 사업 연도말 계약으로 인한 이월 120억원, 국방급여정보체계 등 신규 체계구축사업 계약이행지연, 시설연계 통신공사 시설본공사 지연으로 인한 이월 153억원, 기타 사유로 인한 이월액 179억원 등임.

○ 이용액 1,293억원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손해배상 사건 대법원판결 선고에 따른 배상금 및 법정보상금 1,180억, 미측 CX-K 현대화, 캠프 험프리스 통신센터 신축, 노후장비 일괄교체 등 사업범위 확대에 따른 한측 분담비용 증가에 따른 부족액 73억원 등임.

○ 전용액 3,929억원은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 1,635억, 배상금 및 보상금 부족분 79억원, ’22년도 군무원인건비 이용·불용액 과다 및 군무원 운영률 하향추세로 인한 ’24년 군무원인건비 과소편성에 따른 부족분 지원 967억원, 병사 정원 대비 현원 증

가 및 간부훈련급식비 과소편성으로 인한 예산 부족분 367억원 등임.

○ 이체액 98억원은 국방부 소속기관인 국립서울현충원을 국가보훈부로 이관함에 따른 인건비, 시설예산 등임.

○ 불용액 6,002억원은 초급부사관 획득 저조에 따른 운영률 하락 등에 따른 군인인건비 1,618억, 급식 및 피복분야에서 민간조리원 채용률 저조로 인한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불용, 피복류 낙찰차액 및 재고물량을 고려한 조달물량 축소 등으로 인한 456억원, 정보화사업 계약 낙찰차액 및 정산잔액 95억원, 장비 획득 및 유지사업 계약 해제 등에 따른 891억,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관련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잔액 1,254억원 등임.

나.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1) 세 입

○ 2024회계연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5,185억 4,300만원 중 5,120억 5,300만원이 수납되었고, 64억 9,0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4년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 재산수입	532	1,266	899	-	367
- 토지대여료	213	1,058	691	-	367
- 기타재산수입	319	208	208	-	-
□ 경상이전수입	736	3,927	694	-	3,233
- 변상금	102	1,601	280	-	1,321
- 기타경상이전수입	634	2,326	414	-	1,912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293	27	20	-	7
- 기타잡수입	293	27	20	-	7
□ 관유물매각대(토지매각대)	155,366	59,002	56,119	-	2,883
□ 전년도 이월금	0	22,767	22,767	-	-
□ 전년도 세계잉여금	52	55	55	-	-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485,642	431,500	431,500	-	-
합 계	642,621	518,543	512,053	-	6,490

(2) 세 출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6,653억 8,800만원이며, 4,764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4년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 미군기지이전사업	27,553	18,313	-	45,866	12,073	3,946	29,847	14,522
- 평택기지이전사업	27,553	18,313	-	45,866	12,073	3,946	29,847	14,522
□ 미군기지이전지원	56,837	4,454	-	61,291	29,313	31,608	370	47,660
- 환경조사 및 치유	54,223	4,340	-	58,563	27,036	31,527	-	45,349
- 기타이전지원	2,614	114	-	2,728	2,277	81	370	2,311
□ 공자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	484,254	-	-	484,254	370,000	-	114,254	432,400
□ 공자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73,977	-	-	73,977	65,113	-	8,864	77,555
합 계	642,621	22,767	-	665,388	476,499	35,554	153,335	572,137

○ 미군기지이전사업 예산현액은 458억 6,600만원으로 평택기지이전사업(국고채무부담행위 포함)비로 120억 7,300만원을 집행하였고, 미군기지이전지원 예산현액은 612억 9,100만원으로 환경조사 및 치유, 기타이전지원 사업비로 293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자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 예산현액은 4,842억 5,400만원으로 이 중 3,700억원을 집행하였고, 예수금 이자 상환 예산현액 739억 7,700만원 중 651억 1,300만원을 지출함.

다. 국방 ·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1) 세 입

○ 2024회계연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9,509억 9,700만원 중 9,488억 7,900만원이 수납되었고, 21억 1,8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024년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 재산 수입	60	214	214	-	-
- 기타재산수입	60	214	214	-	-
□ 경상이전 수입	191	19,032	17,076	-	1,956
- 기타경상이전수입	191	19,032	17,076	-	1,956
□ 관유물매각대	443,075	785,327	785,165	-	162
- 건물매각대	3,521	-	-	-	-
- 토지매각대	439,554	785,327	785,165	-	162
□ 전년도 이월금	-	78,959	78,959	-	-
□ 전년도 세계잉여금	65,910	-	-	-	-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67,465	67,465	67,465	-	-
- 예수금	67,465	67,465	67,465	-	-
- 기금예탁원금회수	-	-	-	-	-
- 기금예탁이자수입	-	-	-	-	-
합 계	576,701	950,997	948,879	-	2,118

(2) 세 출

○ 2024회계연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607억 3,200만원이며,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에 4,905억 8,200만원, 사유재산 정리사업에 726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음.

[2024년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 군시설이전사업	504,439	73,291	+52,215 -52,712	577,233	490,582	71,060	15,591	652,763
□ 사유재산정리	63,776	10,740	+1,568 -1,071	75,012	72,665	1,260	1,087	70,154
□ 예수이자상환	8,486	-	-	8,486	7,551	-	935	9,238
합 계	576,701	84,031	±53,783	660,732	570,798	72,321	17,613	1,500,274

라. 군인연금기금

(1) 개 요

○ 2024회계연도 군인연금기금의 운용 결산총액은 당초 예산액 4조 2,591억 8,400만원보다 1,237억 5,900만원이 증가한 4조 3,829억 4,300만원임. 예산 대비 운용액이 증가한 것은 주로 여유자금 회수 규모가 당초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임.

여유자금 회수액을 포함한 총수입액 4조 3,638억 8,400만원 중 여유자금운용액(186억 6,900만원)을 제외한 순수지출총액은 4조 3,452억 1,500만원임.

[2024년도 군인연금기금의 수입·지출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액		결산액 (B)	증 감	
		당초	수정(A)		(B-A)	%
수입 (자금조달)	자체수입	792,223	792,223	779,642	△12,581	△1.6
	정부내부수입	3,416,961	3,416,961	3,416,961	-	-
	여유자금회수	50,000	173,759	167,281	△6,478	△3.7
합 계		4,259,184	4,382,943	4,363,884	△19,059	△0.4
지출 (자금운용)	사업비	4,040,814	4,366,240	4,344,901	△21,339	△0.5
	기금운영비	315	315	315	-	-
	여유자금운용	218,055	16,388	18,669	2,281	13.9

주: 여유자금회수 및 운용액 순계 기준

(2) 내 용

○ 수입액 4조 3,638억 8,400만원의 세부 내역을 보면,

- 자체수입은 7,796억 4,200만원으로, 재산수입이 403억 600만원, 기여금 등 경상이전수입이 7,393억 3,600만원임.

- 정부내부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3조 4,169억 6,100만원이며,

- 여유자금 회수는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671억 5,700만원, 한국은행예치금회수 1억 2,400만원임.

○ 지출액 4조 3,638억 8,400만원의 세부 내역을 보면,

- 사업비인 군인연금지급으로 4조 3,449억 100만원을 지출하였고,

- 기금운영비로 3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 여유자금 운용은 186억 6,900만원으로,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185억 4,000만원, 한국은행예치금 1억 2,900만원임.

마. 군인복지기금

(1) 개 요

○ 2024회계연도 군인복지기금의 운용 결산총액은 당초 예산액 8,518억 600만원보다 233억 9,600만원이 증가한 8,752억 200만원임. 예산현액 대비 운용액이 증가한 이유는 여유자금 운용이 계획 대비 증가하였기 때문임.

여유자금 회수액을 포함한 총수입액 8,752억 200만원 중 여유자금 운용 지출액(2,655억 5,400만원)을 제외한 순수지출총액은 6,096억 4,800만원임.

[2024년도 군인복지기금의 수입·지출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액		결산액 (B)	증 감	
		당초	수정(A)		(B-A)	%
수입 (자금조달)	자체수입	618,595	618,595	604,905	△13,690	△2.2
	정부내부수입	15,000	15,000	30,058	15,058	100.4
	여유자금회수	218,211	218,211	240,240	22,029	10.1
합 계		851,806	851,806	875,202	23,396	2.7
지출 (자금운용)	사업비	604,958	642,786	607,614	△35,172	△5.5
	정부내부지출	2,301	2,301	2,034	△267	△11.6
	여유자금운용잔액	244,547	206,719	265,554	58,835	28.5

주: 여유자금회수 및 운용액 순계 기준

(2) 내 용

○ 수입액 8,752억 200만원의 세부 내역을 보면,

- 자체수입은 계획액 6,185억 9,500만원의 97.8%인 6,049억 500만원이며,

- 정부내부수입은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및 주거지원보증금 수납금으로 수입계획액 150억원의 200.4%인 300억 5,800만원을 수납하였고,

- 여유자금회수는 수입계획액 2,182억 1,100만원의 110.1%인 2,402억 4,000만원임.

○ 지출액 8,752억 200만원의 세부 내역을 보면,

- 장병복지향상사업 등의 사업비는 지출계획액 6,427억 8,600만원의 94.5%인 6,076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고,

- 정부내부지출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에 따른 이자지급액으로, 계획액 23억 100만원의 88.4%인 20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음.

- 한편, 여유자금운용은 지출계획액 2,067억 1,900만원의 128.5%인 2,655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음.

3. 재무제표 분석

○ 국방부의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중앙관서 전반의 자산·부채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가. 재정상태표

○ 2024회계연도 국방부의 자산은 279조 6,325억원으로 전년대비 6조 4,704억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전년대비 16조 5,379억원이 증가한 280조 2,929억원이며, 순자산은 △6,604억원으로 나타남.

○ 자산은 유동자산 12조 2,081억원, 투자자산 1조 5,572억원, 일반유형자산 265조 5,970억원 등으로 구성됨. 자산은 전기말 대비 6조 4,704억원(2.4%) 증가한 것으로 이는 주로 군수품 도입 및 시설자산 취득 등 일반유형자산이 6조 2,241억원(2.4%) 증가하였기 때문임.

○ 부채는 장기충당부채 268조 502억원, 기타 비유동부채 5조 8,548억원 등으로 구성됨. 부채는 전기말 대비 16조 5,379억원(6.3%) 증가한 것으로 이는 주로 물가상승율 변동 등에 따른 연금충당부채 등 장기충당부채가 16조 4,234억원 증가(6.5%)한 결과임. 그 결과 순자산은 전년대비 10조 675억원 감소하여 △6,604억원을 기록함에 따라 2023년까지 순자산을 보유했던 국방부는 2024년로 순부채로 전환하

게 됨에 따라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었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A)	2023년(B)	증 감	
			A-B	증감률
자 산 합 계(a)	2,796,325	2,731,621	64,704	2.4
유동자산	122,081	118,739	3,342	2.8
투자자산	15,572	16,537	△965	△5.8
일반유형자산	2,655,970	2,593,729	62,241	2.4
무형자산	2,689	2,596	93	3.6
기타비유동자산	13	20	△7	△35.0
부 채 합 계(b)	2,802,929	2,637,550	165,379	6.3
유동부채	32,320	33,629	△1,309	△3.9
장기차입부채	31,559	30,226	1,333	4.4
장기충당부채	2,680,502	2,516,268	164,234	6.5
기타비유동부채	58,548	57,427	1,121	2.0
순 자 산(a-b)	△6,604	94,071	△100,675	△107.0

나. 재정운영표

○ 본 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프로그램순원가는 전년대비 2조 2,157억원 증가한 59조 8,318억원으로 총 15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급여정책(17조 6,667억원), 군인연금(연금정책 / 16조 1,021억원), 군수지원 및 협력(14조 856억원) 등이 있음.

○ 관리운영비는 7,937억원, 비배분비용은 1,858억원, 비배분수익은 5조 4,219억원이며, 재정운영결과(재정운영순원가 - 비교환수익 등)는 55조 3,875억원으로 재정운영 제비용이 수익을 초과하였음[1].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억원, %)

	2024년(A)	2023년(B)	증 감	
			A-B	비 율
Ⅰ. 프로그램순원가	598,318	576,161	22,157	3.8
Ⅱ. 관리운영비	7,937	7,581	356	4.7
Ⅲ. 비배분비용	1,858	2,029	△171	△8.4
Ⅳ. 비배분수익	54,219	42,787	11,432	26.7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553,894	542,984	10,910	2.0
Ⅵ. 비교환수익 등	19	2	17	850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553,875	542,982	10,893	2.0

주: 재정운영결과는 원가(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것으로 재정운영결과가 (+)이면 손실, (-)이면 이익을 의미함.

1) 기업회계의 당기순이익(순손실)과 달리 국가회계에서는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용된 자원(비용)이 중요하므로 원가정보를 앞에 표시하기 때문에 재정운영결과가 (+)이면 비용이 수익보다 많은 것으로서 손실을 의미하고, (-)이면 이익을 의미함. 그러나 정부의 목적이 이익을 남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회계의 경우와는 그 의미가 다름.

다. 순자산변동표

○ 국방부의 기말순자산은 전년도보다 10조 675억원 감소한 △6,604억원으로 이는 본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이 49조 4,822억원, 조정항목이 △4조 1,623억원 발생하였고,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가 55조 3,875억원 발생한 결과임.

○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51조 3,279억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1조 8,457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332억원, 자산재평가이익 △2,105억원 및 기타 순자산의증감 △3조 1,269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4조 1,623억원의 조정이 발생하였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억원, %)

구 분	2024년(A)	2023년(B)	증 감,	
			A-B	비 율
Ⅰ. 기초순자산	94,071	60,657	33,414	55.1
Ⅱ. 재정운영결과	553,875	542,982	10,893	2.0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494,822	490,786	4,037	0.8
Ⅳ. 조정항목	△41,623	85,610	△127,233	△148.6
Ⅴ. 기말순자산 (Ⅰ-Ⅱ+Ⅲ+Ⅳ)	△6,604	94,071	△100,675	△107.0

1. 세출결산 총괄검토

○ 정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에서 국방부 소관 예산현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8.5%, 2021년 8.5%, 2022년 7.6%, 2023년 9.1%, 2024년 9.5%로 2023년부터 증가하는 추세임.

2024년도의 경우 정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451조 5,605억원)에서 국방부 소관 예산현액(42조 7,286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에 비해 0.4%p 증가한 9.5%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2024년 정부 전체 예산현액이 2023년에 비해 0.6% 증가한 것에 비해 국방부 소관 예산현액은 4.3% 증가한데 기인한 것임.

[최근 5년간 정부 대비 국방부 결산내역]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현액	정부전체 (%)	3,904,205 (100.0)	4,258,810 (100.0)	4,978,955 (100.0)	4,490,672 (100.0)	4,515,605 (100.0)
	국방부 (%)	330,627 (100.0)	362,587 (100.0)	379,310 (100.0)	409,571 (100.0)	427,286 (100.0)
	비 중 (%)	8.5	8.5	7.6	9.1	9.5
지출액	정부전체 (%)	3,852,230 (98.7)	4,177,207 (98.1)	4,850,492 (97.4)	4,058,863 (90.4)	4,354,305 (96.4)
	국방부 (%)	321,502 (97.2)	347,394 (95.8)	364,804 (96.2)	389,731 (95.2)	414,575 (97.0)
이월액	정부전체 (%)	14,248 (0.4)	26,477 (0.6)	27,933 (0.6)	20,056 (0.4)	14,416 (0.3)
	국방부 (%)	4,151 (1.3)	9,515 (2.6)	8,596 (2.3)	9,672 (2.4)	6,709 (1.6)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불용액	정부전체	37,728	55,127	100,531	411,753	146,885
	(%)	(1.0)	(1.3)	(2.0)	(9.2)	(3.3)
	국방부	4,975	5,678	5,909	10,168	6,002
	(%)	(1.5)	(1.6)	(1.6)	(2.5)	(1.4)
이체 및 이·전용액	정부전체	27,313	18,801	34,049	18,352	31,229
	(%)	(0.7)	(0.4)	(0.7)	(0.4)	(0.7)
	국방부	4,495	4,916	6,529	3,036	5,222
	(%)	(1.3)	(1.4)	(1.7)	(0.7)	(1.2)

주: 일반회계 기준
자료: 국방부

○ 2024년도 국방부 세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7.0%로서 전년대비 1.8p% 증가하였으며, 정부 전체 세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인 96.4%에 비하여 0.6%p 높음.

○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의 경우 국방부는 2024년도 1.6%로 정부 전체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인 0.3%에 비해 1.3%p 높음[2].

○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의 경우 국방부는 2024년도 1.4%로 정부 전체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인 3.3%보다 1.9%p 낮은데, 이는 정부 전체에 비해 국방부의 이월 및 이·전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임. 국방부는 2024년 공공요금 부족액 1,688억 8,700만원을 이·전용을 통해 충당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따른 성과라기보다는, 이·전용 등을 통해 불용액 비율을 외형상 낮춘 측면이 큼.

2) **국방부** 이월액은 **정부부처 전체 이월액 중 46.5%를 차지**하여 **전 정부부처 중 이월액 순위 1위**를 차지함.

○ 예산의 이월, 불용, 이·전용 등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으므로, 국방부는 이월, 불용, 이·전용 규모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예측 및 관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음.

○ 한편, 2024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현액 대비 이체 및 이·전용 비율은 1.2%로서 정부 전체 예산현액 대비 이체 및 이·전용 비율인 0.7%에 비해 0.5%p 높으며, 2023년 대비 0.5%p 증가하였음.

「국가재정법」에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규정한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보장하고 행정부가 집행단계에서 예산을 임의로 운용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의 이체 및 이·전용은 이에 대한 예외이므로, 가급적 그 규모를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세출 프로그램별 검토

○ 국방부 일반회계는 병력운영과 전력유지 부문으로 나누어지고, 12개 프로그램, 62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됨.

병력운영에는 급여정책, 급식 및 피복, 기금 전출금 프로그램이 있으며, 전력유지에는 국방정보화,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군수지원 및 협력, 군인사 및 교육훈련,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예비전력관리, 책임운영기관 운영,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국방행정지원이 있음.

[최근 5년간 연도별 프로그램 집행실적]

(단위: 억원, %)

사 업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급여정책	예산현액	145,228	153,159	159,588	171,427	179,173
	집행액	145,212	153,144	158,677	168,042	177,179
	집행률(%)	100	100.0	99.4	98.0	98.9
급식 및 피복	예산현액	22,607	25,056	26,134	26,959	26,498
	집행액	22,273	24,320	25,316	26,071	25,899
	집행률(%)	98.5	97.1	96.9	96.7	97.7
기금 전출금	예산현액	30,213	30,798	32,242	33,921	37,176
	집행액	30,129	30,471	32,225	33,921	37,130
	집행률(%)	99.7	98.9	99.9	100	99.9
국방정보화	예산현액	5,838	6,514	7,449	7,575	7,834
	집행액	5,458	6,246	7,165	7,250	7,585
	집행률(%)	93.5	95.9	96.2	95.7	96.8

사 업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예산현액	4,572	5,083	7,679	12,015	15,388
	집행액	4,496	4,658	6,162	9,898	14,941
	집행률(%)	98.3	91.6	80.3	82.4	97.1
군수지원 및 협력	예산현액	53,971	61,642	61,455	66,426	66,292
	집행액	51,847	57,330	58,366	62,360	63,920
	집행률(%)	96.1	93.0	95.0	93.9	96.4
군인사 및 교육훈련	예산현액	6,748	8,300	9,082	9,942	9,403
	집행액	6,120	7,377	8,350	8,896	8,252
	집행률(%)	90.7	88.9	91.9	89.5	87.8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예산현액	38,893	47,662	50,356	54,584	56,115
	집행액	37,201	42,294	44,896	47,920	51,971
	집행률(%)	95.6	88.7	89.2	87.8	92.6
예비전력관리	예산현액	1,378	1,737	2,027	2,863	2,537
	집행액	1,238	1,271	1,695	2,568	2,249
	집행률(%)	89.8	73.2	83.6	89.7	88.6
책임운영기관 운영	예산현액	1,975	2,072	2,193	2,386	2,559
	집행액	1,845	1,853	2,063	2,256	2,499
	집행률(%)	93.4	89.4	94.1	94.5	97.7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예산현액	11,881	12,216	13,477	13,889	16,080
	집행액	8,767	10,501	12,661	13,248	14,987
	집행률(%)	73.8	86.0	93.9	95.4	93.2
국방행정지원	예산현액	7,323	8,348	7,628	7,583	8,232
	집행액	6,916	7,928	7,229	7,301	7,963
	집행률(%)	94.4	95.0	94.8	96.3	96.7

자료: 국방부

○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의 12개 프로그램은 2020년에 비해 2024년 예산

현액이 증가하였음.

○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프로그램은 2020년에 비해 2024년 예산현액이 236.6% 증가하여 총 12개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이는 병 봉급 인상과 관련한 병내일준비지원 사업 추진으로 인한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임.

그 다음으로 높은 예산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사업은 예비군의 편성, 관리, 훈련 체계 등을 발전시켜 예비전력을 정예화시킴으로써 전시 즉시대응 동원지원체계 및 통합방위 작전 수행능력 확립을 위한 ‘예비전력관리’ 프로그램이 84.1%,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프로그램 44.3%, ‘군인사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39.3%,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프로그램 35.3%로 그 뒤를 잇고 있음.

○ 이에 반해 ‘국방행정지원’ 프로그램은 12.4%, ‘급식 및 피복’ 프로그램은 17.2%, ‘군수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은 22.8%, ‘기금 전출금’ 프로그램은 23.0%, ‘급여정책’ 프로그램은 23.4% 증가하여 최근 5년간 국방부 소관 예산현액 증가율 평균인 29.2% 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2024년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 프로그램의 예산현액 대비 평균 집행률은 97.0%인데 이는 전년 대비 1.8p% 증가한 것으로, 이는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군수지원 및 협력,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등 주요 프로그램의 집행률이 전년대비 향상되었기 때문임.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프로그램은 병 내일준비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사업 시작연도인 2022년도 48.4%에서 2023년 76.2%, 2024년 98.5%로 상승함에 따라 프로그램 전체 집행률이 대폭 상승하였음. 군수지원 및 협력프로그램은 장기계속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집행률 제고 노력으로 2023년 93.9% 대비 2.5%p 상승한 96.4%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음.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프로그램은 연차별 사업비 배분기준을 개정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2023년 87.8% 대비 4.8% 증가한 92.6% 집행률을 달성하였음.

○ 이에 반해, '군인사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집행률은 87.8%로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교육시설 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과 과학화훈련장비 도입 지연에 따른 이월 및 불용액 과다에 따른 것으로 향후 동 예산 편성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예비전력관리' 프로그램(88.6%) 또한 예비군훈련장 시설공사 부진으로 인해 타 사업과 비교할 때 집행률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 평균 대비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에 대한 집행률 제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1. 일반회계

가. 총괄 검토

(1) 이·전용 규모 축소를 위해 면밀한 추계를 통한 예산 편성 등의 종합적인 방안 강구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2024년도 국방부의 이용액은 1,293억원이고, 전용액은 3,929억원으로, 이를 합한 이·전용액은 5,222억원으로 예산현액 42조 7,286억원 대비 1.2%이며, 전년 대비 2,186억원 증가하였음.

○ 국방부의 이용액은 전년대비 964억원 감소하였는데 반해, 전용액은 전년대비 3,150억원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전용액이 급증하였음.

○ 2024년도 이·전용액 비율은 전년 0.7% 대비 0.5%p 증가한 1.2%임.

[2024년도 이·전용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이·전용액			비 율 (B / A)
		계 (B)	이용액	전용액	
2024년	427,286	5,222	1,293	3,929	1.2%
2023년	409,571	3,036	2,257	779	0.7%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예산의 이용이란 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에 편성된 예산금액을 상호 융통하는 것을 의미함. 「국가재정법」 제47조제1항은 예산의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3]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4]

예산의 전용이란 예산이 정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상호 융통하는 것을 의미함. 예산의 전용은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는 승인전용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이내에서 각 중앙관서가 실시하는 자체전용으로 구분할 수 있음.[5]

예산의 전용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 또는 자체전용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국가재정법」 제46조제1항의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요건에 부합하는 예산 집

---

3) 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4) 예산전용은 상대적으로 단위사업 이하의 사업 또는 세부적인 예산 과목 상호간 금액을 변경하는 것이지만, 예산 이용은 거시적인 정책방향이 반영되어 있는 분야별, 부문별, 프로그램별 제원배분을 변경하는 행위임. 즉, 예산의 이용은 예산심의를 통하여 국회가 결정한 거시적인 정책결정을 행정부가 임의로 수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예산 이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재정법 이해와 실제, 2012, pp.415-423.

5) 제46조(예산의 전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 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행을 한 경우에만 적법한 예산 집행이라고 할 수 있음.[6]

이에 국회는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의 목적을 벗어난 위법한 예산의 전용 및 그 집행에 대하여는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2024년도 세부사업별 이·전용 내역을 살펴보면, 전용액 규모는 공공요금이 1,635억 2,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용액 규모는 군배상금이 1,180억 4,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전용액 30억원 이상 사업은 15개 세부사업이며, 기타 세부사업들에서는 이용액 1억 8,100만원이고 전용액 188억 9,500만원임.

[2024년도 세부사업별 이·전용액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이용액	전용액
계	522,209	129,325	392,883
ㅇ공공요금(2536-302)	163,522	-	163,522
ㅇ군배상금(7136-301)	118,049	118,049	-
ㅇ군무원인건비(1102-151)	96,708	-	96,708
ㅇ기본급식(1231-301)	36,691	-	36,691
ㅇ방위비분담금 인건비(5131-301)	30,000	-	30,000
ㅇ주요기관 교육용탄약(2339-304)	8,540	-	8,540

6)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집행지침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나.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다. 연도말에 다른 사업예산의 집행 잔액을 전용하여 불요불급한 소요에 충당하여 집행하거나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경우 등
따라서 예산의 전용을 거쳤다 하더라도 예산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집행인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해당할 수 있음.

구 분	계	이용액	전용액
○ 시설유지관리(2536-301)	8,349	-	8,349
○ 연합지휘통신체계사용(5132-302)	7,314	7,314	-
○ 부대운영지원(7131-315)	6,102	-	6,104
○ 군사시설개선(5131-302)	6,020	-	6,020
○ 정비 및 보급시설(2533-302)	4,931	-	4,931
○ 장병여비지원(2233-301)	4,227	-	4,227
○ 병참물자(2332-302)	4,999	-	4,999
○ 수송활동(2336-301)	3,897	-	3,897
○ 인사정책지원(2439-306)	3,781	3,781	-
○ 기 타	19,079	181	18,895

자료: 국방부 제출

○ 이 중 이·전용액이 각각 가장 큰 공공요금 및 군 배상금의 이·전용 규모 확대 요인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먼저, 공공요금의 경우 국방부가 2020년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에 따라 공공요금 예산편성 현실화를 위해 노력한 2021년과 2022년을 제외[7]하고는 연례적으로 집행예상액에 낮은 조정비율[8]을 적용해 집행예상액 대비 예산을 과소편성하고 있음.

7) 2020년 감사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감사요구에 따라 국방부의 공공요금 예산 과소편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음. 2020년 감사원은 국방부가 조정비율을 임의로 낮게 적용하여 공공요금 예산이 매년 과소편성되는 바, 국방부장관에게 공공요금 예산 현실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조정비율을 예산편성 산출기초에서 제외하는 등 공공요금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음.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앞으로 과다한 전용 또는 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요금 예산편성 시 조정비율을 제외하는 등 공공요금을 실소요액 수준으로 적정하게 편성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감사원 지적에 따라 국방부는 2021년에 조정비율을 99%로 적용하고, 2022년에는 조정비율 적용 없이 필요예산 100%를 예산에 반영한 바 있음.

8) 국방부는 공공요금 예산 편성 시 전전년도 집행실적에 최근 공공요금 증가율을 반영한 집행예상액에 대하여 조정비율(국방부 편성 명칭으로는 현실화율)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현실적인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율을 의미함

[국방부 공공요금 사업 예산편성 요구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전전년도 집행실적(A)	B=(1+최근 5년간 증가율)	집행예상액 (C=A×B)	조정비율(D)	요구액 (E=C×D)
2015년	3,732	1.1972	4,468	80	3,578
2016년	3,752	1.1543	4,331	86	3,725
2017년	4,229	-	4,120	93	3,831
2018년	4,350	1.1374	4,948	90	4,453
2019년	4,562	1.1181	5,101	92	4,690
2020년	4,950	1.1107	5,498	90	4,950
2021년	4,913	1.0845	5,370	99	5,299
2022년	5,033	1.0677	5,374	100	5,381
2023년	5,321	1.0494	5,584	96	5,381
2024년	5,649	1.0975	6,200	87	5,381

주1: 2017년도 집행예상액은 다른 해와 달리 전전년도 집행실적에 예산편성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
주2: 2020년 이후 B값은 최근 5년간이 아닌 3년간 증가율을 적용하였음
자료: 국방부 제출

이에 국방부는 공공요금의 부족한 예산을 다른 사업들의 집행잔액 등에서 이·전용을 통해 마련해 공공요금으로 집행하고 있음.

2023년 예산편성시에는 조정비율을 96%로 설정하여 예산이 과소편성됨에 따라, 이용 21회, 전용 174회 등을 통해 부족예산 1,343억 6백만원을 충당함에 따라 2023년도 국회 결산심사에서 “제도개선” 시정요구사항을 받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예산편성에서는 조정비율이 감사원의 감사 당시 수준보다도 더 하락(90%→87%)함에 따라[9] 전용 228건

9)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또는 국회 예산제출 단계에서 예산이 감액된 것이 아니고, 국방부 부처 요구안 작성 단계에서부터 조정비율이 감사원 감사 이전 수준으로 하락한 것은 감사원 지적사항을 준수하겠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등을 통해 부족 예산 1,635억 2,200만원을 충당하였음.

2024년도 공공요금의 전용 규모가 전년대비 292억 1,600만원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도 국방부 이·전용 규모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 다음으로, 군 배상금의 이용규모도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5·18 배상금 등의 일반배상금 지급이 급증함에 따라 2021년 10억원에서 2022년 162억 9,400만원, 2023년 606억 9,300만원, 2024년 1,180억 4,900만원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편성과 예산집행 간의 불일치가 커지고 있음.[10)]

[연도별 일반배상금 편성요구 대비 이용규모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편성요구	예산 (A)	이·전용 등 (B)	현액 (C)	집행 (D)	집행률 (D/A)
'21년	195,780	186,909	1,000	187,909	185,000	99.0
'22년	82,709	82,709	16,294	99,003	98,908	119.6
'23년	27,705	27,705	60,693	88,398	87,898	317.3
'24년	122,089	17,689	118,049	135,738	135,738	767.4

자료: 국방부

○ 한편, 이·전용 규모의 확대는 단순히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의 불일치에 따른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을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국방부 및 각 군이 자체전용권을 활용

10) 자세한 사항은 동 검토보고의 "군 배상금(7136-301): 연례적인 이용 규모의 큰 폭 증가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참조하시기 바람.

하여 무분별하게 과다한 횟수의 예산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국가재정법」제45조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에 해당될 소지도 적지 않은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국방부는 예산 편성과 집행의 불일치를 축소하기 위하여 적정 예산소요에 대한 면밀한 추계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의 요건에 부합하는 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관서운영경비 법인카드 체크카드 사용비중 확대 필요 등

(가) 현황

○ 「국고금관리법」 제24조[11]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지출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관서운영경비)는 예외적으로 일반적인 지출절차[12]를 거치지 않고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11) **「국고금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아 지급하는 출납공무원(이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자금의 범위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③ 관서운영경비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지급할 수 없다.
④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를 금융회사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정부구매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및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지급절차 및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12) 지출원인행위(계약·공사·용역 등)→지출요구(지출관이 회계관계관에게 요구)→지출결의(회계관계관이 확인·결의)→지급명령(지출관이 지급 지시)→국고금 지출(지급처리 완료)

○ 또한 관서운영경비는 원칙적으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정부구매카드의 종류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체크카드)을 규정하고 있음.

(나) 검토의견

① 관서운영경비 법인카드 체크카드 사용비중 확대 필요

○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관서운영경비 집행을 위한 정부구매카드의 종류로 당초에는 신용카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6년 12월 27일 동 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신용카드 외에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체크카드)이 추가된 바 있고,

기획재정부는 2018년 7월 13일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출시 기념식'을 통해 직불형 정부구매카드가 전 부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발표[13]한 바 있음.

○ 2025년도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보면, 신용카드의 경우 연간 매출액에 따라 0.40~1.45%인데 반해, 체크카드는 0.15~1.15%로 나타나 체크카드의 수수료율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어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체크카드 사용이 더 권장된다 할 것임.

13) '직불형 정부구매카드 7월부터 도입',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8.6.9.)

[영세·중소 가맹점 신용카드·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비교]

(단위: %)

구분	연간 매출액	우대수수료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차이
영세	3억원 이하	0.40	0.15	0.25
중소	3~5억원	1.00	0.75	0.25
	5~10억원	1.15	0.90	0.25
	10~30억원	1.45	1.15	0.30

자료: 금융위원회

○ 현재 국방부, 각 군의 정부구매카드 보유 현황을 보면, 총 15,416개의 정부구매카드 중 체크카드 보유비율은 4.3%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국방부는 체크카드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아 체크카드 도입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정부구매카드 보유현황]

(단위: 개, %)

구분	합계	신용카드	체크카드	체크카드 보유비율
국방부	1,107	1,107	0	0
각 군	14,309	13,652	657	4.6
계	15,416	14,759	657	4.3

자료: 국방부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할부가능 및 예금 잔액 여부인데, 국방부 등이 정부업무카드를 할부로 사용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고, 관서운영경비가 국고통장에 분기별로 교부되고 있어 이용한도가 예금잔액이 아닌 신용한도에 기초한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보다 더 선호할 이유가 적은 반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체크카드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더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임.

[신용카드·체크카드 비교]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맹점	신용카드 가맹점	신용카드 가맹점과 동일
이용한도	신용 한도액	예금 잔액
할부구매	가능	불가
결제방법	선구매 후결제	구매와 동시 결제

○ 따라서 국방부 등은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 부담 완화를 위해 체크카드의 발급건수 및 사용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② 각군 관서운영경비 지급범위 초과집행 주의 필요

○ 「국고금관리법」에 따르면, 관서운영경비는 관서를 운영하는데 드는 경비로서 성질상 지출관을 통하여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주로 소액·일상 경비가 대상이 됨.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제52조제1항[14] 및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별지 제1호에는 관서운영경비의 범위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데 관서운영경비 중 운영비(210)로 지출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임.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예산 과목	용 도
인건비 (110)	현역병사봉급, 현역병사 특수지근무수당
운영비 (210)	**건당 500만원이하의 경비**(단, 공과금 및 위원회 참석비, 선거관련 용품제작・인쇄비용・우편요금, 청사임차료,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제한 없음). * 복리후생비, 학교운영비,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는 제외
여비 (220)	전체
특수활동비 (23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수사・정보・경호활동 및 대통령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 제한없음)
업무추진비 (24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제한 없음)

14)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①영 제31조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예산 과목	용 도
직무수행경비(250)	직책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안보비(27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 제한없음)
정보보안비(28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정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 제한없음)
보전금(310)	군인사망보상금,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사망일시금, 병사전역급여금, 예비군여비, 상근 예비역 및 공공봉사제 운영여비, 군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 귀가여비, 군유가족접대비, 포상금 및 상금 법령에 따른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안에 대한 일비 등 실비변상금
민간이전(320)	구호 및 교정비
유형자산(430)	취득단가 50만원(수수료 등 부대경비 포함)미만인 물품의 취득경비
	외국에 있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제세공과금·법정납부금(각종부담금, 보험료, 기여금) 및 인건비 지급시 공제되는 금액중 지출관이 전자자금이체의 방법으로 직접 지출하기 곤란한 경비

○ 그런데 2024년도 각군의 운영비(210) 집행내역을 보면,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따른 관서운영경비 지급범위(건당 500만원)를 초과하여 집행한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어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과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를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 특히, 육군은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상의 관서운영경비 지급범위를 위반한 사례가 일반수용비(210-01) 7건, 피복비(210-03) 2건, 급식비(210-04) 16건 등 총 25건이 발견되고 있음.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초과집행 현황15)]

(단위: 건)

구분	비목	초과 집행 건수	비고
육군	210-01	7	해외파병부대 긴급항공수송(5) 및 긴급행사지원(1), 교통안전체험(1)
	210-03	2	신병 명찰부착비, 정비피복 구매비
	210-04	16	자율운영 급식(4), 지역상생 장병특식(4), 특수근무자 증식(4) 등
해군	210-01	1	국제 해양안전대전 참가비
공군	210-01	4	차량정비능력향상교육비(4)

자료: 국방부

○ 관서운영경비는 소량·다품종 구매 또는 수시로 발생하는 지급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일반적인 지출절차를 거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지출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지출관을 통한 일반적인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악용될 경우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에 의한 방만하고 자의적인 예산지출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사용범위는 반드시 준수될 필요가 있음.

○ 각군은 부대단위로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여 타 부처보다 상당한 수의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재정법령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습득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련 업무의 인수인

15) 1200, 2300, 5100 프로그램에 한정하여 조사함.

계 등이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따라서 각군은 철저한 교육 및 인수인계로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등 재정관련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관서운영경비 지급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나. 세입

(1)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수납실적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미수납 채권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은 PKO[16] 경비보전금, FMS[17] 정산잔액, 과오지급금·군장학금 회수, 연체료 등이 수납되는 비목임.

○ 2024년도 예산액은 1,206억 7,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3,671억 1,100만원 중 2,659억 7,800만원이 수납(수납률 72.5%)되고 2억 300만원은 불납결손되었으며, 1,009억 3,0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18]

[2024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액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기타경상 이전수입	120,674	-	120,674	367,111	265,978	100,930	203	194,877

자료: 국방부

16) PKO(Peace Keeping Operation): 평화유지활동

17) FMS(Foreign Military Sales): 미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해 판매하는 무기 수출 방식

18) 일반회계-기타경상이전수입(59-596)(계획예산관실)

(나) 검토의견

○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의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19]에 해당하는 주요 세입내역은 PKO 경비보전금, FMS정산잔액, 과오지급금·군장학금 회수, 연체료 등임.

○ 연도별 수납률과 미수납액을 보면, 2020년도는 징수결정액 1,565억 6,600만원 중 886억 1,100만원이 수납되어 수납률 56.6%와 미수납액 677억 8,900만원임.

[최근 5년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0	105,034	105,034	105,034	156,566	88,611	56.6	67,789	166
2021	111,353	111,353	111,353	174,831	90,057	51.5	84,505	269
2022	116,904	116,904	116,904	199,031	110,129	55.3	88,576	326
2023	118,774	118,774	118,774	280,240	194,877	69.5	85,203	160
2024	120,674	120,674	120,674	367,111	265,978	72.5	100,930	203

자료: 국방부 제출

2023년도는 징수결정액 2,802억 4,000만원 중 1,948억 7,700만원이 수납되어 수납률 69.5%와 미수납액 852억 300만원이고, 2024년도는 징수결정액 3,671억 1,100만원 중 2,659억 7,800만원이 수납

19)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연체료 및 반환금 등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과목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급여환급금, 국비훈련비 정산금, 과오지급금 회수, 전세보증금 반납금, 전화가입비 반납금 등이 해당됨. 출처: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3.

되어 수납률 72.5%와 미수납액 1,009억 300만원으로, 수납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나, 미수납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24년도 미수납액 1,009억 3,000만원이 전년 852억 300만원 대비 157억 2,700만원 증가한 이유는 손해배상청구 소송[20]에서 국방부에서 승소한 결과 140억대 채권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기타 연체료 등이 패소자의 재력부족 등 사유로 미수납되었기 때문임.

[2024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2023년 미수납액	2024년 미수납액	증감액	미수납사유
계	367,111	265,978	203	85,203	100,930	15,727	
기타경상이전수입	367,111	265,978	203	79,072	96,875	17,803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5,602	3,035	△2,567	납기미도래
				529	1,020	491	징수유예 등

자료: 국방부 제출

○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주요 미수납 채권을 보면, 130밀리 탄약 추진기관 위탁처리 용역에서 발생된 240억 5,000만원이 가장 큰 금액이고, 다음으로 손해배상금 138억 8,300만원, F-4항공기 부품 외주정비 99억 4,300만원, K계열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제조설치 43억 4,500만원, 구상금 지연이자 33억 2,8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20) *㈜미○○○설계, EMP 방호성능 확보 보수공사 미이행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2024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주요 미수납 채권 현황]

(단위 : 백만원)

업체명 (채권발생연도)	발생원인 (계약명)	금액	추진경과 및 조치계획
케○○○텍(2016)	부당이득금 환수 (130밀리 탄약 추진기관 위탁처리 용역)	24,050	자산관리공사 위탁관리 中 현장방문 5회 채무자 재산없음으로 주기적인 재산조회 中
㈜미○○○설계 (2024)	손해배상금 (EMP 방호성능 확보 보수공사 미이행)	13,883	자산관리공사 위탁관리 中 채무자 재산없음으로 주기적인 재산조회 中
주식회사 블○○어 (2014)	부당이득금 환수 (F-4 항공기 부품 외주정비)	9,943	자산관리공사 위탁관리 中 부동산 압류로 3억원 환수 소송 결과 소멸시효 연장 확정 주기적인 재산조회 中
코리○○○팅 주식회사(2019)	계약해제 반환금 (K계열전차 변속기 성능시험장비 제조설치)	4,345	자산관리공사 위탁관리 中 부동산 가압류 결정(2019) 주기적인 재산조회 中
문○인(1994)	구상금 지연이자 (토지매매사기에 따른 구상금)	3,328	자산관리공사 위탁관리 中 현지 회수활동 및 재산명시 요청 자동차 압류 조치 주기적인 재산조회 中
김○림(2009)	변상금에 대한 연체료	3,161	자산관리공사 위탁관리 中 은행 계좌압류 및 급여소득 압류 진행 中 ('24.5월~) 주기적인 재산조회 中
프런○○ ○○어 (2007)	하자발생 손해배상금 (심해훈련장비 납품)	3,930	자산관리공사 위탁관리 中 영업장 확인 및 방문('23.7월) 채무자 주소 및 자산 확인 지속
주식회사 제○○○테크 (2018)	손해배상금 (130밀리 탄약 추진기관 위탁처리 용역)	2,128	자산관리공사 위탁관리 中 재산명시 신청(재산없음) 채무자 소재 및 재산 파악 中 현장방문 ('24.10월)
김○인(2001)	구상금 (중사 재직 중 은행강도)	1,302	공시송달(서울신문) 현지출장 3회, 월 4만원 분납 中 주기적인 재산조회 中
권○식 외 2명 (2008)	변상금에 대한 연체료 (해병1사단 훈련장 부지매입)	1,115	채무자 명의 토지 압류 채무자 근저당원 부채 압류 제3채무자(은행) 추심결정문 전달 주기적인 재산조회 中
조○원,조○열 (2019)	손해배상금 (시설본부 매입 토지 관련)	1,492	자산관리공사 위탁관리 中 재산명시소송 결과 재산없음 확인 주기적인 재산조회 中

자료: 국방부 제출

○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에서 “국방부는 부실자산의 정리와 채권 회수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미수납 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한 미수납 채권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으로 시정처리요구하였음.[21)]

다만, 국회의 시정처리요구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157억원 이상 증가하였기 때문에 미수납채권에 대한 징수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및 징수노력이 보다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방부는 2025년도말까지 국방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채권 관리 전산망의 연계를 추진하고, 채권추심 관련기관과 지속 협조하여 미수납액 채권의 수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1) 국방부는 채권업무 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통한 미수납액 징수 노력, 유관기관 업무협조 및 자료공유, 효율적인 채권관리를 위한 국방부 채권관리 시스템 및 제도 정비, 미수납액 축소를 위한 회수활동 강화 등의 조치결과를 통해 “조치완료” 상태라고 보고하였음.

(2) 기타잡수입(69-691) - 불용 군수품 매각 관련 제도 정비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기타잡수입(69-691)은 재화 및 용역의 비기업적 판매에 따른 수입으로서 고철, 폐지 등 불용품 매각대금, 민간인이 임차한 군 시설에서 이용한 전기 및 수도 등 공공요금임.

○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은 461억 4,200만원이고 603억 8,3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된 금액 중 582억 8,800만원을 수납하고 20억 9,500만원을 미수납하였음.

[2024년도 기타잡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 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기타잡수입	46,142	46,142	-	46,142	60,383	58,288	2,095	-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2024년 국방부의 고철 및 불용군수품 매각 실적 중 1억원 이상 규모는 총 41건, 230억 5,300만원으로 이 중 6건(22억 8,300만원)은 수의계약을 통해 체결되었음.

[2024년 1억원 이상의 고철 및 불용군수품 매각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일반경쟁	수의					총계
		특수임무유공자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고엽제전우회	사회복지법인 굿피플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	
건수	35	1	1	1	2	1	41
금액	20,770	570	603	120	570	420	23,053

자료: 국방부

○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및 동 시행령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 한해 허용[22]되며,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이에 따라 2024년 국방부는 정책실무회의를 통해 특수임무유공자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고엽제전우회, 사회복지법인 굿피플,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을 수의계약 단체로 선정하여 해당 단체들에 고철 등을 수의계약으로 판매하였음.

[2024년 수의계약 단체 선정 결과]

구 분	수의계약 부대	수의계약 단체	계약금액
불용장비	육군 군수사	특수임무유공자회	5.7억원
고철류	육군 종합정비창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5.7억원
		고엽제전우회 (신규단체)	1.2억원
	제1군수지원여단	굿피플	2.85억원
	1군지사(수도군지단)		2.85억원
	공군 군수사 등	한국노인생활지원재단	5.7억원

자료: 국방부

○ 국방부의 2024년 고철 판매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음.

[2024년 국방부 고철 및 불용장비 판매 내역]

계약일자	계약부대	구매자	계약방법	계약단가
'24. 2. 13	해병대 제3170부대	(주)AA[23]	경쟁	황동:6500원/kg 알루미늄:700원/kg 잡철:200원/kg
'24. 2. 7	해병대 제3170부대	BBBB	경쟁	잡철:300원/kg
'24. 4. 9	육군 제3808부대	CCCC	경쟁	강철:1,120원/kg
'24. 5. 20	육군 제2879부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수의	경철:226원/kg 연철:213원/kg 분철:191원/kg 주철:248원/kg 스테인리스:901원/kg 알루미늄:1,740원/kg

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계약일자	계약부대	구매자	계약방법	계약단가
'24. 5. 23	해군 군수사령부	FFFF	경쟁	잡철 : 450원/kg 연철:440원/kg 주철:477원/kg 스테인리스:2,313원/kg 알루미늄:2,215원/kg 황동:7,395원/kg 혼합황동:3,563원/kg
'24. 6. 13	육군 제3130부대	BBBB	경쟁	경철:300원/kg 연철:150원/kg 주철:280원/kg
'24. 6. 17	육군 제2879부대	대한민국고엽제 전우회	수의	경철: 215원/kg 연철:202원/kg 분철:184원/kg 주철:235원/kg 알루미늄:1,651원/kg
'24. 6. 18	해군 군수사령부	DDDD	경쟁	연철 : 435원/kg
'24. 6. 20	해병대 제3170부대	(주)EEE	경쟁	스테인리스:3,000원/kg 알루미늄:6,000원/kg 잡철:250/kg
'24. 6. 21	**육군 제7789부대**	**사회복지법인 굿피플**	**수의**	**경철:77원/kg 연철:38원/kg 주철:72원/kg**
'24. 7. 23	**육군 제5378부대**	**사회복지법인 굿피플**	**수의**	**경철 : 77원/kg 알루미늄:726원/kg 동:3,227원/kg 스테인리스:703원/kg 연철:38원/kg 주철:72원/kg**
'24. 7. 3	육군 제2167부대	(주)GG	경쟁	경철:310원/kg 연철:105원/kg 주철:396원/kg
'24. 7. 9	해병대 제3170부대	(주)GG	경쟁	잡철:300/kg 스테인리스:2,240원/kg
'24. 8. 23	육군 제2217부대	(주)GG	경쟁	경철:138원/kg 연철:70원/kg 동:4,940원/kg 알루미늄:780원/kg
'24. 8. 23	육군 제6112부대	(주)GG	경쟁	경철:154원/kg 중철:000원/kg 동:12,908원/kg 연철:57원/kg 알루미늄:871원/kg 스테인리스:913원/kg
'24. 9. 13	공군 군수사령부	한국노인생활 지원재단	수의	중철:280원/kg 경철:250원/kg 잡철:240원/kg 알루미늄:1,500원/kg 스테인리스:1,000원/kg 동:7,000/kg 폐케이블:1,100/kg 항공기잔해물:180/kg 폐지상배터리:570/kg 폐차량타이어:10/kg 폐공드럼:3,950/EA
'24. 9. 5	해군 군수사령부	BBBB	경쟁	잡철:380원/kg 경철:380원/kg 연철:380원/kg

계약일자	계약부대	구매자	계약방법	계약단가
				주철:380원/kg 스테인리스:1,800원/kg 알루미늄:1,800원/kg 황동:11,000원/kg 혼합황동:6,500원/kg
'24. 10. 23	육군 제5378부대	(주)GG	경쟁	경철:120원/kg 알루미늄:2,000원/kg 동:30,000원/kg 스테인리스:750원/kg 연철:90원/kg 주철:100원/kg
'24. 10. 29	해병대 제3170부대	(주)GG	경쟁	스테인리스:1,532원/kg 알루미늄:1,600원/kg 잡철:361/kg
'24. 10. 29	해병대 제3170부대	FFFF	경쟁	황동:8,690원/kg 알루미늄:1800원/kg 잡철:320원/Kg 경철:310원/Kg
'24. 11. 25	육군 제2879부대	BBBB	경쟁	경철:270원/kg 동:11,500원/kg 스테인리스:1,500원/kg 연철:220원/kg 주철:300원/kg 납:1,500원/kg
'24. 11. 26	육군 제3808부대	CCCC	경쟁	강철:620원/kg

자료: 국방부

○ 다만, 국방부의 고철 매각 중 '사회복지법인 굿피플[24]'에 대한 수의계약은 단가와 방식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첫째, 사회복지법인 굿피플과의 수의계약 단가가 타 계약 대비 현저히 낮음.

○ 2024년 국방부는 굿피플에 고철 5,400톤(중량물 기준)을 매각하였음. 구체적으로 육군 제7789부대에는 2024년 6월 21일 경철과 연철, 주철을 각각 77원/kg, 38원/kg, 72원/kg에 매각하였고,

육군 제5378부대에는 2024년 7월 23일 경철, 알루미늄, 동, 스테인리스,

23) 민간 기업 및 업체들은 익명으로 표시함.

24) 사회복지법인 굿피플은 2009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아동, 장애인, 노인 대상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을 하는 법인임.

연철(잡철), 주철을 각각 77원/kg, 726원/kg, 3,227원/kg, 703원/kg, 38원/kg, 72원/kg에 매각하였음.

○ 이는 아래와 같이 2024년 국방부 고철 판매 품목별 평균단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임.

[2024년 국방부 고철 판매 품목별 단가 비교]

(단위 : 원/kg)

품목	평균단가	굿피플 매각단가
동	12,515	3,227
알루미늄	1,799	726
스테인리스	1,689	703
경철	217	77
연철	188	38
주철	140	72

자료: 국방부 제출 자료를 재구성

또한, 국방부(육군 제5378부대)의 2024년 고철 매각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법인 굿피플과의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을 통해 ㈜GG에 매각한 내역 간에 단가 차이가 현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육군 제5378부대의 2024년 고철 매각내역]

(단위 : 원/kg)

품목	굿피플 매각단가(수의계약) (2024.7.23.)	㈜GG 매각단가(경쟁계약) (2024.10.23)
동	3,227	30,000
알루미늄	726	2,000
스테인리스	703	750
경철	77	120
연철	38	90
주철	72	100

자료: 국방부 제출 자료를 재구성

○ 둘째, 국방부(육군)의 고철 매각 요건에는 사업장 보유 여부 및 직접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한 검증 절차가 없는 등 기준이 다소 미비하며,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주요 사업 목적이 고철 매매가 아님에도 이를 수의계약 대상으로 선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아 보임.

○ 사회복지법인 굿피플은 고철 매입과 관련하여 고철 적재를 위한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았으며[25], 고철 매입계약의 명의는 굿피플이지만 실제 고철 수집·운반은 제3의 업체가 수행한다는 입장임.

○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 물건을 매각하는 경우[26]임.

고철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동 시행령상 고철을

---

25) 사회복지법인 굿피플이 보유한 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강원도 철원군 소재)은 폐기물 중간재활용 사업장이고, 고철을 처리하는 것이 아닌 한국전력의 폐변압기를 처리하는 사업장임.

2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재활용한 장애인생산품 생산 등과 같은 취지에서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사회복지법인 굿피플은 아동, 장애인, 노인 대상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고철 매매는 동 법인의 주력 사업은 아닌 것으로 보임.

○ 결론적으로, 국방부(육군)의 고철 매각 체계는 수의계약 요건을 갖춘 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경쟁계약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고철을 매입하여 해당 단체가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제도상 허점이 존재한다고 보임.

○ 따라서, 국방부(육군)은 고철 매각 지침에 수의계약 당사자가 직접 처리할 의무를 계약조건에 명기할 필요가 있고, 향후 수의계약을 점차 축소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다. 세출

(1) 장교인건비(1101-151), 부사관인건비(1101-152): 장교 · 부사관 명예퇴직수당의 연례적 조정 집행 지양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장교인건비(1101-151), 부사관인건비(1101-152)는 군인(장교·부사관)의 봉급 및 제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업임.

장교인건비 2024년도 예산액 4조 7,556억원에 이·전용 등(감) 51억 5,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조 7,504억 4,700만원 중 4조 7,114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390억 2,300만원은 불용하였음.

부사관인건비 2024년도 예산액 6조 8,567억 5,000만원에 이·전용 등(감) 1,356억 7,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조 7,210억 7,300만원 중 6조 6,443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766억 7,6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4년도 장교인건비·부사관인건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장교인건비	4,755,600	-	△5,153	4,750,447	4,711,424	-	39,023	4,865,905
부사관인건비	6,856,750	-	△135,677	6,721,073	6,644,397	-	76,676	7,018,290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명예퇴직수당은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근속자에게 조기 전역을 유도하는 전역수당으로[27], 「군인사법」 제53조의2제1항[28]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방부는 2024년도 장교 및 부사관 명예퇴직수당 예산액 882억 9,000만원에서 482억 8,400만원을 증액(이·전용 등)하여 예산현액 1,365억 7,400만원 중 1,360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고, 5억 3,0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년도 명예퇴직수당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장교 명예퇴직수당	36,744	36,744	-	7,998	44,742	44,615	-	127
부사관 명예퇴직수당	51,546	51,546	-	40,286	91,832	91,430	-	403
합 계	88,290	88,290	-	48,284	136,574	136,045	-	530

자료: 국방부

27) 임천영, 「군인사법」, 법률문화원, p.952

28) **「군인사법」 제53조의2(명예전역)** ①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최근 5년간 장교 및 부사관의 명예퇴직수당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장교·부사관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을 타 사업 및 동일 세부사업의 기본급여 내역사업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2024년의 경우 482억 8,000만원을 추가로 충당하였음.

[최근 5년간 명예퇴직수당 조정 내역]

(단위: 억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2020년	장교인건비 (1101-151-001)	110-01	3.6	장교 명예퇴직수당 (1101-151-007)	110-01
	부사관인건비 (1101-152-001)	110-01	91.6	부사관 명예퇴직수당 (1101-152-007)	110-01
2021년	군무원인건비 (1102-151-001)	110-01	40	부사관 명예퇴직수당 (1101-152-007)	110-01
2022년	부사관인건비 (1101-152-001)	110-01	7.9	장교 명예퇴직수당 (1101-151-007)	110-01
	부사관인건비 (1101-152-001)	110-01	115.8	부사관 명예퇴직수당 (1101-152-007)	110-01
2023년	부사관인건비 (1101-152-001)	110-01	34.0	장교 명예퇴직수당 (1101-151-007)	110-01
	부사관인건비 (1101-152-001)	110-01	164.6	부사관 명예퇴직수당 (1101-152-007)	110-01
2024년	부사관인건비 (1101-152-001)	110-01	92.1	장교 명예퇴직수당 (1101-151-007)	110-01
	부사관인건비 (1101-152-001)	110-01	390.7	부사관 명예퇴직수당 (1101-152-007)	110-01

자료: 국방부

○ 이는 당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 장교 및 부사관 명예퇴직수당이 지속적으로 과소 편성되고 있음을 의미함.

[최근 5년간 장교 및 부사관 명예퇴직수당 결산 내역]

(단위: 명, 억원)

연도	구분	편성액 [예상인원] (A)	선발현황			예상인원 대비 (C/A)	집행액 (D)	집행률 (D/A)	이전용 내역
			지원(B)	선발(C)	선발률 (C/B)				
2020년	장교	326.4 (544)	567	534	94.2	98.2	324.2	99.3	3.6
	부사관	299.9 (500)	609	560	92.0	112	390.7	130.3	91.6
2021년	장교	327.8 (546)	535	520	97.2	95.2	323.4	98.7	-
	부사관	437.1 (729)	706	649	92.0	89.0	474	108.4	40
2022년	장교	337.7 (563)	615	557	90.6	98.9	343.2	101.6	7.9
	부사관	450.2 (750)	1,128	730	64.7	97.3	564.3	125.3	115.8
2023년	장교	350.0 (567)	722	645	89.3	113.7	384.0	109.7	34.0
	부사관	490.9 (771)	1,642	957	58.3	124.1	649.8	132.3	164.6
2024년	장교	367.4 (570)	782	720	92.1	126.3	446.1	121.4	92.1
	부사관	515.4 (793)	1,720	1,216	70.7	153.3	914.3	177.4	390.7

자료: 국방부

○ 최근 5년간 장교·부사관 명예퇴직 지원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부사관은 2020년 609명에서 2024년 1,720명으로 약 세 배 증가하였음. 그러나 지속적인 예산 과소 편성으로 가용 재원이 부족해 명예퇴직 선발 인원은 지원 규모에 미치지 못하였고, 2024년 선발률은 70.7%(1,216명)에 그쳤음.

○ 국방부는 명예퇴직수당 증액을 매년 건의했으나 미반영되었고, 명예퇴직 지원 인원·수당액은 전역 시점의 개인 희망과 계급·정년 잔여기간[29] 등에 따라 달라 정확한 예산 산정이 어렵다는 입장임.

○ 한편, 국방부는 국회의 2022회계년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따라 부사관 명예퇴직수당의 적정 수준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30]을 밝힌 바 있으나, 2025년 예산에 531억 1,300만원만을 편성하여 2024년 집행액인 914억 3,000만원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수준임.

이는 시정조치 이후에도 명예퇴직수당 예산이 반복적으로 과소편성되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음을 시사함.

○ 명예퇴직 지원인원과 선발인원의 괴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명예퇴직을 신청한 당사자의 선발률이 저조해져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이 제한되는 등 군의 사기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국방부는 국회 결산 시정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여 장교·

29) 20년 이상 근속한 중장이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10년 이내인 사람

30)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709p

(19)부사관 명예퇴직수당의 연례적 조정 집행 지양 필요
○ 조치결과: 향후 적정수준의 예산편성을 통해 예산전용을 최소화하고, 명예전역 지원자들의 선발 예측 가능성을 높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보다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 명예전역 지원자 추이 분석 및 향후 지원 인원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차기 예산편성에 반영하겠음 ○ 조치완료일 : '24년 3월 31일

부사관 명예퇴직수당이 매년 대규모로 조정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고, 명예퇴직 지원 인원 예측 정확도를 제고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장교인건비(1101-151) : 직제에 반영 없이 상설 운영하고 있는 T/F장 제도 개선 필요

(가) 예산안 개요

○ 장교인건비(1101-151)사업은 장교의 봉급 및 제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업임.

장교인건비 2024년도 예산액 4조 7,556억원에 이·전용 등(감) 51억 5,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조 7,504억 4,700만원 중 4조 7,114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390억 2,3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4년도 장교인건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장교인건비	4,755,600	-	△5,153	4,750,447	4,711,424	-	39,023	4,865,905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대통령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31] 및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32]에 따라 국방부의 조직 및 정원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되어 있음.

한편, 국방부 국방정책실은 2007년부터 현역 군인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육군으로부터 장성급 장교를 파견받아 한시기구인 T/F의 장으로 임명해오고 있음.

○ 한시기구인 T/F를 설치한 후 T/F 명칭을 변경하거나 기간을 연장하여 한시기구를 사실상 상설화하여 운영[33]하고 있으며,

---

31)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직제 등)**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부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정하고, 그 명칭을 "○○직제"로 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하 "직제 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공무원의 종류별·계급별 정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32)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직제 등)** ① 국방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법령은 그 명칭을 "○○직제" 또는 "○○령"(이하 "직제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직제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정원에 관한 사항

33) 국방정책실 T/F 명칭변경 및 운영 연혁

구분	T/F 명칭변경 및 운영 연혁	T/F 운영 시점	비고
정책기획관 소속	국방부 평화체제 발전 T/F / → 국방부 군사신뢰구축 T/F → 북핵정책발전 T/F → 전작권 전환 T/F → (現) 하이브리드위협대응 T/F	2007년 4월~	정책기획 차장
국제정책관 소속	한미 SPI 추진 T/F → (제9차·제10차·제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 T/F → 한미동맹 70주년 회담준비 T/F → (現) 지역안보협력 T/F		국제정책 차장
방위정책관 소속	대북정책차장 → 남북군사협상 T/F → 전략사령부 창설지원 T/F → (現) 북핵사후관리 T/F	2018년 1월~	방위정책 차장

행정안전부와 협의 없이 직제에 반영하지 않은 채 실제로는 국방정책실의 '차장' 직위로 운영함으로써 국장과 과장 사이의 상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고위공무원(국장) 부재 시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방정책실 운영 조직도]

국방정책실장 (일반 고위공무원)		
정책기획관 육군 소장	**국제정책관** 일반 고위공무원	**방위정책관** 육군 준장
정책기획차장 육군 준장(진) **⇒ 하이브리드위협대응 T/F장**	**국제정책차장** 육군 준장 **⇒ 지역안보협력 T/F장**	**방위정책차장** 육군 준장(진) **⇒ 북핵사후관리 T/F장**
정책기획과장 육군 대령	국제정책과장 서기관	방위정책과장 해군 대령
국방전략과장 서기관	미국정책과장 육군 대령	북핵대응정책과장 육군 대령
대북전략과장 육군 대령	동북아정책과장 서기관	미사일우주정책과장 공군 대령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장 서기관	중동아프리카정책과장 육군 대령	사이버전자기정책과장 서기관
교육훈련정책과장 해병대 대령	국제협력과장 서기관	
정신전력정책과장 육군 대령	인도태평양정책과장 서기관	

자료: 국방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차장 직위를 정규 직제화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육군 장성을 T/F장으로 임명하여 T/F 명칭을 변경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상설 운영하는 것은 T/F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실상 직제에 반영된 정원을 초과하여 변칙적으로 운영하게 될 우려[34]가 있음.

[국방정책실 한시기구(T/F) 운영 연혁 및 현황]

(2025년 6월말 기준)

구분	T/F명	활동 기간	T/F장
정책기획관 소속	국방부 평화체제 발전 T/F	'07.4.~'16.12.	육준장 ○○○ 육준장 ○○○ 육준장 ○○○ 육준장 ○○○ 육준장 ○○○ 육준장 ○○○ 육준장 ○○○ 육준장 ○○○ 육준장 ○○○ 육준장 ○○○
	군사신뢰구축추진 T/F	'07.12.~'16.12	육준장 ○○○ 육준장 ○○○ 육준장 ○○○ 육준장 ○○○
	북핵정책발전 T/F	'17.3.~'17.12.	육준장 ○○○
	전작권 전환 T/F	'20.12.~'24.12.	육준장 ○○○ 육준장 ○○○ 육준장 ○○○
	하이브리드위협대응 T/F	'24.12.~	육준장 ○○○
국제정책관 소속	한미 SPI 추진 T/F	'07.4.~'16.12.	육준장 ○○○ 육준장 ○○○ 육준장 ○○○ 육준장 ○○○ 육준장 ○○○ 육준장 ○○○
	방위비분담금 협상 T/F	'13.3.~'14.3.	육준장 ○○○ 육준장 ○○○
	방위비분담금 협상 T/F	'14.12.~'15.12.	육준장 ○○○
	방위비분담금 협상 T/F	'18.1.~'19.6.	육준장 ○○○ 육준장 ○○○
	방위비분담금 협상 T/F	'19.7.~'21.12.	육준장 ○○○
	한미동맹 70주년 회담준비 T/F	'22.7.~'23.12.	육준장 ○○○ 육준장 ○○○
	지역안보협력 T/F	'24.1.~	육준장 ○○○
방위정책관 소속	남북군사협상지원 T/F	'19.1.~'20.12.	육준장 ○○○ 육준장 ○○○ 육대령 ○○○
	전략사령부 창설지원 T/F	'22.7.~'24.12.	육준장 ○○○
	북핵사후관리 T/F	'24.12.~	육준장 ○○○

자료: 국방부 제출 자료 재구성

34) "'법 위의' 국방부?...잇단 지적에도 육군 장성 자리 그대로" (2023. 11. 12., 이데일리)

○ 아울러, 국방부는 법령상 근거 없는 한시기구 및 한시편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국회,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로부터 반복된 지적[35]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계속 운영하고 있음.

○ 또한, 국방부 본부의 고유 업무를 상시 수행하기 위해 특정 군에서 장성급 장교를 차출 및 T/F장에 임명[36]하여 T/F를 상설화 운영하고, 직제에 반영하지 않고 '차장' 직위로 운영하는 것은, 원 소속인 부대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작전 및 훈련 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 야전부대의 업무공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국방부는 상시 업무를 위해 장기간의 한시조직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직제 등에 정식으로 반영하여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봄.

35) · 국회 : 2021년 결산 시정요구, 2024년 예산안 검토보고서
· 감사원 : 2013년 국방자원운용실태감사, 2018년 특정감사, 2019년 및 2025년 기관운영감사
· 행정안전부 : 2013년 정원감사, 2016년 정원감사 후속조치

36) 현재 육군 내 보직은 '정책연수'로 되어 있음.(2024. 11. 23. 장군인사실-1585 문서)

(3) 군무원인건비: (1102-151): 예비전력관리군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수급 실태 점검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군무원인건비 사업은 군무원의 봉급 및 제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업임.

2024년도 예산액 2조 5,631억 1,800만원에 이·전용 등(증) 967억 8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조 6,598억 2,600만원 중 2조 6,468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129억 4,0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4년도 군무원인건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군무원인건비	2,563,118	-	96,708	2,659,826	2,646,886	-	12,940	2,674,491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군무원 중 예비전력관리군무원은 예비군지역대·예비군기동대·예비군중대를 지휘통제하는 예비군지휘관, 동원지원단·예비군훈련대의 참모 및 교관, 제대별 행정담당군무원, 기타 육군학생군사학교 동원학부 교관과 동원전력사령부 참모부 실무자 등으로 편성되어 예비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군무원임[37].

○ 예비전력관리군무원은 예비군 자원관리 및 훈련 등 지역방위작전, 예비전력 관련 행정업무와 지역 재난 시 복구 활동의 주체로서 예비전력 내실화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 2021~2024년도 예비전력관리군무원의 정원, 현원, 시간외근무수당 예산편성액 및 예산 집행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음.

[2021~2024년도 예비전력관리군무원 시간외근무수당 결산 현황]

(단위: 명, 백만원, %)

연도	정원	현원	시간외근무수당 예산 편성액(A)	시간외근무수당 예산 집행액(B)	집행률 (B/A)	조정액
2021	4,101	3,992	17,122	20,212	118.0%	3,099
2022	4,064	3,930	17,223	28,412	165.0%	11,284
2023	3,966	3,927	19,185	32,564	169.7%	14,125
2024	3,917	3,863	19,204	35,413	184.4%	16,211

자료: 국방부

37) 강용구,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 2022, 국방대학교 예비전력연구센터

○ 예비전력군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의 예산은 매년 지속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그 부족 규모는 최근 들어 더욱 확대되고 있음.

○ 최근 4개년 예산 편성과 집행 실적을 비교해 보면, 편성액에 비해 집행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예산 조정을 통해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임.

○ 국방부는 시간외근무수당 예산 부족 사유로 예비군 작계훈련 준비 및 실시, 훈련대상자 및 보류자 현황관리, 예비군 장비·물자 현황관리 및 점검, 예비군 정기감사 대응 등으로 인한 시간외근무 증가 등의 사유를 들고 있으나, 최근의 집행액 증가 추세는 예산 편성이 실제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국가재정법」[38]상 예산은 원칙적으로 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무원인건비 사업의 예비전력관리군무원에 대한 예산의 조정은 연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실제 소요를 반영한 적정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임.

○ 한편, 시간외근무수당의 1인당 수급 실적을 살펴볼 때, 예비전력관리군무원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임.

○ 예비전력관리군무원은 군무원 수당체계에 따라, 5급 이하 군무원이

38)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정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며, 시간외근무는 1일 최대 4시간, 월 최대 57시간까지 인정됨[39].

○ 2021~2024년 예비전력관리군무원 중 직급별 인원 수 및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단가는 아래와 같음.

[2021~2024년도 예비전력관리군무원 정원 및 현원]

(단위: 명)

	구분	계	4급	5급	6급	7급
2021	정원	4,101	0	3,426	64	611
	현원	3,992	0	3,335	197	460
2022	정원	4,064	1	3,288	99	676
	현원	3,930	1	3,245	225	459
2023	정원	3,966	3	3,132	174	657
	현원	3,927	3	3,146	251	527
2024	정원	3,917	4	2,999	216	698
	현원	3,863	4	2,988	271	600

자료: 국방부

---

39)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소속 장관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021～2024년도 예비전력관리군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단위: 원)

직급	시간외근무수당 시간당 단가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5급	14,215	14,446	14,692	15,059
6급	12,124	12,321	12,531	12,844
7급	10,952	11,130	11,319	11,602

자료: 국방부

○ 2024년 기준 시간외근무수당 예산 집행액은 354억 1,300만원이며, 적용 대상 군무원 수는 3,859명(5급 2,988명, 6급, 271명, 7급 600명)임. 이를 산술적으로 환산하면, 1인당 월 평균 53.23시간의 시간외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산출됨.

○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2021년, 2022년, 2023년 1인당 월 평균 시간외근무는 각각 30.72시간, 43.24시간, 48.97시간 수준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은 월 최대 57시간까지만 지급 가능하다는 점[40]을 고려할 때, 2024년 기준

40)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등의 발생으로 소속 장관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대부분의 예비전력관리군무원이 매월 상한에 근접하는 수준의 시간외근무를 매월 지속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해석됨.

○ 그러나 예비전력관리군무원의 현원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 인원 감소에 따른 업무 과중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예비전력관리군무원은 그 업무 특성상 예비군 훈련이 집중되는 봄·가을철과 이외 시기의 업무량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방부에 의하면 최근 몇 년 동안 예비전력관리군무원의 업무량이 과도하게 증가할 만한 사유는 없다는 입장이나,

2024년 기준 1인당 월 평균 53.23시간에 달하는 시간외근무를 수행하였고, 시간외근무시간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실 근무실태와의 괴리가 의심된다고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예비전력관리군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있어 부정수급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임.

○ 2021~2024년 예비전력관리군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 적발 내역 및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음.

[2021~2024년도 예비전력관리군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 적발 및 조치 내역]

부대	계급/인원	연도	부정수급 내용	조치사항
육군 17사단	7급 1명	'23년	○초과근무 시작 후 사적용무 실시	○부당 수령액 환수 및 가산 징수 ○초과근무 금지(3개월) ○성과상여금 삭감(5%)
육군 32사단	5급 1명	'23년	○근무장소 이탈, 실 근무 미실시 등	○감봉
육군 32사단	5급 1명	'24년	○근무장소 이탈, 실 근무 미실시 등	○경고
육군 32사단	5급 1명	'24년	○근무장소 이탈, 실 근무 미실시 등	○경고
육군 50사단	7급 1명	'23~'24년	○근무장소 이탈, 실 근무 미실시 등	○감봉
육군 52사단	5급 1명	'24~'25년	○PC 반출 후 부당 신청 (세부내용 조사 중)	○징계 진행 중 ('25년 2월 적발)
육군 53사단	5급 1명	'23년	○근무시간 중 취침	○부당 수령액 환수
육군 53사단	5급 3명	'23년	○근무시간 중 이탈	○부당 수령액 환수 및 가산 징수 ○초과근무 금지(3개월)
해군 3함대	5급 1명	'22년	○근무장소 이탈, 실 근무 미실시 등	○부당 수령액 환수 및 가산 징수 ○징계(견책)
해병 2사단	5급 7명	'22년	○출장 당일 특별한 사유없이 초과근무수당과 연계하여 중복수급 * '22년 해병대 정기감사	○부당 수령액 환수 및 가산 징수
해병 9여단	5급 14명	'22년	○출장 당일 특별한 사유없이 초과근무수당과 연계하여 중복수급 * '22년 해병대 정기감사	○부당 수령액 환수 및 가산 징수

자료: 국방부

○ 다만 해당 적발 및 조치내역은 일부 부대에 국한되며, 그 인원수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방부는 실질적인 업무량과 근무 실태를 반영한 예산 편성을 통해 과도한 예산 조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한 사정 없이 지속적으로 시간외근무시간이 증가하는 예비전력관리군무원의 시간외근무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4) 공무원인건비(1103-101):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은 국외 직무파견 신설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공무원인건비(1103-101)은 공무원의 봉급 및 제수당,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업임.

○ 2024년도 예산액 696억 5,700만원에 이·전용등(감) 18억 8,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77억 7,100만원 중 637억 6,200만원이 집행되고, 40억 900만원이 불용됨.

[2024년도 공무원 인건비의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공무원인건비	69,657	-	△1,886	67,771	63,762	-	4,009	64,153
일반수당	3,957	-	121	4,077	3,986	-	91	3,362
특수업무수당	559	-	157	716	705	-	11	679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국방부는 2023년 7월부터 9월경까지 국외직무파견으로 주)NATO 대표부와 국외 연구기관 등 2직위를 신설하기로 결정하였고, 구체적인 신설 경위 및 결정 과정의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2024년도 국외직무파견 2직위 신설 경위 등]

구 분	신설 경위 및 결정 과정
주) NATO 대표부 직무파견 신설	- '23년 7월, 외교부-국방부, 駐NATO대표부에 방산관련 인력 증원 필요성* 논의 * NATO 조달청을 통한 장비·물자·시설·서비스 분야 방산협력을 추진 중이나 벨기에 무관부·방위사업청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정책적 지원소요 존재 - '23년 8월, 국방부-외교부, 재외공관 직무파견 직위 신설 협의 '23년 9월, 외교부, 재외공관심의위를 통해 駐NATO 대표부에 국방부주재관 직위(2년) 신설 - '23년 10월, 행안부, 駐NATO대표부 별도정원 신설
연구기관 국외 직무파견 신설 (38North)	- '23년 8월, 대외연구기관 파견 계획 보고(차관) - '23년 9월, 파견자선발계획보고 下 선발 모집공고를 통해 파견자 선발, 12월 파견 시행 * 1년 미만의 단기파견은 인사처 등 타기관 협의가 필요하지 않아 국방부장관 승인으로 파견을 개시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 재구성

○ 국방부는 국외직무파견 신설에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2024년 정부의 예산편성안에 반영하지도 않고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중 민간보상·전력발전 등의 세부사업들의 잔여 예산을 활용하거나 세목조정 등을 통해 총 3억 6,120만원을

집행하여 과장급 공무원 2명을 각각 주) NATO 대표부[41]와 38North(미국 워싱턴DC 소재 연구소)[42]로의 신규 국외직무파견을 실시하였음.

[2024년도 국외직무파견 2직위에 대한 예산 집행 및 조정내역]

(단위: 원)

구분	세부 구분	집행액 (천원)	단위-세부사업	조정내역
인건비	월급	165,832	1103-101 (공무원인건비)	잔여 예산 활용
	재외근무수당	98,191		001-001(기본급)→003-021(재외근무수당) * 세부내역변경
	가족수당	22,540		잔여 예산 활용
	자녀학비보조수당	25,169		001-001(기본급) →002-006(자녀학비보조수당) * 세부내역변경
	계	311,732	-	-
임차료	-	42,247	7111-254 (주요기관 기본경비)	잔여예산 활용 * 부족소요 일반수용비 등에서 세목조정
의료보험료	-	7,216	7131-315 (부대운영지원)	7131-301(민간보상) →7131-315(부대운영지원) 7131-314(전력발전사업) →7131-315(부대운영지원) * 세부사업변경
총계		361,195	-	-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 재편집

41) 해당 직위는 駐NATO대표부 소속 통일안보(국방) 주재관으로 2년간 △NATO와의 방산협력 업무 △NATO의 14개 협력기구 및 26개 분야별 안보센터와의 협력사업 추진 △NATO 회원국 및 협력국과의 정무 관련 인사면담 등 군사대표 업무지원 등을 수행함.

42) 美 STIMSON CENTER 소속 한반도 안보문제 싱크탱크인 38NORTH에서 방문연구원으로서 1년간 △안보정책 연구 및 분석 △피파견기관과 본국 간 네트워킹 △세미나 및 컨퍼런스 참여 및 발표 △정책 제언 및 공공 외교 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함.

○ 이와 같이 국방부가 국회의 예산의 심의를 받지 않고 국방부에서 일반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최초로 추진되는 국외직무파견에 소요되는 예산을 다른 세부사업들의 잔여예산이나 세목조정하여 집행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침해한 것으로써, 「국가재정법」 제45조[43]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집행지침」[44]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위반한 예산집행임.

○ 국방부가 신설한 2직위 중 주)NATO대표부 직위는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 절차 등을 수행하였고 안보상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정[45]이 일부 보임.

그러나 국외연구기관 신설 직위의 경우 국회의 예산심사를 받지 않고 회계연도 중 긴급히 신설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임[46].

---

43)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44) 집행지침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동 집행은 가, 나, 다에 모두 해당함..
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나.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다. 연도말에 다른 사업예산의 집행 잔액을 전용하여 불요불급한 소요에 충당하여 집행하거나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경우 등

45) 국방부는 NATO 조달청을 통한 장비·물자·시설·서비스 분야 방산협력을 추진 중이나 벨기에 무관부·방위사업청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정책적 지원소요가 존재하였다고 밝힘.

46) 국방부는 해당 직위에 대하여 국방정책 연구역량 강화 및 국제 네트워크 확대, 국제관계 전문가 육성을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특히, 해당 직위는 국방부와 업무 연계성이 밀접한 국외연구기관 1곳과 계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직무파견 신설이 아니라, 매년 국방부가 새로운 파견기관을 선정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 직위를 긴급히 신설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참고로, 국방부는 2025년도에 국외직무파견 직위를 3개로 확대하고,[47] 2025년도 확정예산에 이에 소요되는 임차료 1억 800만원을 정책기획지원(5136-302) 세부사업 등에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48]

[2025년도 국외직무파견 3직위 내역]

직급	국외직무파견 기간	국외근무기관 (근무부서)	소재지 (국, 도시)
부이사관	'25. 01. 13. ~ '26. 01. 06.	CSIS* (Korea Chair) * 국제전략연구소	미국, 워싱턴
서기관	'23. 12. 31. ~ '25. 12. 30.	주벨기에대사관겸 NATO 대표부(통일·안보 주재관)	벨기에, 브뤼쉘
과학기술 서기관	'25. 02. 24. ~ '26. 02. 13.	RUSI*(International Security Center) * 왕립합동군사연구소	영국, 런던

자료: 국방부 제출

○ 따라서, 국방부는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지 않고 신규사업 추진으로 인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통제절차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47) 국방부는 2025년부터 기존 주)NATO 대표부 1직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국외연구기관에 대한 직무파견 직위를 1직위에서 2직위로 확대하였음.

48)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시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및 관계 설명자료 등에서는 국외직무파견 3직위에 관한 자료 및 설명은 찾아보기 어려웠음.

(5) 기본급식(1231-301): 급식재료 납품시 납품업체에 대한 철저한 확인절차 강화 필요 등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기본급식(1231-301)은 양질의 급식 제공을 통한 장병의 체력 및 기본 전투력을 유지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1조 7,325억 2,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5억 900만원과 이·전용 등(증) 474억 2,8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조 7,794억 5,600만원 중 1조 7,785억 3,200만원을 집행하고, 4,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억 8,3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4년도 기본급식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기본급식	1,732,520	509	47,428	1,779,456	1,778,532	41	883	1,684,395
영내자 급식	1,446,081	509	54,656	1,501,246	1,500,816	41	389	1,391,994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① 야전조리병 교육재료비 연례적 과다편성 지양 필요

○ 내역사업인 영내자급식은 장병의 전투력 유지·향상을 위하여 1일 3식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비목에는 장병급식을 위한 급식비(210-04)외에 재료비(210-11)가 포함되어 있음.

○ 재료비(210-11)는 야전조리병 교육재료비로서 조리병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GOP 및 격오지 등 소단위 취사장 조리병과 종합군수학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사단 신교대대 배출 조리병을 대상으로 야전에서 실시하는 조리교육을 위한 것임.

○ 연도별 야전조리병 교육재료비 예결산 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 이어 2024년도에도 30%대의 집행률을 유지하면서 저조하였는데, 2년 연속 남은 잔액은 기본급식비 부족분에 모두 활용되었음.

[연도별 야전조리병 교육재료비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잔액 활용
2023	378	143	37.8	기본급식비 부족분 활용(235)
2024	378	132	34.9	기본급식비 부족분 활용(246)

자료: 국방부

○ 이러한 집행률 부진은 야전조리병에 대한 편성인원과 실제인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기본적으로 병인력이 감축되고 있는 상황, 대상자가 한정(격오지 등 소단위 취사장, 사단 신교대 배출 조리병)되어 있는 점 및 군급식의 민간위탁 확대로 야전조리교육 대상자가 줄고 있는 점 등에 기인하고 있음.

[연도별 야전조리병 교육재료비 편성인원 및 실제인원]

(단위: 명, %)

구분	편성인원(A)	실제인원(B)	비율(B/A)
2023	3,780	1,765	46.6
2024	3,780	1,435	38.0

자료: 국방부

○ 집행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여 예산이 과다편성되는 것은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부적절하고 반복적·연례적인 예산의 과다편성은 해당 예산사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음.

○ 따라서 국방부는 야전조리병 교육 편성인원을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서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② 급식재료 납품시 납품업체에 대한 철저한 확인절차 강화 필요

○ 2024년 국군체육부대는 구매계약을 통해 납품업체로부터 축산물을 납품받았으나, 실제 납품은 계약한 납품업체가 아닌 불법 하도급을 통한 타 업체가 납품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49]가 있었음.

○ 즉, 국군체육부대는 공급자가 계약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가공위탁 포함)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국군체육부대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선수급식(축산물)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체육부대 납품 검수 담당자가 계약상의 납품업체가 아닌 불법 하도급을 통한 타 납품업체의 축산물 납품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저품질의 축산물이 체육부대에 납품된 것임.

○ 한편, 국방부는 급식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장병 급양 향상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급식방침'을 만들어 각 군에 제공하고 있음.

○ 동 급식방침에서 식재료의 품질보증 관련 부분을 보면, 식재료 조달시 국내산 등 품질기준을 명시하고 검수시 원산지와 품질을 확인하는 등 안전과 위생에 주의하여 급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49) 감사원 국방부 기관정기감사(2025.2.)

납품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실제 납품업체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검증 등의 내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2024 급식방침>
3. 세부지침 차. 품질보증 6) 식재료 조달시 국내산 등 품질기준을 명시하고 검수시 원산지와 품질을 확인하는 등 안전과 위생에 주의하여 급식한다.

자료: 국방부

○ 국군체육부대는 불법 하도급하여 계약조건을 위반한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그 외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검증된 납품업체 및 직접 수행 여부는 조달되는 식재료의 품질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급식방침 등에 계약한 납품업체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검증 의무를 필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급식방침에 명시적으로 적시하여 불법 하도급 업체에 의한 납품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식재료 검수당담자에게 동 내용을 주의시킬 필요가 충분하다고 보여짐.

○ 따라서 국방부는 식재료 납품 검수시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검증·확인 절차가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급식방침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음.

(6) 특수식량(1231-303) : 전투식량 유통기한 관리 철저 필요 등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특수식량(1231-303)는 전시 또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비상 급식품을 확복하는 사업으로, 전투식량, 특전식량, 구명식량을 구매·보유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267억 6,500만원에 이·전용 등(감) 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67억 5,800만원 중 267억 4,1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4년도 특수식량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특수식량	26,765	-	△7	26,758	26,741	15	2	26,739
전투식량	25,390	-	1,151	26,540	26,523	15	2	26,606
특전식량	1,274	-	△1,154	120	120	-	-	629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① 전투식량 유통기한 관리 철저 필요

○ 내역사업인 전투식량은 전시대비 초기단계 비상 급식품을 확보하고 접적군단·도서지역의 전투식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전투식량 예산현액은 265억 4,000만원인데, 이 중 265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음.

○ 전투식량은 비축목표인 인가량을 기준으로 평시 비축을 실시하고 있다가 유통기한이 도래하기 6개월 전부터는 물량을 훈련 시 순환 급식의 형태로 소모하여 처리함으로써 유통기한 도래로 폐기되어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하고 유통기한이 도래한 전투식량을 섭취하여 위생상·건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이에 '2024년도 급식방침'에서도 전투식량은 유효기간 내에 순환 급식하여 위생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있음.

<2024년도 급식방침>

바. 특수식량 운영

2) 전투식량은 유효기간 내에 순환 급식하여 위생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군 간 전환소요가 발생할시 순환 급식물량(가용물량)범위 내에서 전환하여 급식하고 그 결과를 결산(정산)에 반영한다.

자료: 국방부

○ 그런데 2024년 12월 경 유통기한이 지난 전투식량이 상황 발생에 따른 군 이동시에 지참되는 일이 발생한 바 있는데[50], 국방부는 실제 작전 및 훈련시 취식을 위해 보관되고 있던 것이 아닌 단순 행정착오로 부대 창고에 보유되고 있던 물량이며 이후 바로 폐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전투식량은 전시 또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예산을 통해 일정 규모의 비축을 위해 확보되어야 하는 급식품으로서 유통기한이 존재하여 위생상 유통기한이 도래되기 전에 소모되어야 하고, 예산으로 구입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되지 않기 위해 폐기되기 전에 소모되어야 함에도 유통기한 도래된 전투식량이 창고에 보관되고 또한 군병력 이동시 지참되었다는 것은 급식방침 위배일 뿐 아니라 예산낭비 방지 측면에서도 부적절한 관리였다고 보임.

○ 따라서 국방부는 전투식량이 유통기한 도래 전에 순환급식이 철저하기 이루어져 폐기되거나 훈련시 등에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50) “군, 비상 계엄 때 유통기한 3개월 지난 전투식량 가져와”, 한국일보, ’25.3.2.)

② 특전식량 국방규격 개정시 조달가능성 고려 필요

○ 내역사업인 특전식량은 적 지역 침투작전시 비상식량으로 휴대할 수 있는 급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특전식량 예산은 12억 7,400만원으로 이 중 1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음.

○ 국방부는 그동안 특전식량을 포함하여 신형 전투식량 체계개발을 추진하여 2024년도부터 신형 특수식량(전투식량 L형, 특전식량-22형)의 조달을 추진하였음.

○ 전투식량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조달이 추진되었으나, 특전식량은 변경된 국방규격(무게, 부피 등)을 준수하는 생산업체의 응찰이 없어 신형 특수식량의 조달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였는바, 편성액 12억 7,400만원 대비 1억 2,000만원만을 집행[51]하는데 그쳤음.

[2024년도 특수식량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편성액 (편성근거)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 세부내역)	잔액 처리 현황	집행 부진 사유
1,274 (169천대× 7,553원)	120	120 (특전식량 조달 제한에 따라 간편식 등 대체식품 조달)	전투식량 구매를 위한 예산으로 사업조정 하여 집행	'24년부터 신형 전투식량 조달 추진을 위해 국방규격을 변경하였으나 특전식량 생산업체의 무게·부피 등 국방규격 미준수로 인한 입찰 포기(2회 무응찰) → 특전식량 조달 제한 상황 발생에 따라 예산 집행이 제한되었으며, 일부 예산(1.20억원)은 특전식량 대체품(초코바, 육포 등) 구매 및 비축을 위해 집행되었음.

자료: 국방부

51) 특전식량 조달제한에 따라 간편식 등 대체식품(초코바, 육포 등)으로 조달

○ 이로 인해 2024년말 특전식량의 비축률은 특전식량의 인가량(비축목표) 대비 26.3%로 저하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

[연도별 특수식량 비축목표 대비 실제 비축량]

(단위: 천 대, %)

구분		인가량(비축목표)	비축량	비축률
2021	전투식량	8,020	7,314	91.2
	특전식량	240	240	100.0
	계	8,260	7,554	91.4
2022	전투식량	7,810	6,824	87.4
	특전식량	224	219	97.8
	계	8,034	7,043	87.7
2023	전투식량	7,511	7,221	96.1
	특전식량	197	196	99.3
	계	7,708	7,417	96.2
2024	전투식량	8,144	7,419	91.1
	특전식량	**213**	**56**	**26.3**
	계	8,357	7,475	89.4

자료: 국방부

○ 국방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신형 전투식량 체계개발을 추진하여 시험평가(개발시험평가,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2022년 10월~12월까지 군사용 적합판정 및 규격화·목록화를 추진하였음. 2022년 12월 국방규격화 후 2024년 조달을 추진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개정된 국방규격에 맞출 수 있는 생산업체의 생산능력 확인절차 또는 시장·업체 조사 등을 내실있게 거치지 않아 결국 정상 조달이 되지 못하였음.

○ 국방부에 따르면 연구개발된 품목에 대해서도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나, 내실있는 조사에 따른 업체의 조달가능성이 동반되지 않은 연구개발 및 국방규격 개정은 적시에 식량을 비축하지 못하게 되어 전력지원상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나타남.

○ 따라서 국방부는 향후 연구개발된 품목이 적시에 조달될 수 있도록 시장 및 업체의 능력 확인 및 조사 등이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7) 민간조리원 운영(1231-305): 민간조리원 처우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민간조리원 운영(1231-305)은 군 급식의 맛과 질 개선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식수인원의 취사장에 민간조리원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1,100억 2,800만원 중 960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139억 3,9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4년도 민간조리원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민간 조리원 운영	110,028	-	-	110,028	96,089	-	13,939	103,847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2024년도 동 사업의 집행결과를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87.3%로 12.7%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 매년 집행률이 80% 중후반대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민간조리원의 결원 및 중도퇴사자가 많이 발생하는 인력운용률에 기인하고 있음.

[민간조리원 인력운용 현황]

(단위: %, 명)

구분	정원(A)	현원(B)	결원(A-B)	채용률 (B/A)	중도퇴사
2021	2,278	2,014	264	88.4	116
2022	3,188	2,438	694	76.4	169
2023	3,305	2,713	592	82.1	83
2024	3,305	2,778	527	84.1	348

자료: 국방부

○ 2024년도 민간조리원 채용률은 84.1%에 그치고 있고, 특히 중도퇴사자가 348명에 이르고 있으나, 민간조리원 운영예산은 매년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 민간조리원은 해마다 정원을 충족하지 못한 채 운용되고 있음에도 정원(3,305명) 대비, 국방부는 기존 인력의 인력운용률을 100%[52]로 적용하여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동 예산은 실제로 집행가능한 예산보다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임.

○ 국방부에 따르면 민간조리원의 낮은 인력운용률과 상당 규모의 중도퇴사자 발생은 주로 격오지 근무 및 보수수준 등에 기인하고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 및 위험근무수당 등 처우개선이 동반될 필요가 있으나, 동 수당들이 예산편성단계에서 반영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함.

○ 따라서 국방부는 집행가능한 수준의 예산편성 노력과 더불어 특수지근무수당 및 위험근무수당 편성 등 민간조리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인력운용률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음.

52) 2024년도 민간조리원 예산 세부산출내역

○ 상용임금(110-03) : 92,278 ・ 인원 : 기존 3,305명 ・ 27,921천원×기존 3,305명=92,278 ○ 복리후생비(210-12) : 1,653 ・ 500천원×기존 3,305명=1,665 ○ 보상금(320-09) : 17,751 ・ 고용부담금 : 17,751(4대보험료 10,220 퇴직금 7,530)

(8) 기본피복(1241-301): 기본피복 사업의 미집행액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기본피복(1241-301)은 장병의 기본임무수행에 필요한 전투복, 전투화 등 공통 피복류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3,741억 8,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00억 7,300만원과 이·전용 등(감) 185억 2,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657억 3,100만원 중 3,458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31억 6,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66억 8,7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4년도 기본피복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기본피복	374,184	10,073	△18,525	365,731	345,877	3,168	16,687	350,712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기본피복 사업은 전투복, 전투화, 개인방한피복류, 근무복/정복, 내의류, 신발류, 운동복, 모자류, 잡화류, 군장품, 특수신분피복류, 간부보충피복 등 장병의 임무수행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피복류 등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전 장병을 대상으로 다품종의 피복류를 보급하는 관계로 상당 규모로 예산이 편성됨.

○ 또한 피복별 예산안 편성은 당해연도 입영 장병 수, 다양한 보급품목 및 지급수량, 품목별 단가 등에 따라 결정되고, 집행 시에는 품목별, 사이즈별 적정 물량을 확보·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최근 기본피복 사업의 예결산 현황을 보면, 본예산에서 이전용 등(감) 및 불용액 등 편성예산을 본래의 사업목적에 전혀 사용되지 못하는 미집행액 규모가 2021년도에는 100억원 수준이었으나, 2023년도에는 600억원이 넘었다가 2024년에도 350억이 넘는 미집행액 규모를 나타내고 있음.

○ 본예산 대비 미집행 규모는 10~20% 내외 수준이지만, 예산 금액으로 보게 되면 350억원이 넘는 규모로 다른 세부사업을 구성할 정도로 미집행 규모가 과다하다는 것은 한정적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연도별 기본피복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A)	이전용 등(B)	집행액	불용액(C)	미집행액 (B+C)	미집행 비율 (B+C/A)
2021	401,446	△7,128	379,689	3,311	10,439	2.6
2022	385,824	△12,966	352,381	10,480	23,446	6.1
2023	374,810	△35,702	321,990	25,115	60,817	16.2
2024	374,184	△18,525	345,877	16,687	35,212	9.4

자료: 국방부

○ 또한 미집행액 중 연도별 이전용 등 현황을 보면, 급식비 부족(2021년), 연료비 부족(2022년), 공공요금 부족(2023년), 배상금 부족(2024년) 등 예측하지 못한 상당 규모의 예산소요가 발생하게 되면 기본피복 사업에서 우선 충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예측하지 못한 소요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기본피복 예산의 일정규모를 과다계상하는 측면이 있어 보임.

[연도별 기본피복 이전용 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이전용 등	이전용 등 규모	사유
2021	전용	7,130	급식비 부족소요
2022	이용	8,800	연료비 부족소요
2023	이용	35,722	공공요금 부족소요
2024	이용	18,305	배상금 부족소요

자료: 국방부

○ 따라서 국방부는 기본피복 사업의 예산규모가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미집행 예산액 규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9) 진료지원(2231-301): 과다하게 불필요한 세목조정 등으로 인한 불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관리 강화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진료지원(2231-301)은 현역병이 휴가, 외출, 외박 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국방부가 공단부담금을 납부하고, 군 병원의 진료능력을 초과하는 환자, 응급환자, 격오지 부대 환자에 대한 민간병원진료비 지원 등 진료여건을 보장하려는 사업임.

○ 2024년도 예산액 1,405억 4,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억 7,300만원과 이·전용등(감) 16억 1,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391억 9,500만원 중 1,367억 3,300만원이 집행되고, 3억 4,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1억 1,300만원이 불용됨.

[2024년도 진료지원의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진료지원	140,541	273	△1,619	139,195	136,733	349	2,113	140,435
위탁 진료비	7,194	228	1,343	8,765	7,929	41	794	7,727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국방부는 진료지원사업에 대하여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에 대하여 집행상의 필수적이거나 긴급한 소요가 아닌 한 전용·세목조정·세부사업 변경 등의 예산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동 사업에 대하여 총 90건에 걸쳐 52억 2,000만원에 대한 예산변경을 하는 등 과다한 예산변경의 문제가 있음.

[2024년도 진료지원의 예산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건)

구 분	예산변경 규모	건 수	1건당 평균금액
세부사업변경	1,398	42	33.3
세목조정	2,262	30	75.4
자체전용	1,411	11	128.3
이체	2	1	2
세부내역변경	147	6	24.5
합계	**5,220**	**90**	**58**

자료: 국방부

○ 진료지원사업 중 내역사업인 위탁 진료비는 군 진료 능력이 초과되는 환자 및 상급병원으로 후송 중 상태가 위급하여 응급처치가 요구되는 환자 등에게 민간병원에 위탁하여 진료 후 청구된 비용을 사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임.

위탁진료는 환자치료가 주목적인 위탁치료와 환자진단을 위한 위탁검사로 구분하고 위탁치료는 병(휴가, 외출, 외박중인 병 포함)에게, 위탁검사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게 적용함.

○ 국방부는 2024년 9월 29일 세목조정과 10월 9일 세부사업 변경을 통하여 미리 위탁진료비 예산 5억 8,6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나, 이후 위탁진료비 소요가 적어 위탁진료비 예산 4억 9,000만원의 불용이 발생하였음.

[2024년도 위탁진료비의 위탁진료 관련 예산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명 (내역,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4.9.29.)	**진료지원 -기타진료지원비 (2231-301-005)**	**210-01**	**490**	**진료지원-위탁진료비 (위탁치료, 2231-301-002)**	**210-14**
세부사업 변경 (24.10.8.)	의무물자확보 -안경제작 (2231-304-004)	210-01	96	진료지원-위탁진료비 (위탁치료, 2231-301-002)	210-14

자료: 국방부

이러한 불필요한 세목조정 등의 예산변경을 통해 해당 예산이 대규모로 불용되었다는 점에서 예산소요에 대한 추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변경이 이루어졌고, 예산 집행 관리가 미흡하였다는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국방부는 과다하게 불필요한 세목조정 등으로 인하여 예산의 불용이 재발하지 않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0) 의무장비획득(2231-302) :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낙찰차액 등을 활용한 의무장비획득 축소를 위한 대책마련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의무장비획득(2231-302)은 환자후송을 위한 구급차, 셔틀버스 등 **의무기동장비획득**과 군 병원에서 활용하는 진료장비 등 **일반의무장비획득**을 하는 사업임.

○ 2024년도 예산액 325억 3,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4억 4,200만원과 이·전용등(감) 5,1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49억 2,200만원 중 318억 7,100만원이 집행되고, 9억 6,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0억 8,400만원이 불용됨.

[2024년도 의무장비획득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의무장비획득	32,530	2,442	△51	34,922	31,871	967	2,084	40,196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의무장비획득사업은 엄밀한 예산편성단가 산정을 하지 않아 발생한 낙찰차액[53]이 2024년 27억 1,600만원이나, 국방부가 임의로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 의무장비획득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있음.

[2024년도 의무장비획득 사업 낙찰차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예산	조달공고액 (A)	계약 금액	낙찰차액	낙찰차액율 (B/A)
육군	15,503	15,503	14,890	613	4.0
해군	4,478	4,003	3,743	260	6.5
공군	2,334	2,334	1,904	430	18
해병대	584	598	531	67	11.1
의무사	8,593	8,439	7,358	1,347	12.6
합계	31,492	30,877	28,427	2,716	8.6

자료: 국방부

○ 국방부는 연례적으로 동 사업의 낙찰차액과 조달취소된 장비 예산[54] 등의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신규 의무장비를 도입하고 있음.

국방부는 2024년 낙찰차액 27억 1,600만원과 조달취소 장비 예산 26억 2,300만원을 합한 집행잔액 53억 3,900만원 중 68.6%인

53) 의무장비 획득을 위한 조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조달공고액과 계약금액의 차이인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 있음.

54) 국방부는 잉여장비의 관리전환 보급, 인가정수 삭감, 편성액 대비 증가된 가격에 따라 해당 장비 도입 불가 등의 경우 조달취소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36억 6,300만원을 집행하여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지 않고 의무장비 161대를 도입하였음.

이는 2022년 77대(집행액 22억 700만원), 2023년 132대(집행액 41억 5,000만원) 대비로도 집행잔액을 활용한 도입대수가 증가한 것임.

[2024년도 집행잔액 등을 활용한 의무장비획득 현황]

(단위: 대,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도입대수	도입총액	도입대수	도입총액	도입대수	도입총액
육군	13	109	33	2,012	12	768
해군	27	272	17	603	85	731
공군	10	434	47	426	3	42
해병대	11	30	10	158	3	22
의무사	13	1,362	25	951	58	2,100
합계	74	2,207	132	4,150	161	3,663

자료: 국방부 제출

국방부는 국방예산운용지침에 근거하여 계약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소요 충당, 장병복지 및 위생여건 개선, 재난복구 및 안전관리, 작전/군수지원, 법령개정·제도개선, 국방 정책결정 지원, 생활 밀착형 민원 해소 등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소요에 한하여 집행잔액(낙찰차액, 계획목표량 달성 후 발생한 잔액)을 사용할 수 있음.

의무장비획득의 경우 집행잔액 사용액 기준[55] 1억원 이상은 국방부 장관(사업별 소관 국·실 및 계획예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56]

○ 그러나, 국방예산운용지침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집행잔액을 활용한 의무장비획득은 장병복지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소요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국방부가 연례적으로 집행잔액 및 조달취소된 장비 예산에서 30억원 이상을 활용하여 100여대가 넘는 의무장비를 국회의 예산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획득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음.

○ 따라서 국방부는 의무장비획득 예산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수립·편성함으로써 연례적으로 집행잔액 등을 활용하여 긴급하지 않은 의무장비 획득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55) *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2200) 프로그램의 경우 사업 건 별 3억 이상(의무장비획득은 1억 이상)의 증액되는 경우. 상기 증액규모에 미달하는 소규모 증액의 경우에는 집행의 자율성, 행정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군·기관에 집행잔액 사용 권한을 위임함.

56) 집행잔액 활용 의무장비 도입절차
① 소요제기(수요군) → ② 가용예산(집행잔액 등) 확보 → ③ 사업타당성 검토 및 확정(사업주관부서) → ④ 예산집행심의회 승인(수요군(또는 국방부) → ⑤ 장비획득 심의(수요군 또는 국방부) → ⑥ 국방조달계획 반영 → ⑦ 계약 요청(조달청, 국군재정관리단, 군수사) → ⑧ 입찰공고/계약체결→ ⑧ 기술검사 / 검수(수요군 또는 조달청) → ⑨ 납품 완료 및 대금 집행

(11) 의무시설개선(2231-305): 연례적 집행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및 집행관리 강화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의무시설개선(2231-305)은 각급 부대의 의무대 등 의무시설을 신축, 증축 및 리모델링하는 시설사업임.

○ 2024년도 예산액 465억 2,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65억 3,2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29억 1,700만원 중 491억 4,800만원이 집행되고, 94억 8,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2억 8,500만원이 불용됨.

[2024년도 의무시설개선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의무시설개선	46,524	16,532	△139	62,917	49,148	9,484	4,285	14,314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의무시설개선 사업은 주요 사업들의 집행부진에 따라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2022년** 및 **2023년** 연이어 '**미흡**' 평가를 받았고, **2022회계연도 및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도 시정처리요구 사항으로 각각 주의[57] 및 시정[58]을 받은 바 있음.

그런데, 2024년의 경우에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2023년 67.9%보다 다소 개선된 78.1%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집행률이 양호하였던 2020년 92.3%와 2021년 88.2%과 비교하면 여전히 저조한 실적임.

[최근 5년간 의무시설개선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0	24,622	5,655	△36	26,740	24,707	116.9	92.3	1,603	430
2021	19,041	1,603	2,010	22,654	20,002	105	88.2	1,917	735
2022	45,534	1,917	△127	47,324	32,078	70.4	67.8	10,702	4,544
2023	52,079	10,702	-	62,781	42,635	81.9	67.9	16,532	3,614
2024	46,524	16,532	△139	62,917	49,148	105.6	78.1	9,484	4,285
2025	14,314	9,484	-	23,798	-	-	-	-	

자료: 국방부

57) "국방부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의무시설 개선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어 집행부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주의)

58) "국방부는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률 제고를 위한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시정)

○ 2024년 의무시설개선 사업 중 집행률 75%이하여서 2024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연기된 사업은 6건으로, 해병대 6여단 의무대 신축, 해군사관학교 의무대 신축, 육군 22사단 의무대 신축, 해군 해양의료원 격리병동 리모델링, 의무사 대전병원 격리병동 리모델링임.

공통 집행 부진사유로는 설계 변경, 계약 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 건축 승인 지연 및 정산 지연 등으로 계획 및 집행상의 관리 미흡이라고 할 수 있고, 사업 건별 상세 집행 현황 및 집행부진 사유는 다음 표들과 같음.

① 해병대 6여단 의무대 신축(2022~2025) : 총사업비 100억 1,900만원

구분	본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2	281	-	△281	-	-	100.0%	-	-
2023	2,629	-	△6	2,623	1,378	52.5%	1,175	70
2024	7,108	1,175	△612	7,671	4,827	62.9%	2,124	720
2025	0	2,124	-	2,122	585	-	-	-
집행부진사유	· 설계과정에서 설계 변경(규모 축소), 별도사업(의무대 창고 사업)과 통합집행 및 방폭 설계 필요성 재검토 등으로 인한 전체 사업 지연으로 23년 및 24년 이월 발생							

② 해군 해군사관학교 의무대 신축(2022~2025) : 총사업비 69억 1,020만원

구분	본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2	211.6	-	△181.6	30	20.6	68.6%	-	9.4
2023	2,120.7	-	-	2,120.7	1,144.7	53.9%	790.7	185.3
2024	4,577.9	790.7	△11.7	5,356.9	2,611.9	48.7%	2,295.9	449.1
2025	-	2,295.9	-	-	-	-	-	-
집행부진사유	·'23년 신축공사부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 지연,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이월 및 집행잔액 불용 ·'24년 신축공사부지 개발제한구역 지자체 건축 승인 지연('24.4월 승인) 및 신축부지 기존 건물의 철거 지연('24.6월 철거 승인)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이월							

③ 육군 22사단 의무대 신축(2022~2025) : 총사업비 75억 1,400만원

구분	본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2	244	-	-	244	201	82.4%	-	43
2023	2,179	-	-	2,179	1,988	91.23%	190	1
2024	5,091	190	-	5,281	3,088	58.48%	1,616	576
2025	-	1,616	-	1,616	-	-	-	-
집행부진사유	·설계용역 지연, 부지 관련 재판단 및 신축부지 내 사토제거로 인한 공사 지연 발생에 따른 이월							

④ 해군 해양의료원 격리병동 리모델링(2023~2025) : 총사업비 10억 3,100만원

구분	본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	70.2	-	-	70.2	3.8	5.4%	46.2	20.2
2024	961.2	46.2	588.9	1,596.3	867.7	54.3%	536.6	192.0
2025	-	536.6	-	-	-	-	-	-
집행부진사유	·'23년 설계 중 음압병실 추가 공사 소요 식별로 설계 연장됨에 따라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이월 및 공사비 등 불용 ·'24년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지연(유찰)에 따른 착공 제한으로 공사비 이월 및 집행잔액 불용							

⑤ 의무사 대전병원 격리병동 리모델링(2022~2024) : 총사업비 38억 4,400만원

구분	본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2	136	-	-	136	104	76.3%	12	20
2023	1,276	12	214	1502	768	51.1%	714	20
2024	2,432	714	△4	3141	2301	73.3%	588	252
2025	-	588	-	-	-	-	-	-
집행부진사유	・시설공사는 완료, 준공서류보완 필요에 따라 정산 지연으로 이월액 발생							

⑥ 공군 18전투비행단 의무대대 승강기 설치(2024~2025) : 총사업비 2억 5,300만원

구분	본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4	211	-	42	253	149	58.9%	61	42
2025	-	61	-	61	-	-	-	-
집행부진사유	・'24년 12월 계약 후, 공기 부족으로 이월 발생('25년 6월 준공완료), 불용은 낙찰차액 및 감리비(200㎡ 미만) 미시행으로 발생							

○ 따라서 국방부는 의무시설개선사업의 연례적인 집행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자체 승인과 설계반영 필요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고 계약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의 종합적인 집행 강화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12) 보건복지지원(2242-303): 긴급공고 지양 등을 통한 경쟁계약 확대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보건복지지원(2242-303)은 작은 도서관 운영과 군 의무 및 양성평등정책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24년도 예산액 173억 5,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억 9,400만원과 이·전용 등(감) 1억 4,6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173억 9,900만원 중 164억 5,500만원이 집행되고, 8억 8,300만원이 불용됨.

[2024년도 보건복지지원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보건복지지원	17,351	194	△146	17,399	16,455	61	883	14,949
양성평등 정책지원	11,440	68	0	11,508	10,741	9	758	11,360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보건복지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양성평등 정책지원은 성고충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관 운영, 각 군 양성평등정책활동, 성인지력 향상 교육 등을 통해 군 내 양성평등정책 추진 및 성희롱·성폭력 사고 예방 등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임.

동 내역사업은 매년 일반연구비(260-01)로 편성된 예산을 통해 일반연구 용역계약을 통상 4건 정도 추진하고 있음.

2024년도에는 성인지력 향상교육, 군 양성평등 지표조사, 2024년 군별 맞춤형 조직문화 컨설팅, 군 성폭력실태조사 4건의 일반연구가 추진되었음.

[2024년 일반연구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편 성	현 액	집 행
○ 일반연구비(260-01)	643	712	611
• 성인지력 향상교육	100	100	82
• 군 양성평등 지표조사	137	137	82
• 군별 맞춤형 조직문화 컨설팅 ('23년 일반연구 건으로 2024년 이월)	-	68	68
• 군별 맞춤형 조직문화 컨설팅	232	232	212
• 군 성폭력 실태조사	174	174	168

자료: 국방부 제출

○ 국방부는 2023년도의 총 4건의 연구 중 3건이 국가계약법상 경쟁입찰을 거쳐 “협상에 의한 계약”[59]방식으로 연구수행업체를 선정하였고, 1건만 재공고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연구수행업체를 선정하였음.

그러나 국방부는 2024년의 총 4건의 연구 중 1건만 국가계약법상 경쟁입찰을 거쳐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연구수행업체를 선정하였고, 나머지 3건에 대하여는 단일 응찰로 유찰되어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재공고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연구수행업체를 선정하였음.

[2023년 및 2024년 일반연구비 계약 및 집행 내역]

(단위: 원)

구분	연구명 (수행기관)	계약금액 (계약기간)	집행금액 (연구수행 기간)	낙찰차액 (이월 금액)	계약방식(공고 여부)	입찰업 체 수
2023	2023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 (여성정책연구원)	168,885,320 (23.04.10 ~ 23.11.30)	170,399,170 (23.04.10 ~ 23.11.30)	3,600,830	경쟁입찰	3
	2023년 맞춤형 성인지 감수성 컨설팅 (조안노무법인)	228,000,000 (23.08.16 ~ 23.12.08)	161,642,800 (23.08.16 ~ 23.12.08)	12,000,000 (66,357,200)	경쟁입찰	2
	사관학교	59,090,900	59,090,900	5,909,100	경쟁입찰	4

5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구분	연구명 (수행기관)	계약금액 (계약기간)	집행금액 (연구수행 기간)	낙찰차액 (이월 금액)	계약방식(공고 여부)	입찰업 체 수
	성인지교육 표준교안 개발(양성평등교 육진흥원)	(23.07.19 ~ 23.12.29.)	(23.07.19 ~ 23.12.29.)		*긴급공고	
	성인지교육 군 전담교관 표준강의안 개발(형사법무정 책연구원)	36,090,900 (23.10.12 ~ 23.12.29.)	36,090,900 (23.10.12 ~ 23.12.29.)	3,909,100	수의계약 (재공고 X) *긴급공고	1
2024	2024년 군 성폭력 실태조사(여성정 책연구원)	166,491,810 (24.04.01 ~ 24.12.17.)	167,830,840 (24.04.01 ~ 24.12.17.)	6,169,160	수의계약 (재공고 X) *일반공고	1
	2024 성희롱성폭력 예방 맞춤형 컨설팅(나비프로 젝트)	210,000,000 (24.04.18 ~ 24.12.14.)	211,620,100 (24.04.18 ~ 24.12.14.)	20,379,900	경쟁입찰 *일반공고	3
	24년 군 양성평등 지표 조사 및 분석 연구(여성정책연 구원)	81,818,180 (24.05.03 ~ 24.12.20.)	81,818,180 (24.05.03 ~ 24.12.20.)	8,181,820	수의계약 (재공고 X) *긴급공고	1
	2025 국방부 맞춤형 성인지교육 표준교안 개발(형사법무정 책연구원)	90,909,090 (24.06.24 ~ 25.02.21.)	81,818,180 (24.06.24 ~ 25.02.21.)	9,090,910 (9,090,910)	수의계약 (재공고 X) *긴급공고	1

자료: 국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은[60] 경쟁계약이 계약의 기본 방식임을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60)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방부가 일반연구의 75%인 3건을 모두 재공고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경쟁계약 원칙과 부합하지 않은 계약관리라고 볼 수 있음.[61]

특히, 수의계약된 3건 중 2건은 일반공고가 아닌 긴급공고[62]에 의하여 각 일반연구 입찰에서 1개 업체만 입찰하여 해당 업체가 선정되었으나, 긴급공고로 인한 입찰 기회의 제한은 연구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 확보 등이 어려울 수 있음.

○ 또한, 국방부는 일반연구의 연내 완료를 위한 조기 계약절차 추진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여 매년 연례적으로 1건 이상의 일반연구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61) **재공고 절차 생략**은 일반적인 예외조항에 근거한 것이 아닌 2020년 5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로 인해 시행령상 한시적인 특례로써 도입된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고시한 기간**에 한해 허용된다는 점에서 3건의 수의계약 모두 재공고 없이 계약한 것은 적절한 계약관리 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 코로나 19 유행시기인 2020년 5월 도입된 한시적인 특례기간은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49호에 의하여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음.(2025년 8월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 상태임)

6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⑤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 삭제

2023년도에는 2023년 맞춤형 성인지 감수성 컨설팅에 대한 계약이 하반기인 2023년 8월 16일 체결되어 예산 66,357,200원에 대한 이월이 발생하여 2024년도에 집행하였고, 2024년도에는 2025 국방부 맞춤형 성인지교육 표준교안개발이 2024년 6월 24일 체결되어 9,090,910원이 이월되었음.

○ 따라서 국방부는 일반연구 계약 추진에 있어서 향후 긴급공고 방식이 아닌 일반공고 방식으로 조달공고를 하여 충분한 입찰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경쟁계약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13) 정비장비(2331-309): 집행률 제고, 미편성된 신규사업 추진 지양 및 면밀한 시장조사 등 사전관리 철저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정비장비(2331-309) 사업은 전차, 유도탄 정비장비, 소음·진동 측정장비 등 각종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장비의 정비를 지원하는 정비장비 획득 및 수명초과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441억 4,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26억 9,300만원과 이·전용 등(감) 95억 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73억 3,200만원 중 438억 3,200만원을 집행하고, 14억 2,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0억 7,6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4년도 정비장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정비장비	44,146	12,693	△9,507	47,332	43,832	1,424	2,076	29,586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2024년도 정비장비 중 예산안 편성시와 집행시 간 장비를 비교해 보면, GP부분복원 경계력보강 중거리 카메라, 전기차 급속 충전기, 정비용 리프트, 유도가열기, 증류수생산기 등에 대해서는 예산안 편성시에는 없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고, 화력정비 장비(14건), 궤도정비 장비(2건), 기동(차륜)정비 장비(8건), 항공정비 장비(5건), 함정정비 장비(1건), 일반정비 장비(3건) 등 33건에 대해서 업체 무응찰 및 군요구사항 미충족, 기보유장비 수명연장 및 시설공사 순연 등으로 장비획득을 추진하지 못하였음.

○ 먼저, 전기차 급속 충전기, 정비용 리프트, 유도가열기, 증류수생산기 등의 장비는 노후교체, 안전사고 예방 및 긴급정비지원 등의 필수적인 소요로 인해 신규로 조달한 것으로, 예산안 편성시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소요 및 긴급한 조달의 필요성 등이 있었다고 보여지지만,

편성된 사업의 취소 예산을 가지고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받지 않고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국회의 예산심의·확정 권한을 침해하였고, 「국가재정법」 제45조[63]에 따른 세출예산의 목적 외 집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부적절한 예산집행이라고 보여짐.

63)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2024년도 정비장비 사업 중 신규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편성액	집행장비	집행액	불일치 사유
기동(차륜) 정비 장비획득	-	(공)전기차 급속 충전기	3.96	전기차 운영 필수소요 확보
	-	(근지단)정비용 리프트	13.5	노후교체 필수소요 확보
함정정비 장비획득	-	(해)유도가열기	94.9	안전사고 예방 필수소요 확보
	-	(해)증류수생산기	6.6	긴급정비지원 필수소요 확보

자료: 국방부

○ 또한 K-77 테스터 세트 등 14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취소 등에 따라 발생한 예산으로 GP부분복원 경계력보강 중거리 카메라 등 획득에 사용하여 마찬가지로 세출예산의 목적 외 집행금지 원칙을 위반하였음.

[2024년도 정비장비 사업 중 사업취소 예산 활용 신규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편성장비	집행장비	집행액	불일치 사유
화력정비 장비획득	(육)K-77 테스터 셋트	GP부분복원 경계력보강 중거리 카메라 등	3,598	사업취소 (업체무응찰)
	(육)발생및충진장치,산소-질소용, 트레일러탑(질소충전세트)			사업취소 (업체무응찰)
	(육)시험세트,전력-특수목적용 전기케이블 조립			사업취소 (업체무응찰)
	(육)시험세트,전자계통용(ETS)			사업취소 (업체무응찰)
	(육)시험세트,전자계통용(EETIS)			사업취소 (업체무응찰)

구분	편성장비	집행장비	집행액	불일치 사유
	(육)시험세트,전자계통용(고광원차단시험세트,PVJ-130)			사업취소 (업체무응찰)
	(육)시험세트군,전자계통용(전기/전자 종합시험장비 EETIS)			사업취소 (업체무응찰)
	(육)외부시동시험기셋트			사업취소 (업체무응찰)
	(육)충전기,전지용			사업취소 (업체무응찰)
	(육)충전세트 질소용 유압기현수장치용			사업취소 (업체무응찰)
	(육)충전세트 질소용 축압기용			사업취소 (업체무응찰)
	(육)충전키트,가압용			사업취소 (업체무응찰)
	(육)펌프,유압펌프식,수동식			사업취소 (업체무응찰)
	(육)초음파병기세척기			기보유장비 수명연장

자료: 국방부

○ 다음으로, 기 편성된 장비 중 업체무응찰에 따른 사업취소의 경우, 예산안 편성시 시장조사 또는 업체조사 등 해당 장비에 대한 조달가능성이 면밀하게 진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짐. 동 장비들은 본 정비장비가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장비로서,

획득하고자 하는 장비가 구매되지 못하는 경우 본 정비장비 운용에도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달가능성이 없는 장비의 예산편성으로 차순위의 타 장비가 획득이 되지 못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고 보여짐.

[2024년도 정비장비 사업 중 미집행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편성장비	편성액	집행액	불일치 사유
궤도정비 장비획득	(육)시험기,압력 게이지용	11.7	-	사업취소 (유찰에 따른 계약불가)
	(육)파워팩외부시동 시험기	5.7	-	
기동(차륜) 정비 장비획득	(해)자동차 도장부스	68.1	-	사업취소(외주정비 전환)
	(육)세척기,압력식, 용제-물용	192.8	-	업체 우수상용품 조달청(벤처나라) 등록 지연으로 구매 제한
	(육)차륜평형기	41.6	-	기보유장비 수명연장
	(육)분석기, 엔진용	136.3	-	낙찰업체 계약포기
	(육)전조등 시험기	17.8	-	사업취소(시설공사 순연)
	(육)브레이크 시험기	46.6	-	사업취소(시설공사 순연)
	(육)사이드 슬립 테스타기	14.1	-	사업취소(시설공사 순연)
	(수송사)차체인양기 4주식	50	-	사업취소(시설공사 순연)
항공정비 장비획득	(육)보어스코프	54.9	-	사업취소(군요구사항 미충족)
	(육)프로그램 적재기	120.3	-	사업취소(군요구사항 미충족)
	(육)연료배출기	20.5	-	사업취소(군요구사항 미충족)
	(육)엔진세척기운 반식	138.6	-	사업취소(군요구사항 미충족)
	(육)계기회로시험기	181.2	-	사업취소(FMS오파 개설 지연)
함정정비 장비획득	(해)긴급부상장치시 험기	962.6	-	사업취소(가격협상 결렬)
일반정비 장비획득	(해)탄약 열순환식 건조기	364	-	사업취소 (시설공사 순연)
	(해)탄약 이송대	203	-	
	(해)탄약 정비용 분사제청기	428.9	-	

자료: 국방부

○ 마지막으로, 정비장비는 매년 이전용 등(감)과 불용액의 규모가 과다하여 본예산 대비 집행이 부진한 사업인데,

2024년도의 경우 타 사업으로 이전용 등 규모에 불용액을 합한 미집행 예산이 전체 예산액의 26.2%에 달하는 등 정비장비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지 못하는 미집행 규모가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매년 반복적인 것으로 한정된 예산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예산편성이라 보기 어려운 문제가 나타남.

[연도별 정비장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A)	미집행 규모(B)			비율(B/A)
		이·전용 등	불용액	계	
2021	26,915	1,213	2,971	4,184	15.5
2022	44,486	4,591	794	5,385	12.1
2023	55,586	8,418	7,523	15,941	28.6
2024	44,146	9,507	2,076	11,583	26.2

자료: 국방부

○ 따라서 국방부는 향후 미편성된 신규사업의 추진을 지양하고 면밀한 시장조사 등 사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장비가 적시에 획득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본래의 목적으로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집행가능한 수준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려는 노력을 각별히 기울일 필요가 있음.

(14) 정밀측정장비(유지)(2333-312): 국외정비의 국내정비로 전환 노력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정밀측정장비(유지)(2333-312)는 지상, 함정, 항공 등 각 기능별 장비들의 주요 구성품 검·교정용 정밀측정장비에 대한 야전·창정비, 외중정비 지원 및 수리부속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 2024년도 예산액 33억 7,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400만원과 이·전용등(증) 8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3억 8,700만원 중 33억 4,700만원이 집행되고, 7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700만원이 불용됨.

[2024년도 정밀측정장비(유지)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정밀측정장비 (유지)	3,374	4	8	3,387	3,347	3	37	4,036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군이 보유한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는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167조에 따라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에 따라 군직정비, 외주정비, 국외정비로 구분됨.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67조(장비정비 구분 등) ① 군이 보유한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는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과 수준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각군은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능력, 경제성, 품질보증 정도를 고려하여 정비방법을 결정한다.

1. 수행 기관에 따른 구분
 가. 군직정비 :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비능력(정비인력, 정비기술, 정비용 장비 및 공구, 수리부속, 정비시설 등을 말한다)을 활용하여 군 보유 장비 및 수리부속품을 군에서 직접 정비
 나. 외주정비 : 국내업체에서 실시하는 정비. 각군에서 정비가 불가능하거나 국내정비업체에서 정비하는 것이 경제적일 경우 실시
 다. 국외정비 : 국외생산 또는 정비업체에서 실시하는 정비. 국내정비가 불가한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해 실시하며, 각군·기관은 국외정비품의 기술자료 및 정비능력을 확보하여 가능한 국내정비로 전환해야 한다.

○ 군직정비는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비능력(정비인력, 정비기술, 정비용 장비 및 공구, 수리부속, 정비시설 등)을 활용하여 군 보유 장비 및 수리부속품을 군에서 직접 정비하는 것을 말하고, 외주정비는 국내업체에서 실시하는 정비를 말하며, 국외정비는 국외생산 또는 정비업체에서 실시하는 정비로서 국내정비가 불가한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해서 실시하는 정비를 말함.

○ 한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중 국외정비와 관련한 내용에서는 각 군·기관은 국외정비품의 기술자료 및 정비능력을 확보하여 가능한 국내정비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4년도 정밀측정장비에 대한 국외정비 규모는 8억 1,200만원 수준으로 전체 예산 중 43% 정도를 유지하고 있음.

[2024년도 정밀측정장비(유지) 내역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국내정비	1,166	1,169
국외정비	812	812
수리부속	1,395	1,366
합계	3,373	3,347

자료: 국방부

○ 연도별 정밀측정장비의 국내 및 해외 정비의 비율을 보면, 해외정비 비율이 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정밀측정장비 유지를 위한 정비에 대해서 국외정비를 국내정비로의 전환한 현황을 보면, 그 건수가 전무한 상황임.

[연도별 정밀측정장비(유지) 국내·국외정비 비율]

(단위: %)

구분	국내정비	국외정비
2021	56	44
2022	55	45
2023	47	53
2024	57	43

자료: 국방부

○ 제작 기술 자체가 해외 업체에서 독점되어 있어, 정비 매뉴얼이나 설계도가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점, 첨단 정비에 필요한 설비와 환경 등 국내의 인프라 부족 및 정비 전문인력의 부족 문제 등으로 국외정비를 국내정비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은 인정됨.

○ 다만, 자주국방 실현, 전시 대응력 향상, 비용 절감, 관련 산업 육성 및 기술 자립 등 전략적·경제적·기술적 측면에서 국내정비로 전환 필요성도 또한 적지 않다 할 것이며, 또한 장비별 특성 및 전환용이성 측면에서 다른 점이 있겠지만 항공장비에 대해서는 매년 상당한 규모로 국내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밀측정장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국외정비의 국내정비로의 전환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연도별 항공장비 국내정비 전환 현황]

(단위: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항공장비	28	40	52	77

자료: 국방부

○ 따라서 국방부는 정밀측정장비에 대한 정비 체계를 국외 의존에서 국내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전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5) 취사연료(2335-301) : 연말 가스요금 정산시기 조정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취사연료(2335-301)는 장병들이 취식하는 음식을 조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취사연료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205억 9,300만원에 이·전용 등(증) 22억 3,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28억 3,700만원 중 223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9,7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4년도 취사연료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취사연료	20,593	-	2,233	22,837	22,340	-	497	19,537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취사연료는 유류(경유)와 가스류(LPG, LNG)로 구분되는데(난방연료, 장비연료 동일), 이 중 유류는 정유업체와 계약을 통해 유류를 인수받고, 가스류 중 LPG는 지역별 공급업체를 통해서, LNG는 지역별 도시가스업체를 통해 공급받으며, 둘 다 월 단위로 정산을 실시하고 있음.

○ 가스류는 월 단위로 정유업체 또는 도시가스공사를 통해 공급받으면 다음달에 월별 고지서가 발급되어 이를 지출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음.

○ 그런데, 12월에 공급받은 가스류에 대해 익년 1월에 지출한 내역과 12월에 지출한 내역들이 혼재되어 있는 바, 연말 가스류 공급에 대한 지출을 편의에 따라 집행하여 동일한 사업의 예산 집행시기에 대해서도 각군별, 부대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64].

64) 연말 사용분에 대한 가스류 정산의 혼재문제는 난방연료(2335-302), 장비연료(2335-303)에도 나타나고 있음.

[연말 가스류 집행시기 불일치 현황(예시)]

(단위: 원)

구분	지출관서명	지출결의명	이체일	지출결의금액	거래처
육군	제53보병사단	23년 12월 도시가스(LNG) 사용분집행의뢰 (23.12.1~12.31.)	'24.1.15.	36,110,460	㈜부산도시가스
	제1공수특전여단	24년 12월분 도시가스(영내 22개소,병영식당) 사용료 집행의뢰 (24.11.1~11.30.)	'24.12.17.	38,410,100	서울도시가스(주)
공군	제3훈련비행단	[복지대대] 독신자숙소 난방연료비 (12월 사용분) (23.12.1~12.31.)	'24.1.30.	22,593,820	㈜지에스이
	제17전투비행단	12월 LPG 통합조달/취사연료 (24.11.20.~12.19.)	'24.12.27.	12,759,330	행운에너지
해군	해군 작전사령부	23년 12월 도시가스 대금(난방연료) (23.12.1~12.31.)	'24.1.25.	49,195,630	엠씨에너지(주)
	해군 작전사령부	24년 12월 작전사 도시가스 요금납부 요청 (24.11.16~12.15.)	'24.12.30.	15,321,070	㈜부산도시가스

○ 국방부의 따르면 일부 부대에서 예산집행률 향상 또는 기존 대금정산 관행을 고려하여 12월의 일부 사용량에 대해 당해연도 예산으로 대금정산을 하였던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집행률 향상을 위한다면 전 해당부대에 대해 가스류 정산시기의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따라서 국방부는 각군별, 부대별 연말 가스류에 대한 대금정산시기와 관련하여 예산집행의 통일성 차원에서 정산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16) 수송활동(2336-301): TMO 수송지원 위법·불법 사용 근절방안 마련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수송활동(2336-301) 사업은 육로·철도·해상·항공수단으로 병력 및 군수장비·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여 전·평시 군수 지원태세를 완비하도록 하고 군 장병에 대한 편의제공으로 사기를 진작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사업으로,

○ 2024년도 예산액 1,200억 5,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억 7,600만원과 이·전용등(증) 38억 9,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242억 3,000만원 중 1,234억 4,800만원이 집행되고, 6억 1,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억 7,000만원이 불용됨.

[2024년도 수송활동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수송활동	120,057	276	3,897	124,230	123,448	612	170	122,778
수송제요금	114,423	247	3,514	118,184	117,481	543	158	117,144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TMO(Transportation Movement Office)는 국군수송사령부에서 국군 장병들의 수송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사무실로 장병들의 휴가 등 이동시에 철도 수송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함.

[TMO 운영 현황]

구 분	A급	B급	C급 이하	출장형 TMO
위 치	6개소	15개소	6개소	17개소
	서울, 용산, 동대구, 부산, 대전, 계룡	동서울, 광명, 수원, 강릉, 평택, 수서, 춘천, 울산, 창원, 포항, 오송, 창원중앙, 익산, 천안아산, 광주송정	만종, 마산, 진주, 논산, 장성, 목포	경산, 오근장, 서대전, 덕정, 퇴계원, 진해, 김천구미, 영천, 경주, 신탄진, 연무대, 증평, 홍성, 조치원, 영동, 전주, 부강
기 준 (장병 이용수)	一週 이용자 1,000명 이상	一週 이용자 500~1,000명	一週 500이하	

자료: 국방부

○ TMO를 통한 철도수송 지원은 부대에서 행선지(열차 정차구간)까지 여비 미지급 휴가[65]에 대해 원격(어플)으로 표를 받거나 현장 TMO에서 표를 받아 열차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정기휴가시에는 교통비가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정기휴가를 포함한 휴가임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TMO 후급지원을 받거나 원

65) 정기휴가(여비 지급) 외 청원휴가, 포상휴가 등은 여비 미지급 휴가임.

격으로 표를 받았음에도 현장 TMO에서 중복하여 후급지원을 신청하여 받는 경우 및 후급지원 범위(부대~행선지 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한 지원 신청시에는 TMO 위법·불법사용에 해당되어 당사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 후에 부정사용된 금액은 전부 국고로 환수조치하고 있음.

○ 이러한 TMO 위법·불법 사용사례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연가 120~140여건이었던 TMO 위법·불법 사용사례가 2024년도에는 이전과 비교하여 250건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연도별 TMO 지원관련 위법·불법 현황]

(단위: 건)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위법·불법 건수	142	124	138	250

자료: 국방부

○ TMO를 통한 철도운송은 예산으로 운영되는 지원으로서 위법·불법 사용은 공공재산의 목적 외 사용이 되는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군에 대한 신뢰도 저하 문제도 유발시킬 수 있음.

○ 또한 원격 표 수령과 TMO 후급지원을 중복으로 받는 경우와 같이, 지원 여부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시스템적으로 중복지원을 애초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여지나,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해 보임.

○ 따라서 국방부는 장병들에게 TMO의 목적과 규정 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고, 구조적으로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TMO 수송지원의 위법·불법 사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7) 재난 및 안전관리(2337-301): 안전세미나 등 적극적 개최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노력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재난 및 안전관리(2337-301) 사업은 재난대비태세 확립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안전관리시스템을 정착시키는 한편, 안전교육훈련과 대외기관과의 안전분야 협력 제고를 통해 국방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 2024년도 예산액 325억 2,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8억 3,200만원과 이·전용 등(증) 5억 6,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39억 2,600만원 중 316억 8,7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9,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9억 4,400만원이 불용됨.

[2024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재난 및 안전관리	32,527	832	567	33,926	31,687	296	1,944	32,245
안전관리시스템 정착	1,354	167	210	1,732	1,424	135	173	1,501
대외안전협력 제고	218	-	△12	206	192	10	4	201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대외 안전협력 제고 사업은 대외 유관기관과의 안전 분야 협력체계 구축 및 군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사업임.

○ 2024년도 대외 안전협력 제고 사업의 편성예산은 2억 1,800만원으로 이 중 1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고, 각군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음.

[2024년도 대외 안전협력 제고 사업 각군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국방부	32	30
육군	129	117
해군	15	15
공군	30	30
해병대	-	-
합계	206	192

자료: 국방부

○ 최근 연도별 국방안전세미나 및 각 군별 안전세미나 등의 개최 현황을 보면, 코로나-19에 따라 개최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후 매년 관련 예산편성을 기반으로 각 군별 안전아카데미 워크숍, 안전세미나, 안전 컨퍼런스 등의 명목으로 전반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음.

[연도별 각 군별 안전세미나 등 실시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국방안전세미나	실시여부(주제명)	실시(정보화 시스템적용을 위한 국방안전 업무 발전)	**미실시**	실시(국방안전 정책과 실무)	실시(정예선진강군 국방과 안전문화)
	예산편성	○	○	○	○
육군안전컨퍼런스	실시여부(주제명)	**미실시(코로나19)**	**미실시(코로나19)**	실시(生·動·感 넘치는 안전육군건설(부제: 안전 '알아야 산다!')	실시(육군 안전의 민군융합과 AI 혁신)
	예산편성	○	○	○	○
공군안전아카데미 워크숍	실시여부(주제명)	실시(조종사 상황인식)	실시(위험성 평가)	실시(물리적 환경 관리)	실시(조류 생태정보분석)
	예산편성	○	○	○	○
공군항공안전세미나	실시여부(주제명)	실시(항공우주시대의 선제적 안전관리)	실시(기술사회적 변화와 안전)	실시(항공우주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방안)	실시(선진화된 항공우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예산편성	○	○	○	○
해군안전세미나	실시여부(주제명)	실시(함정, 항공기 안전사고 사례를 통한 안전관리 발전방안)	실시(전력별 안전관리업무 발전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세미나)	실시 안전문화 확산을 통한 「안전 해군」 건설(위험성 평가체계 정착 방안을 중심으로)	**미실시**
	예산편성	×	×	×	×
해병대안전세미나	실시여부(주제명)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예산편성	×	×	×	×

○ 다만, 해군의 경우, 그동안 안전세미나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예산 조정 등을 통해 안전세미나를 실시하였다가, 2024년도에는 별도의 세미나 개최를 실시하지 않았고,해병대의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편성이 없어 안전세미나 개최실적이 전무함.

○ 각 군별 특징에 따라 각각의 안전 관련 취약점에 대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례학습을 통해 안전예방 등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이에 각 군별 예산편성과 주제선정 등 사전계획 수립을 통해 동 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어 보임.

○ 따라서 국방부는 각 군별 특징에 맞게 안전세미나 등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8) 주요기관 교육용탄약(2339-304): 예산에 미편성된 신규사업 추진 지양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주요기관 교육용탄약(2339-304) 사업은 육군의 실전적 교육훈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교육훈련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훈련용 탄약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3억 8,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4,300만원과 이·전용 등(증) 204억 9,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09억 2,000만원 중 176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31억 9,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1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4년도 주요기관 교육용탄약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주요기관 교육용 탄약	386	43	20,490	20,920	17,622	3,196	101	8,383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액은 3억 8,600만원었으나, 이전용 등(증)을 통해 예산현액은 209억 2,000만원이 되었는데, 이는 드론작전사령부에 배치할 소형자폭드론 총 100대를 구매할 목적이었음.

[2024년도 소형자폭드론 구매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공급업체
소형자폭 드론 획득	-	20,490	20,490	17,194[66]	대한항공, (폴)WB Electronics

자료: 국방부

○ 소형자폭드론 획득을 위해 사용된 이전용 등(증) 규모는 204억 9,000만원으로 내역변경(함포교육용탄약, 항공교육용탄약, 지상교육용탄약) 및 자체전용(특수장비(유지))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였음.

[재원마련을 위한 이전용 등 세부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금액	~으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이전용 등 사유
내역변경 (2.6.)	함포교육용탄약 (2339-302)	1,900	주요기관 교육용탄약 (2339-304)	소형자폭드론 구매 부족 예산 확보
내역변경 (2.6.)	항공교육용탄약 (2339-303)	700	주요기관 교육용탄약 (2339-304)	소형자폭드론 구매 부족 예산 확보

66) 소형자폭드론-I형(국내구매) 37억 400만원, 소형자폭드론-II형(국외구매) 134억 9,000만원

구분 (날짜)	~에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금액	~으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이전용 등 사유
내역변경 (2.15.)	지상교육용탄약 (2339-301)	5,400	주요기관 교육용탄약 (2339-304)	소형자폭드론 구매 부족 예산 확보
내역변경 (8.5.)	지상교육용탄약 (2339-301)	4,000	주요기관 교육용탄약 (2339-304)	소형자폭드론 구매 부족 예산 확보
자체전용 (10.2.)	특수장비(유지) (2333-311)	7,444	주요기관 교육용탄약 (2339-304)	소형자폭드론 구매 부족 예산 확보
자체전용 (12.9.)	**특수장비(유지) (2333-311)**	**1,096**	**주요기관 교육용탄약 (2339-304)**	**소형자폭드론 구매 부족 예산 확보**

○ 소형자폭드론 구매사업은 2024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으로, 예산 조정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받지 않고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국회의 예산심의·확정 권한을 침해하였고, 「국가재정법」 제45조[67]에 따른 세출예산의 목적 외 집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부적절한 예산집행이라고 보여짐.

○ 더욱이, 2025년도 국방부 소관에 대한 국회의 예산안 심사시 2024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소형자폭드론 구매를 신규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지적[68]이 있었음에도 이후 2024년 12월 9일에 10억 9,600만원을 다시 자체전용하여 동 구매사업을 계속 추진하였는바, 이는 집행방식이 부적절한 것을 인지한 후에도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

67)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68) 2025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했다는 점에서 재정민주주의 훼손 및 형식적 예산심의권으로의 전락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국방부는 향후 국회의 예산심의·확정 권한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고, 집행방식 등에 대해 국회가 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19)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2436-302):훈련장 시설의 연례적인 집행부진의 개선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방안 마련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2436-302)은 훈련장 부지매입, 훈련장 시설, 훈련장 시설유지 및 일반교육시설 건설 및 운영을 추진하는 사업임.

○ 2024년도 예산액 2,594억 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487억 1,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081억 2,400만원 중 2,420억 800만원이 집행되고, 521억 3,3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39억 8,400만원이 불용됨.

[2024년도 부대훈련 및 지원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훈련장 및 일반교육 시설	259,409	48,715	-	308,124	242,008	52,133	13,984	255,516
훈련장 시설	163,814	36,221	△999	199,037	153,535	36,014	9,488	182,313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훈련장 시설은 노후된 훈련장 시설을 보강하고 실전적인 훈련여건 보장을 위한 제반시설을 구축하는 한편, 안전사고 및 민원발생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내역 사업으로,2024년도 예산액 1,638억 1,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362억원 2,100만원 및 이·전용(감) 9억 9,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990억 3,700만원 중 1,535억 3,500만원이 집행되고, 360억 1,400만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94억 8,800만원이 불용됨.

[연도별 훈련장 시설 내역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대비 집행률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이월률	불용률
훈련장 시설	2021년	92.4	**84.9**	12.5	2.6
	2022년	99.4	**85.9**	9.9	4.2
	2023년	87.2	**80.3**	16.9	2.8
	2024년	93.7	**77.1**	18.1	4.8

자료: 국방부

○ 훈련장 시설사업은 연례적 집행부진사업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2022년 85.9%, 2023년 80.3%, 2024년 77.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69)]

69) 2021회계연도 및 2022회계연도 국방위원회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훈련장 시설 내역사업에 대하여 사업관리 철저 및 집행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① 2021회계연도 결산: 국방부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며 사업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편성된 예산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 특히, 다음 표에 설명된 10개의 훈련장 시설에 대한 공사 건들의 경우에는 2024년 공사비가 10억원 이상 투입되었으나, 설계 지연·변경,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집행계약변경, 공사업체 부도 및 문화재조사 등으로 인해 집행률이 50% 이하로 저조하였음.

[공사비 10억원 이상 편성사업 중 집행률(50% 이하) 저조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4년				2025 예산안
			비목	편성	집행	집행률	
육군 39사단 117여단 차단벽구조 사격장 신설	'23~'26	13,020	기본조사설계비	35	35		-
			실시설계비	53	24		-
			공사비	2,598	1,031		5,661
			감리비	27	0		43
			시설부대비	7	0		11
			소계	2,720	1,090	40.1	5,715
육군 9사단 차단벽구조 사격장 신설	'23~'26	9,216	기본조사설계비	35	35		-
			실시설계비	53	40		-
			공사비	2,598	886		5,745
			감리비	27	-		43
			시설부대비	7	-		11
			소계	2,720	961	35.3	5,799
육군 1사단 15여단	'23~'26	6,161	기본조사설계비	24	24		-
			실시설계비	36	26		-

노력할 필요가 있겠음.

② 2022 회계연도 결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며 사업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편성된 예산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음.

구 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4년				2025 예산안
			비목	편성	집행	집행률	
실내사격장 신축			공사비	1,735	0		2,047
			감리비	19	12		22
			시설부대비	4	2		1
				1,818	64	3.5	2,070
육군 2군단 계성리 실전적 과학화훈련장 구축	'21~'27	27,026	기본조사설계비	57	8		-
			실시설계비	122	122		-
			공사비	5,343	617		4,297
			감리비	145	145		-
			시설부대비	15	12		73
			소계	5,682	904	15.9	
육군 군수교 3수송교육연대 정비종합실습장 신축	'22~'25	5,663	기본조사설계비	19	17		-
			실시설계비	38	34		-
			공사비	3,711	833		2,878
			감리비	338	338		-
			시설부대비	-	-		-
			소계	4,106	1,222	29.8	2,878
육군 군수교 3수송교육연대 1교육대 수송종합훈련장 보강	'22~'25	6,851	기본조사설계비	23	20		-
			실시설계비	46	41		-
			공사비	2,394	833		1,561
			감리비	-	-		-
			시설부대비	-	-		-
			소계	2,463	894	36.3	1,561
육군 군수교 3수송교육연대 2교육대 수송종합훈련장 보강	'22~'25	4,343	기본조사설계비	12	10		-
			실시설계비	25	22		-
			공사비	4,306	833		3,478
			감리비	-	-		-
			시설부대비	-	-		-
			소계	4,343	865	19.9	3,478
육군 특전교 교수부 교육관 신축	'21~'25	5,672	기본조사설계비	-	-		-
			실시설계비	-	-		-
			공사비	4,869	1,469		3,400
			감리비	485	480		-
			시설부대비	-	-		-
			소계	5,354	1,949	36.4	3,400
공군 18비	'24~'25	3,025	기본조사설계비	-	-		-

구 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4년				2025 예산안
			비목	편성	집행	집행률	
실내사격장 개보수			실시설계비	62	53		-
			공사비	1,144	450		1,880
			감리비	-	-		-
			시설부대비	-	-		-
			소계	1,206	503	41.7	1,880
해병대 9여단 차단벽 구조 사격장 신축	'22~'25	11,691	기본조사설계비	-	-		-
			실시설계비	-	-		-
			공사비	2,879	714		2,879
			감리비	500	500		500
			시설부대비	8	8		8
			소계	3,387	1,222	36.1	3,387

자료: 국방부 제출

특히, 육군 1사단 15여단 실내사격장 신축은 집행률 3.5%로 매우 저조하였다는 점에서 특별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임.

○ 따라서 국방부는 훈련장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자체와의 협의사항 및 설계 시 고려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설계변경 및 공기지연 등을 최소화하고 집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 부대훈련 및 지원(2438-301):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육군 국제저격수 경연대회 등의 재발방지 대책 강구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부대훈련 및 지원(2438-301)은 제대별, 전술훈련 등 각종부대훈련 여비 등을 지원하고, 부대훈련에 대한 통제·평가하며, 지휘관 위임훈련·훈련피해보상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24년도 예산액 556억 6,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00만원과 이·전용 등 8억 8,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65억 5,500만원 중 541억 7,600만원이 집행되고, 6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3억 7,300만원이 불용됨.

[2024년도 부대훈련 및 지원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부대훈련 및 지원	55,669	1	885	56,555	54,176	6	2,373	58,760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육군 국방부장관배 국제저격수 경연대회**는 당초 2024년도 예산 편성되지 않았으나, 2024년 4월 24일 국방부장관 지시[70]에 의하여 추진이 진행되었음.

동 대회는 2024년 9월 7일(토)부터 13일(금)까지 특수전학교·3공수특전여단에서 진행되었고, 미국, 몽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을 비롯하여 총49개팀 130명이 참여하였음.

[육군 국방부장관배 국제저격수 경연대회 현황]

가. 대회참가 : 총 49개 팀 130명 (외국군 9개 팀, 한국 팀 40개 팀)
1) (외국군) 미국, 몽골, 인니, 우즈벡, 캄보디아
* Legend 그룹으로 참가
2) (한국군) 특전 · 특공, 수색부대, 군사경찰, 보병분대(兵), 해·공군, 해경

나. 대회진행 : 9.7.(토) ~ 13.(금), 특수전학교 · 3공수특전여단
1) (1경기대) 2개 그룹 (Legend, Specialist) 구분, 통합하여 순환경기
2) (2경기대) 각 군단 · 수방사 저격수 (兵) 경기로 K2C1 소총사격

자료:국방부 제출

70) 장관 지시사항: 우리도 미군처럼 저격수대회와 같은 국제적 경연대회를 활성화해야 함.

[국제저격수 경연대회 예산 조정액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4년 편성액	예산 조정액	집행액	잔 액
계	-	398	354	44
일반수용비(210-01)	-	197	193	4
급식비(210-04)	-	123	85	38
임차료(210-07)	-	65	65	0.01
재료비(210-11)	-	10	10	0.2
기타운영비(210-16)	-	3	2	1

자료: 국방부 제출

육군은 **육군 국방부장관배 국제저격수 경연대회**의 신규추진을 위해 세목조정 및 해외연합훈련(2438-302) 등의 다른 세부사업으로부터의 예산변경 등을 통하여 예산 3억 9,800만원을 확보하고, 이중 3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세부집행내역은 아래 표에 있음.

[국제저격수 경연대회 세부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 내용	금 액
210-01	· 행사준비 물품 및 평가용품 (상반신 타켓, 인공혈액, 깃발 등 15종) · 숙영시설 물품 및 경연대회 기념품 (소모성 생활용품, 메달, 코인, 기념패 등) · 경기용 사격 자재, 안전용품 (사격진지 장애물 구축, 장갑, 경광봉 등) · 국내외 홍보 팜플렛 및 초청장, 홍보 및 전시 부스, 기념앨범 제작 등	193
210-04	· 행사준비 요원, 방문자, 선수단 식사 (리셉션, 도시락 등) · 대회 개최 준비 현장토의 및 위험성평가, 협조회의 중식 ※ 경연대회 준비 및 대회 기간 : 9. 2.(월) ~ 15.(일)	85
210-07	· 행사 대기장소 장비, 통역·음향장비 임차	65
210-11	· 경기장 및 사격장 구성 소모성 물품	10

구 분	세부 내용	금 액
	(선수 목걸이 및 명찰, 경기장 간판, 통제관 패치, 통제깃발, 네임택 등)	
210-16	· 외국군 문화탐방 및 대외기관 협조 등 준비비 (유관기관, 지자체, 행사업체, 협조회의 준비 등)	2
계		354

자료: 국방부 제출

○ 이와는 별도로 육군은 2024년 3월 국방부 장관 지시로 2024 K-Military Festival의 주요 과제로 민·군 화합 서바이벌 경연대회를 선정하고, 국방부 차관 주관 회의에서 이를 국제 과학화전투 경연대회(K-ICTC)와 병합하여 실시토록 결정함에 따라 육군 국제저격수 경연대회와 같은 기간(2024년 9월 7일- 13일)에 제2회 **국제 과학화전투 경연대회(K-ICTC)**를 개최하였고, 동 대회에는 외국군(4개팀)과 한국군(9개팀)이 함께 참여하였음.[71]

[제2회 국제 과학화전투 경연대회(K-ICTC) 현황]

가. 목적: **「자랑스러운 육군」, 「국민에게 사랑받는 육군」** 구현
  1) (대외) **한국군 우수성(과학화훈련체계·장비, 전투기술 등) 홍보, 방산 수출과 군사외교**에 기여
  2) (대내) **실전성 제고, 조우전 전투기량 향상, 국민지지 획득**
나. 기간: **9. 7.(토) ~ 9. 13.(금) / 1주**
다. 참가국(팀) : **외국군(4개팀) + 한국군(9개팀)**
  1) 외국군(4개 팀): 미국, 호주, 캄보디아, 우즈백
    * 참관(10개국): 인도, 싱가포르, 캐나다, 튀르키예, 멕시코, 몽골, 카타르,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2) 한국군(9개 팀): 지작사(3), 2작사(2), 특전사,

자료: 국방부 제출

71) 대외적으로 한국군 우수성을 홍보하고 방산 수출과 군사외교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대내적으로는 실전성 제고 및 조우전 전투기량 향상, 국민지지 획득을 목적으로 하였음.

2024년도 국제 과학화전투 경연대회(K-ICTC)의 예산은 2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육군은 편성된 예산보다 3배 가량인 6억 500만원을 같은 단위사업 훈련 및 교육지원(2438)에 속한 4개 세부사업[72]으로부터 내역변경하여 총 8억 2,600만원을 확보하고 이 중 8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음.

[국제 과학화전투 경연대회 예산 변경액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4년 편성액	예산 조정액	집행액	잔 액
계	221	605	803	23
일반수용비(210-01)	55	239	294	-
급식비(210-04)	56	66	122	-
임차료(210-07)	106	300	382	23
재료비(210-11)	1	-	1	-
기타운영비(210-16)	1	-	1	-
여비(220-01)	2	-	2	-

자료: 국방부 제출

72) 부대훈련 및 지원(2438-301), 작전상황연습(2438-302), 공통교보재지원(2438-303), 전투발전연구(2438-304)

[국제 과학화전투 경연대회 세부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 내용	금 액
계		803
일반수용비 (210-01)	· 훈련장 정비 및 행사준비 물품 및 평가용품 (**안내간판**, 상반신 타켓, 인공혈액, 깃발 등 15종) · 숙영시설 물품 및 경연대회 기념품 (소모성 생활용품, 코인, **티셔츠, 모자, 메달, 기념패** 등) · 경기용 사격 자재, 안전용품 (사격진지 장애물 구축, 장갑, 경광봉 등) · 국내외 홍보 팜플렛 및 초청장, 홍보 및 전시 부스, **홍보 동영상 및 홍보인원 섭외**, 기념앨범 제작, **행사주최자 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	294
급식비 (210-04)	· 행사준비 요원, 방문자, 선수단 식사 (리셉션, 도시락 등) · 대회 개최 준비 현장토의 및 위험성평가, 협조회의 중식 ※ 경연대회 준비 및 대회 기간 : 9.2.(월) ~ 15.(일)	122
임차료 (210-07)	· 행사 대기장소(**몽골텐트 및 화장실 편의시설 등**) 장비, **카이샷·드론, 대형 LED Wall 등 영상 및 음향장비** 임차	382
재료비 (210-11)	· 경기장 및 사격장 구성 소모성 물품 (선수 목걸이 및 명찰, 경기장 간판, 통제관 패치, 통제깃발, 네임택 등)	1
기타운영비 (210-16)	· 민·군 화합 서바이벌 경연대회 기념패 · 외국군 문화탐방 및 대외기관 협조 등 준비비 (유관기관, 지자체, 행사업체, 협조회의 준비 등)	1
여비 (220-01)	· 유관기관, 지자체 등 대외기관 협조 출장여비	2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

○ 이와 같이 육군이 당초 동 세부사업에 미편성된 육군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를 정부의 예산편성 및 국회의 예산심의·의결 등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신규추진한 것은 「헌법」 제54조제1항[73] 및

73)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국회법」 제84조[74] 등에 따른 국회의 예산심의 및 확정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임.

또한, 육군이 당초 작전상황연습·공통교보재지원·전투발전연구사업의 목적으로 편성되어 있던 다른 세부사업들에서 예산을 변경하여 **국제 과학화전투 경연대회(K-ICTC)**를 위해 6억 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예산에 대한 조정 수준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규모와 큰 폭으로 다르게 임의로 3배 이상 사업규모를 확대·집행한 것임.

이는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한 경우에 해당하고, 육군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 신규추진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신규사업을 추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재정법」 제45조[75]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집행지침」[76]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한 예산집행임.

---

74)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이하 항들 생략)

75)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76) 집행지침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동 집행은 가, 나, 다에 모두 해당하는 집행임.

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나.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다. 연도말에 다른 사업예산의 집행 잔액을 전용하여 불요.불급한 소요에 충당하여 집행하거나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경우 등

○ 따라서 국방부와 육군은 향후 국회에서 심의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고, 기존에 편성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을 과다하게 확대하여 집행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조정 및 세부사업 변경에 대한 심의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1) 간부확보장려사업 (2439-301): 단기복무장려금 예산 편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간부확보장려사업은 대학·전문대 재학생 중 지원자에게 가산복무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산복무지원금 사업과 학사 및 학군사관 후보생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단기복무장려금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4년도 예산액 933억 1,300만원에 이·전용 등(감) 9억 4,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23억 6,800만원 중 827억 500만원을 집행하고, 96억 6,3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4년도 간부확보장려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간부확보장려사업	93,313	-	△945	92,368	82,705		9,663	93,380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간부확보장려사업의 내역사업 중 하나인 단기복무장려금은 병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단기장교 지원율이 감소하자, 우수한 장교 인력 확보 및 금전적 보상 제공 차원에서 2011년부터 지급되고 있음.

○ 「군인사법」 제62조의2에 따르면,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77]은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ROTC),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으로 한정[78]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학사학위를 이미 취득한 사람(졸업생)은 학사장교로 선발될 수 있는 임용연령 자격은 충족[79]되나, 법 제6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지급 대상을 '대학 재학생'으로 한정함에 따라 단

---

77) **「군인사법」 제62조의2(장려금의 지급)** ① 각군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2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2.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3.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군의 인력 운영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78) 학사장교를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재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으로 구분한 이유는 대학교 재학 시절 학사장교 지원을 염두에 두지만 미선발될 가능성을 고려(미선발시 현역병 등으로 입대해야 하기 때문)하여, 진로 선택의 안정적인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교 1,2,3학년을 대상으로 예비장교후보생 제도(졸업 후 학사장교로 임관)를 마련한 것임.

79) 「군인사법」 제15조(임용연령 제한) ①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최초로 임용되는 사람의 최저연령과 최고연령은 다음과 같다.
소위: 최저연령 - 20세, 최고연령 - 29세

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2024년도 단기복무장려금은 1인당 1,200만원으로, 예산 집행 내역은 예산액 487억 9,200만원에 이·전용 등(감) 90억 5,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97억 3,700만원 중 329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68억 1,900만원에 달함.

2024년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당초 4,066명에게 1,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지급 인원이 2,768명으로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임.

[2024년도 단기복무장려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간부확보장려사업	93,313	-	△945	92,368	82,705	-	9,663	93,380
단기복무장려금	48,792	-	△9,055	39,737	32,918	-	6,819	48,792

자료: 국방부

○ 예산 편성 대비 집행 인원이 적었던 근본적 이유는, 2024년 예산 편성 시 「군인사법」상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졸업생)을 대상으로 신규 예산 60억원을 편성하였다가 전액 불용한 데 있음.

○ 법률상 장려금 지급 대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 대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정책변경에 따른 법 개정과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국방부는 초급간부 획득률을 제고하고자 2023년도에 2024년도 국방부 예산을 편성하면서 단기복무장려금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2024년도에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음.

○ 국방부는 법률상 근거 없이 편성된 예산이 전액 불용되는 사례가 향후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단기복무장려금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근거 법률 개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임.

(22) 인사정책지원 (2439-306): 충분한 정책 검토를 통한 학군사 관후보생 선발 방식 변경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인사정책지원 사업은 장교 및 부사관 선발을 위한 각 군의 모집 홍보 및 선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2024년도 예산액 173억 6,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3억 7,400만원, 이·전용 등(증) 37억 7,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15억 1,300만원 중 212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5,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9,1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4년도 인사정책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인사정책지원	17,366	374	3,773	21,513	21,264	57	191	20,795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인사정책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중 학군사관후보생(ROTC) 선발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육군은 2024년도 학군사관후보생 모집을 위해 1억 8,300만원을 편성하고, 이·전용 등을 통해 2,400만원을 조정하여 총 2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4년도 육군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육군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사업	183	0	24	207	207	0	0	179
210-01 (일반수용비)	36	0	18	54	54	0	0	45
210-04 (급식비)	19	0	9	28	28	0	0	23
210-07 (임차료)	5	0	△5	0	0	0	0	7
210-16 (기타운영비)	123	0	3	126	126	0	0	104

자료: 국방부

○ 육군은 2024년 1월 24일,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과정에서 필기시험을 대학 성적 등으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였고, 국방부 전군 감사관계관 회의에서 해당 조치를 모범감사사례로 선정[80]하였음.

○ 국방부(육군)는 필기시험 폐지의 근거로 「군인사법 시행규칙」[81]에 따라 대학 재학 중 성적으로의 대체 가능성, 대학 성적이 필기시험보다 군 간부후보생으로서의 자질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 수험부담 완화를 통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음.

○ 다만, 육군의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과정의 필기시험 폐지는 예산적, 내용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보임.

○ 첫째, 국방부는 약 5,000만원의 시험비 절감 효과 및 인력 효율화를 강조하며 이를 모범감사사례로 선정[82]하였으나, 실제 집행 내역은 후반기 추가선발로 인해 예산 편성액(1억 8,300만원)을 초과하여 총 2억 700만원이 집행되었고,

2024년 예산 편성 당시에는 필기고사 시행을 전제로 예산이 배정되었음에도 해당 예산을 온라인 인성검사, 추가 선발모집에

---

80) 2024년 3월 27일

81)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조(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 「군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필기시험: 영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응시자의 학력에 따라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관후보생 응시자 중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응시자에 대해서는 출신대학 또는 재학 중인 대학에서의 학업성적으로 필기시험을 갈음할 수 있으며 사관후보생 응시자 중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및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82) 2024.3.27. 국방부 전군 감사관계관 모범감사사례 선정 -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의 학생군사학교 검열 과정에서 학군사관 후보생 선발 필기시험으로 인해 지원자들이 부담을 가질 뿐만 아니라 연간 5000여 만원의 비용과 시험통제관 등으로 인해 550명의 과다 인력 소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육군은 학군사관 후보생 지원자의 선발시험 부담감 해소와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선발 필기시험을 폐지하고 대학성적 등으로 이를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치했다.

소요되는 예산으로 집행한 바, 이는 적절한 예산집행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둘째, 예산 편성 내역에 따르면 2024년도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계획에는 필기시험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선발 제도변경의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해당연도 선발부터 선발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기존에 필기평가를 준비했을 일부 응시자의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다고 보임.

○ 셋째, 육군은 대학 성적 반영을 통해 응시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는 대학 성적이 전체 선발요소 중 20%만 반영되고 있으며 불합격 기준도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음. 반면, 해군은 대학 성적을 50% 반영하고, 백분위 50% 미만일 경우 불합격 처리하는 등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바 육군의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제도 설계의 면밀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 넷째, 면접평가는 2024년도 ROTC 선발에서 전체 배점의 40%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2023년도 30%에서 필기시험 폐지를 계기로 확대된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면접은 2024년 전반기에만 시행되고 후반기에는 미실시되는 등 평가방식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면접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설정하였으나 구체적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임.

[2023～2024년도 육군 학군사관후보생 평가 배점 현황]

2023년도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평가요소 및 배점		2024년도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평가요소 및 배점	
필기평가	200	필기평가	-
대학성적	200	대학성적	200
수능 또는 고등학교 내신	200	수능 또는 고등학교 내신	200
면접평가	300	면접평가	400
체력인증	100	체력인증	200
총점	1000	총점	1000

자료: 국방부

○ 따라서 국방부(육군)는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제도를 충분한 사전 검토와 계획 없이 변경·시행함으로써, 예산의 목적 외 집행과 응시자의 혼란 및 평가 방식의 혼선을 초래한 바, 양질의 학군사관후보생 선발을 위해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제도를 보다 면밀히 설계·운영할 필요가 있음.

(23) 군사시설 총괄(2500): 군사시설 프로그램 감리비 집행률 저조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2500) 프로그램은 군사시설의 신축·보수 등 건설 관련 사업을 포함하며, 이에 따른 감리 계약도 다수 수반되는 프로그램임.

[2024년도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프로그램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5,111,828	505,302	△5,660	5,611,470	5,197,060	289,044	125,367	5,098,634
감리비 (420-04)	**236,327**	21,419	**△105,256**	152,491	**127,344**	17,541	7,606	223,825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감리는 건설 현장에서 설계와 시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서 군사시설의 기능 보전 및 안전 확보와도 직결되기에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국방부는 2024년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공사비 50억원 미만의 건설사업에도 확대 적용[83]됨에 따라, 군 시설사업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24년 예산안 편성 시부터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건설사업관리비(전면책임감리비)를 반영하였음.

「2024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대상공사(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등)의 경우 건설사업관리비(**전면책임감리**)를 반영함. 다만,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발주청이 검토한 결과 **직접감독 가능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공사감리비를 반영**(소요제기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정 감리비를 산출)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2022. 1. 27.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에 적용, **2024. 1. 27.부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도 적용**

자료: 국방부

8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 칙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다만, 국방부의 2024년 감리비 예산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이 전체적으로 저조한 수준임.

[2024년도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감리비 세부사업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집행률 (B/A)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감리비 (420-04)	236,327	21,418	△105,255	152,490	127,345	17,541	7,606	53.9
병영생활관 (2531-301)	26,020	2,991	△8,810	20,201	18,107	1,582	512	69.6
병영생활관 부속시설 (2531-304)	16,726	1,772	△6,453	12,043	8,085	2,567	1,391	48.3
관사 및 간부숙소 (2532-301)	37,710	3,425	△14,347	26,789	22,118	3,461	1,211	58.7
환경보전시설 (2533-301)	14,276	639	△10,794	4,121	2,819	764	538	19.7
정비 및 보급시설 (2533-302)	26,122	2,491	△10,466	18,147	15,166	1,965	1,016	58.1
일반지원시설(2533-303)	62,472	10,052	△29,727	42,797	35,229	5,649	1,919	56.4
항공우주작전본부 신축 (2533-317)	4	0	△4	0	0	0	0	0
시설유지관리(2536-301)	52,997	48	△24,653	28,392	25,821	1,553	1,019	48.7

자료: 국방부

○ 이에 대해 국방부는 전면책임감리비 요율에 따라 감리비를 편성[84]하였으나, 도서·산악·전방 등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나 소규모 사업의 경우 입찰공고에 응하는 업체가 적어 감리계약이 유찰되는 사례가 많았고,

이로 인해 전면책임감리 방식이 아닌 직접감리 또는 비상주감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전면책임감리비로 편성된 예산을 실제로는 집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는 입장임.

[2024년도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공 사 비 (억 원)	개 산 요 율 (%)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100	9.66	10.78	11.80
200	7.34	8.14	8.97
300	6.24	6.92	7.62
400	5.48	6.09	6.70
⋮	⋮	⋮	⋮

자료: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기획재정부)

○ 국방부는 감리비 집행률 제고를 위해 소규모 사업에 대한 묶음 발주를 확대하여 감리계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을 독려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단계에서 실소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비를 편성하며, 정기적인 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예산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임.

84) 내진보강, 여성화장실 등 일부 소규모 사업은 미적용(전체 신규사업의 6%),
'24년 계속사업 중 예산 편성 당시 공사계약 체결 이전 단계의 사업들은 전면책임감리비 요율을 적용하여 편성하였고, 이미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공사 진행 중인 사업은 기존 감리비 유지(전체 계속사업의 14%)

○ 따라서 국방부는 감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감리예산 집행 실적을 반영한 면밀한 예산 편성과 더불어 소규모 사업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시설본부 내 직영 감리 인력 확충 등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4) 관사 및 간부숙소 (2532-301): 비목 설정 오류에 따른 예산 과다 편성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관사 및 간부숙소 사업은 군인의 안정적 주거 여건을 위해 부족하거나 노후한 군 주거시설을 확보 및 개선하는 사업임.

2024년도 예산액 5,259억 7,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736억 8,100만원, 이·전용 등(감) 111억 3,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885억 2,800만원 중 5,268억 1,200만원을 집행하고, 493억 9,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3억 1,8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4년도 관사 및 간부숙소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관사 및 간부숙소	525,977	73,681	△11,130	588,528	526,812	49,398	12,318	786,292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관사 및 간부숙소 사업은 부족한 군 주거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관사 및 간부숙소의 신축 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 특히 군 특성상 도서·산간 지역에 많이 위치한 사례가 많아,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지역 내 부지에서 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군사시설 신축사업은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으나[85], 개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국토교통부와의 대관협의, 보전부담금 납부 등의 절차가 수반됨[86].

○ 국방부는 기존에는 대관협의 예산을 각 사업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해 왔으나, 2024년부터는 이를 관사 및 간부숙소 사업의 별도 내역사업으로 구분하여 기본설계비 비목(420-01)으로 신규 편성하였음.

---

8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라.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8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2.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나 건축물의 건축 허가에 해당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제12조제1항 단서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 다만, 국방부(육군)는 2024년도에 새롭게 편성한 대관협의 및 신축 내역사업 중 일부 사업에 대하여 대관협의 목적의 예산 비목을 대관협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건설보상비(410-00)[87] 로 편성함으로써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음.

이에 따라, 2024년도에 추진된 육군 관사 및 간부숙소 관련 14건의 사업에 대해 기본설계비 및 건설보상비 31억 2,500만원은 과다 편성되어 집행되지 못하였고, 이는 공공요금 등 타 비목으로 전용하거나 조정하여 집행되었음.

87)「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410-00 건설보상비 1)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매입비 2) 건축 및 토목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보상비와 동 공사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비 3) 1~2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 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420-01 기본조사설계비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 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2024년도 관사 및 간부숙소 사업 중 중복편성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부진사유	이전용 (조정) 내역	해당 사업 예산편성 시작연도
육군	수방사 56사단 관사 신축 30세대 대관협의	53	0	비목 설정 오류	공공요금(2536-302)으로 53백만원 전용('24.10.22)	2024
육군	수방사 1방공여단 관사 신축 30세대 대관협의	149	0	비목 설정 오류	공공요금(2536-302)으로 149백만원 전용('24.10.22)	2024
육군	5군단 관사 신축(포천 500세대 대관협의)	1,273	0	비목 설정 오류	공공요금(2536-302)으로 261백만원 전용('24.10.22) 간부숙소 신축사업으로 245백만원 조정('24.10.30) 수방사 작전지휘시설 신축(2533-303)으로 767백만원 전용('24.12.26)	2024
육군	수방사 56사단 관사 신축 30세대 대관협의	149	0	비목 설정 오류	공공요금(2536-302)으로 149백만원 전용('24.10.22)	2024
육군	1군단 JSA 경비대대 간부숙소 신축	36	0	비목 설정 오류	공공요금(2536-302)으로 36백만원 전용('24.10.22)	2024
육군	1군단 1사단(파주시 두포리) 모듈러형 간부숙소 신축	40	0	비목 설정 오류	공공요금(2536-302)으로 40백만원 전용('24.10.22)	2024
육군	수방사 1방공여단 503대대 간부숙소 신축 대관협의	149	0	비목 설정 오류	공공요금(2536-302)으로 149백만원 전용('24.10.22)	2024
육군	2군단 7사단 풍산리 간부숙소 B동 신축	187	0	비목 설정 오류	공공요금(2536-302)으로 187백만원 전용('24.10.22)	2023
육군	2군단 7사단 풍산리 간부숙소 A동 신축	230	0	비목 설정 오류	공공요금(2536-302)으로 230백만원 전용('24.10.22)	2023
육군	1군단 1사단 대능리 간부숙소 신축	158	0	비목 설정 오류	공공요금(2536-302)으로 158백만원 전용('24.10.22)	2022
육군	1군단 2기갑여단 등원리 간부숙소 신축	33	0	비목 설정 오류	공공요금(2536-302)으로 33백만원 전용('24.10.22)	2022

구분		예산액 (백만원)	집행액 (백만원)	집행부진사유	이전용 (조정) 내역	해당 사업 예산편성 시작연도
육군	2군단 15사단 사창리 간부숙소	270	0	비목 설정 오류	공공요금(2536-302)으로 270백만원 전용('24.10.22)	2023
육군	2군단 7사단 신풍리 간부숙소	270	0	비목 설정 오류	공공요금(2536-302)으로 270백만원 전용('24.10.22)	2023
육군	7군단 11사단 간부숙소 신축	128	0	비목 설정 오류	공공요금(2536-302)으로 128백만원 전용('24.10.22)	2022
합계		3,125	0			

자료: 국방부

○ 따라서 국방부(육군)는 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인해 상당 부분이 집행되지 못하고 타 비목으로 전용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에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 소요 및 예산 비목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25) 일반지원시설 (2533-303): 계룡대 주전력·예비전력 변전소 분리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일반지원시설 사업은 노후한 일반지원시설(행정, 복지, 법정, 종교, 작전, 경계, 토목시설 등)을 개선하여 군사대비태세 완비 및 장병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2024년도 예산액 7,919억 7,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446억 9,200만원, 이·전용 등(감) 179억 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187억 5,700만원 중 8,182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728억 1,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76억 9,1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4년도 일반지원시설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일반지원시설	791,975	144,692	△17,909	918,757	818,256	72,811	27,691	522,654
전기시설	53,023	6,009	△4,711	54,321	52,689	744	888	12,856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일반지원시설 사업 중 전기시설 내역사업은 적의 EMP(전자기 펄스) 공격 등 전자기적 위협에 대비하여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임.

○ 계룡대는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가 위치한 3군 통합 군사기지로, 우리 군의 전·평시 주요 지휘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전략 시설임.

○ 이와 같은 전략시설은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따라, 주전력이 차단될 경우에도 예비전력을 통해 작전 수행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력 공급체계를 이중화하여야 함[88].

[「국방·군사시설기준」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중 예비전력 구분]

구분	내용	기본 요금	사용요금
예비전력 “갑”	상시공급 변전소에서 상시공급 전압과 같은 전압으로 공급받기 위한 예비전력	상시전력 기본요금의 5%(국방부 소유 선로로 공급받는 경우는 2%)	상시전력에 대한 해당 계약종별의 전력량 요금 적용
예비전력 “을”	상시공급 변전소 이외 변전소에서 공급받기 위한 예비전력 또는 상시공급 전압과 다른 전압으로 공급받기 위한 예비전력	상시전력 기본요금의 10%(국방부 소유선로로 공급받는 경우는 6%)	

자료: 국방부

88) 「국방·군사시설기준」 2-10-50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3-4. 4 예비전력 설치 시 고려사항
2. 예비전력은 상시공급 변전소 이외의 다른 변전소에서 동일전압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예비전력 “을”)

○ 다만, 계룡대는 1987~1989년 초기 구축 당시 부대 여건을 고려하여 예비전력 '갑' 계약을 체결하고 예비선로를 구성하였음.

○ 현행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따르면, 예비전력은 상시공급 변전소 이외의 다른 변전소에서 동일 전압을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89]하고 있으나, 계룡대는 현행 기준과 달리 상시공급 변전소와 예비변전소를 분리하여 운영하지 않고, 평상시에는 주·예비 모두 상시공급 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고 있음.

○ 계룡대에는 2024년 9월 11일 한국전력 서대전지사 송전선로 이상으로 약 36분간 정전이 발생하였음.

구체적인 정전 발생 사유는 계룡대로 공급받는 한전 송전선로에 이상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이상전압으로 주전원을 예비전원으로 자동 전환해주는 자동전환장치(ALTS)가 한전 측 이상전압으로 인하여 제어반 고장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 계룡대에서는 정전 시간 동안 비상발전기 5대 운전, UPS(무정전 전원공급장치) 9대를 가동하여 정상 운용하였으나 향후 유사한 정전 상황이 재발할 경우, 군 전투지휘 및 작전 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89) 「국방·군사시설기준」 2-10-50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3-4. 4 예비전력 설치 시 고려사항
2. 예비전력은 상시공급 변전소 이외의 다른 변전소에서 동일전압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예비전력 "을")

○ 따라서 국방부는 계룡대와 같은 군 핵심시설의 전력공급체계 이중화를 「국방·군사시설 기준」에 따라 제도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고, 예비전력이 주전력과는 다른 경로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과의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여 전력설비에 대한 정상 작동 여건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26) 예비군훈련시설확보(2631-302): 동원훈련장 생활관 등 신축·개선 사업 연례적 사업 집행 부진 및 이월 개선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예비군훈련시설확보(2631-302)는 예비군생활관, 안보교육관, 식당 등 예비군훈련장 시설을 신축, 개·보수하는 사업임.

예비군훈련시설확보 사업은 2024년도 예산액 652억 800만원에 이·전용 등(증) 29억 7,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81억 8,300만원 중 599억 2,800만원을 집행(집행율 87.8%)하고, 66억 6,7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5억 8,8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4년도 예비군훈련시설확보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비군 훈련시설확보	65,208	2,975	-	68,183	59,928	6,667	1,588	73,897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예비군훈련시설확보(2631-302) 사업은 예비군 훈련의 여건 보장을 위하여 예비군생활관, 안보교육관, 식당 등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시설을 신축, 개·보수함으로써 원활한 예비군 훈련 실시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90]

○ 국방부는 예비훈련시설확보 사업의 일환으로 동원훈련장 내에 설치된 시설 중 노후화된 총 150개소의 생활관, 안보교육관, 식당을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2012년부터 '동원훈련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3년에 동 사업을 완료[91]할 계획임.

[동원훈련장 현대화 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

(단위: 개소)

구분	합 계			생활관		안보교육관		식당	
	계	신축	개축	신축	보수	신축	보수	신축	보수
목 표	150	87	63	43	35	21	19	23	9
실적 ('12년~'24년)	98	57	41	30	24	13	10	14	7
계획 ('25년~'33년)	52	30	22	13	11	8	9	9	2

자료: 국방부

90) 「예비군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 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1) 각 군 사업 조정 및 반영 필요에 따라 사업 완료 연도는 연장될 수 있음.(국방부 설명)

○ 국방부는 2024년에 전국에 설치·운영 중인 64개소 동원훈련장[92] 시설 중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신축, 개·보수가 필요하다 판단한 생활관 16개소, 안보교육관 2개소, 식당 2개소에 대하여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음.

[2024년 동원훈련장 현대화 사업 세부내용별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 및 집행액			2024년 이월 및 불용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이월액	불용액
계	37,726	34,226	90.7%	3,269	955
생활관	32,586	28,363	87.0%	2,644	786
안보교육관	3,003	2,687	89.4%	217	145
식 당	2,137	3,175	148.5%	408	24

자료: 국방부

○ 2024회계연도 동원훈련장 현대화 사업 예·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총 예산현액 377억 2,600만원 중 342억 2,6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 집행율은 90.7%로, 동 사업의 예산 집행율은 국방부 내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보이는 병영생활관 사업[93](2531-

92) 동원훈련장은 「병역법」 제50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1~4년차 예비역을 대상으로 2박3일 합숙훈련 형식으로 실시)이 실시되는 훈련장으로, 육군 33개소, 해군 4개소, 공군 19개소, 해병대 7개소, 국직부대 1개소 총 64개소가 운영중임.

93) 병영생활관 사업 : 노후·협소화된 병영생활관을 개선함으로써 병사들의 기본권 향상 및 사기 진작을 위한 병영환경 조성 사업(2024회계연도 기준, 예산현액 : 3,500억 5,800만원, 집행액 3,052억 6,000만원, 집행율 87.2%)

301)의 2024회계연도 예산집행률(87.2%)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됨.

○ 그러나, 동원훈련장 현대화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신축 공사, 개·보수 공사 등 개별 내내역사업 추진 세부 실적을 살펴보면, 2024회계연도에 16건의 생활관 개선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연내 사업을 완수하지 못해 사고이월된 사업이 13건에 달하고 안보교육관 및 식당 개선 사업은 각각 2건 계획에 2건 모두 사고이월되어 연도내 완료된 사업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됨.

[2024년 동원훈련장 현대화 사업 내내역사업 별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내내역사업 건수 (A)	사고이월 건수 (B)	이월액	이월비율 (B/A)
계	20건	17건	3,269	85.0%
생활관	16건	13건	2,644	81.2%
안보교육관	2건	2건	217	100%
식당	2건	2건	408	100%

자료: 국방부

○ 국방부는 2024회계연도 동원훈련장 현대화 사업의 과도한 사고이월 발생 원인에 대하여 정부 예산안 편성 시 2년에 걸쳐 집행이 필요한 사업 중 일부를 단년도 사업으로 편성한 점, 공사 착수 전 유관 기관 협의 지연 등에 따른 공사 기간 부족 등이 사업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이라 설명하고 있으나,

○ 동원훈련장 현대화 사업의 일정 지연에 따른 과도한 사고이월 발생은 최근 5년간의 사업 수행 실적을 감안했을 때, 2024회계연도에 국한된 이례적 현상이 아니라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로 파악됨.

[최근 5년간 동원훈련장 현대화 사업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생 활 관			안보교육관			식 당		
	사업 건수	이월 건수	이월액	사업 건수	이월 건수	이월액	사업 건수	이월 건수	이월액
2024년	16	13	2,644	2	2	217	2	2	408
2023년	11	5	1,867	3	2	52	1	1	82
2022년	5	3	7,800	-	-	-	3	2	3,368
2021년	6	5	1,942	1	1	623	-	-	-
2020년	6	3	2,685	5	1	1,140	3	1	1

자료: 국방부

○ 따라서 국방부는 동원훈련장 현대화 사업 집행 부진으로 인한 과도한 사고이월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의 사업 집행 관리 방식을 개선할 방안을 검토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 추진 계획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임.

(27) 동원훈련(2632-303): 동원훈련 보상비 사업 훈련 인원 추계 정확도 제고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동원훈련 사업은 예비군 동원훈련을 운영하고, 훈련 수행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2024년도 예산액 501억 9,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증) 1,100만원, 이·전용 등(감) 2억 9,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99억 500만원 중 406억 9,000만원을 집행(집행율 81.5%)하고, 92억 1,5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4년도 동원훈련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동원훈련	50,191	11	△297	49,905	40,690	-	9,215	51,396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동원훈련 사업(2632-303)은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전시 부대 증·창설 절차의 숙달, 동원 병력의 임무 수행 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예비군 동원훈련을 실시하고, 예비군 훈련보상비 지급 등 훈련을 수행한 예비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사업임.[94]

○ 예비군훈련은 크게 병력동원훈련과 일반훈련으로 구분되는데 병력동원훈련은 「병역법」 제50조[95]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이고, 일반훈련은 「예비군법」 제6조[96]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임.

[병력동원훈련 및 일반훈련 비교 현황]

항목	병력동원훈련	일반훈련	
		동미참훈련	기본훈련·작계훈련
훈련대상	1~4년차 예비역 ('병' 기준)	1~4년차 예비역	5~6년차 예비역
훈련형태	2박 3일	· 4일 : 1~4년차 병, 미참석자 등 · 2박 3일 : 간부, 공군 병	· 기본훈련 : 8시간 · 작계훈련 : 12시간

자료: 국방부

94) 「병역법」 제52조(병력동원훈련소집된 사람의 복무) ①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은 현역에 준하여 복무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95) 「병역법」 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한다. 다만,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른 비상근 예비군에 대하여는 입영부대의 장이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한다.

96) 「예비군법」 제6조(훈련) 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훈련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

○ 동원훈련 사업의 내역사업인 동원훈련 보상비 사업은 병력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훈련 수행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회계연도에 336억 9,400만원을 예산 편성하고 269억 3,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79.9%(예산액 기준)임.

[2024년도 동원훈련 보상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보상비	33,694	-	331	34,025	26,930	-	7,095	32,834

자료: 국방부

○ 동원훈련 보상비 사업 예산 불용의 주요 원인은 예산안 편성 시 추계에 사용한 훈련 계획 인원에 대한 예측값과 실 훈련 참가 인원 간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됨.

○ 국방부는 2024회계연도 동원훈련 보상비 사업 예산안 추계 시 동원훈련 참가 인원을 41만 908명으로 예상하였음.

[동원훈련 보상비 사업 2024회계연도 예산안 추계 내역]

<동원훈련 보상비 산출식>
- 410,908명(2024년 훈련계획인원)× 82,000원(보상비 단가) = 336억 9,400만원

자료: 국방부

○ 국방부는 훈련 계획 인원 추계 시 코로나19 영향으로 동원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2020년~2022년[97]을 제외한 가장 최근 동원훈련 통계자료인 2017년~2019년도 3개년 동원훈련 평균 참가 인원(40만 8,983명)을 기초로 2024년도 훈련 참가 인원을 추산하였다고 설명함.

○ 그러나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2019년~2022년 사이 다수의 동원소집 부대가 해체·개편되면서 부대 증·창설에 필요한 예비군 병력동원 소요가 감소한 점, 전반적인 군 병력 감소로 인한 예비군 규모 하락 추이 등 예비군 훈련 계획 인원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소를 충분히 감안하지 못한 관계로 과도하게 훈련 인원을 산출한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관련하여 「2024년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르면 동원훈련·일반훈련 인원수는 최근 훈련실적과 함께 예비군 인원 감소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최근 5년간 동원훈련 보상비 사업의 예·결산 실적을 살펴보면 훈련 계획 인원 대비 훈련 참가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도 훈련 계획 인원 추계

97) 2020년~2021년 및 2022년 상반기 : 동원훈련 미실시, 2022년 하반기 : 2박3일 훈련을 1일 훈련으로 축소하여 실시

시 감안했어야 할 요소로 판단됨.

[최근 5년간 동원훈련 보상비 사업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분	예산액	결산액	불용액	훈련계획 인원(A)	훈련참가 인원(B)	훈련참가율 (B/A)	차이 (A-B)
2024년	33,694	26,930	7,095	410,908	327,643	79.7	83,265
2023년	33,537	28,865	3,838	408,984	351,563	85.7	57,421
2019년	13,160	12,683	477	411,249	396,336	96.4	14,913
2018년	6,390	6,430	-	399,388	401,882	100.6	+2,494
2017년	3,975	4,287	369	397,543	428,732	107.8	+31,189

※ 2020년~2021년 및 2022년 상반기 동원훈련 코로나19 유행으로 미실시
자료: 국방부

○ 따라서 국방부는 동원훈련 보상비 사업 예산 추계 시 최근 훈련 인원 실적 자료뿐만 아니라 군 조직 변동 사항, 병력 규모 감소 추이 등 예비군 훈련 인원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비군 훈련 계획 인원을 산정하여 예산 불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임.

(28) 연합지휘통신체계사용(5132-302): 연례적인 이전용을 통한 집행방식 개선 및 예산 재원마련시 프로그램 내의 융통 우선 고려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연합지휘통신체계사용 사업은 한·미 연합작전을 위해 주한미군사에서 관리하고 한·미 공동으로 사용 중인 연합 C4I체계 운영유지 비용에 대한 한국측의 분담금을 지불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238억 100만원에 이·전용 등(증) 73억 1,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11억 1,500만원 중 310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2,7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4년도 연합지휘통신체계사용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연합지휘통신체계사용	23,801	-	7,314	31,115	31,088	-	27	26,262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연합지휘통신체계사용 사업은 미국측이 제공한 연합 C4I 체계 사용에 따른 예측 비용과 과거 3개년의 항목별 평균지불금액을 기준으로 항목별로 우리측 예측분담률을 산정하여 한국측의 분담금 예측금액을 산출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임차료(210-07) 비목으로 집행하고 있음.

C4I: 군사 지휘 및 통제 시스템의 핵심 개념 중 하나로, 지휘관이 실시간으로 부대의 상황을 파악하고, 명령을 전달하며, 정보를 수집·분석해서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통합 시스템 ※ Command(지휘) Control(통제) Communications(통신) Computers(컴퓨터) Intelligence (정보)

○ 동 사업은 미측과 한측의 예산 순기가 상이함에 따라 사전에 확정된 금액을 편성하는 것이 어려워, 거의 매년 이전용 등의 예산 재원 마련을 통해 사업비에 충당하고 있음.

즉, 한국측은 X년도 예산을 X-1년 상반기에 편성하나, 미국측은 X-1년 하반기(약 11월 경)에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한국측과 미국측의 예산 순기가 달라 매년 이전용 등의 예산 융통을 하고 있음.

○ 동 사업에 대해 매년 발생하는 이전용 등의 예산융통 규모를 보면, 2024년도의 경우 편성된 예산액의 30.4% 규모를 증액하여 동

사업이 추진되었고, 2023년을 제외하고 매년 편성된 예산규모의 약 30% 규모를 증액하여 동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연도별(21-24) 예산액 대비 이전용 등(증)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액 대비 이전용 등(증) 비율	비고
2021	21,028	7,121	33.9	전용
2022	18,744	4,593	24.5	전용
2023	23,801	-		
2024	23,801	7,314	30.7	이용

자료: 국방부

○ 한·미 간 예산 순기의 차이 및 연합네트워크 사용료의 사후 정산이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예산의 증액이 발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매년 반복되는 상당 규모의 예산융통을 통한 증액은 예산의 연례적 과소편성 문제 및 상당규모의 이전용 등에 따른 타 사업의 집행규모 축소 문제 등을 유발하므로 안정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 한편, 2024년도에서는 동 사업의 부족 예산을 위해 2300프로그램 예산(기동장비(유지)(2333-305), 항공장비(유지)(2333-307))에서 총 73억 1,400만원을 전액 이용(예산이 정한 각 기관·장(분야)·관(부문)·항(프로그램) 등 입법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충당하였음.

○ 동 사업은 5100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 프로그램의 목표는 국방정책 전반의 체계적인 연구분석으로 합리적인 국방정책 수립 및 정책 대안 개발이라는 점에서 장비·물자·탄약 등의 획득·운영 및 유지로 전투준비태세 확립 및 전투지원 능력을 확보하고, 군 재난의 예방·대응·복구를 위한 장비·물자 확보로 재난대비태세 확립 및 적극적인 대민업무 지원을 목표로 하는 2300 프로그램과 성격이 상이하다 할 것임.

[5100·2300 프로그램 목표 비교]

구분	5100 프로그램	2300 프로그램
목표	국방정책 전반의 체계적인 연구분석으로 합리적인 국방정책 수립 및 정책 대안 개발	장비·물자·탄약 등의 획득·운영 및 유지로 전투준비태세 확립 및 전투지원 능력을 확보하고, 군 재난의 예방·대응·복구를 위한 장비·물자 확보로 재난대비태세 확립 및 적극적인 대민업무 지원

○ 비록 예산총칙에 임차료에 대해서는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국가재정법」 제47조제1항의 취지는 이용은 예외적인 경우에 보충적 성격으로만 해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동 사업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부 규모라도 동일 프로그램 내에서 전용 등을 최대한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프로그램별 목표설정-성과달성-책임성 제고'라는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임.

예산총칙 제10조 ① 다음 경비 또는 비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의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식비, **임차료**
3. ~ 11. (생 략)

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따라서 국방부는 연례적 이전용 등을 통한 예산증액이 발생하는 현 예산편성방식을 주한미군사와 협의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고, 예산증액이 필요한 경우 최대한 동일 프로그램 내에서 재원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29) PKO 파병(5134-303): UN 경비보전율 증가를 위한 노력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PKO 파병(5134-303) 사업은 레바논에서의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 이후 UN의 요청에 따라 파병이 시작된 레바논 동명부대와 내전으로 폐허가 된 남수단의 재건을 위한 UN의 요청에 따라 2013년부터 남수단에 파병이 시작된 한빛부대의 피복·물자·수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액 292억 2,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9억 1,700만원과 이·전용(증) 10억 5,8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22억 100만원 중 303억 3,500만원을 집행하고, 9억 1,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억 5,6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4년도 PKO 파병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PKO 파병	29,226	1,917	1,058	32,201	30,335	910	956	32,719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PKO 파병은 매년 3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편성되어 레바논 파병, 남수단 파병 및 개인파병 등에 따른 피복비, 물자 구매비, 수송비 등에 집행되고 있음.

○ PKO 파병은 청해부대(아덴만 해역) 및 아크부대(UAE 아부다비주) 파병과 달리 UN의 요청에 따라 파병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매년 UN으로부터 일정 규모의 예산을 보전받아 세입조치 하고 있는데, UN 보전 대상은 인건비·주요장비·운영유지비·수송비 등임.

○ 동명부대 및 한빛부대의 연도별 UN경비보전 현황을 보면, 동명부대의 경우 2022년 지출액의 57.0%까지 오른 적이 있었으나,
그 이후로 계속 감소하여 2024년도에는 지출액의 35.7%까지 낮아진 상황임. 한빛부대의 경우 2021~2023년도에는 지출액의 48~49%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24년도에는 경비보전율이 40.3%까지 낮아진 상황임.

[동명부대 연도별 UN 경비보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지출액 (A)	17,535	19,467	16,419	21,062	20,569
보전액 (B)	6,032	9,110	9,355	8,122	7,342
보전율 (B/A, %)	**34.4**	**46.8**	**57.0**	**38.6**	**35.7**

자료: 국방부

[한빛부대 연도별 UN 경비보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지출액 (A)	26,405	24,176	25,734	23,799	25,909
보전액 (B)	6,385	11,941	12,357	11,690	10,432
보전율 (B/A,%)	**24.2**	**49.4**	**48.0**	**49.1**	**40.3**

자료: 국방부

○ 우리나라가 UN 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국제연합(UN) 회원국으로서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에 기여하는 것이 국제적 책무인 점,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 및 인도적 가치와 국제 연대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일반적인 예산의 투입·집행과 그에 따른 성과 달성시에 경제성, 예산의 효율성 및 사업의 효과성에 중점을 두는 다른 사업들의 목적과는 엄연히 다른 사업임에는 분명하다 할 것임.

○ 다만, UN 보전율을 높여 PKO 활동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은 기여국 간의 형평성 측면, 고급 장비·인력 투입에 따른 정당한 보상 측면 및 향후 파병 확대 및 다변화를 위한 기반 마련 측면 등에서 정당하고 필요한 조치로 보여짐.

○ 따라서 국방부는 PKO 활동에 따른 UN 보전율을 높여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UN측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30) 무관부 활동(5135-301): 무관부 신설시 예산편성과 연계 필요 등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무관부 활동(5135-301) 사업은 해외군사정보 수집, 군사외교 및 협력활동 임무수행을 위해 재외공관 주재무관을 대상으로 무관부의 운영 지원 및 무관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2024년도 예산액은 본예산 170억 6,800만원에 이·전용(증) 2억 3,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73억 300만원 중 171억 5,9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4,400만원이 불용됨.

[2024년도 무관부 활동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무관부 활동	17,068	-	235	17,303	17,159	-	144	18,310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① 무관부 신설시 예산편성과 연계 필요

○ 무관부활동 사업은 해외군사정보 수집 및 군사외교활동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 54개국(55개 무관부[98])에 77명의 무관 및 121명의 행정직원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제10조[99] 및 별표에 따라 77명의 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음.

[국가별 주재무관 파견 현황('24. 8. 1.)]

순번	소재지(국가, 도시)	설치연도	인원(계급)	순번	소재지(국가, 도시)	설치연도	인원(계급)
1	미 국	1951	8(소장 1, 대령 5, 중령 2)	28	인 도	1990	중령 1
2	필리핀	1957	중령 1	29	파키스탄	1990	대령 1
3	독 일	1957	2(대령 1, 중령 1)	30	러시아	1991	4(대령 3, 소령 1)
4	영 국	1957	2(대령1, 중령1)	31	폴란드	1991	대령 1, 중령 1
5	튀르키예	1957	중령 1	32	하와이	1991	대령 1
6	대 만	1958	중령 1	33	중 국	1993	5(준장 1, 중령 4)
7	프랑스	1959	중령 1	34	이스라엘	1995	대령 1
8	태 국	1960	대령 1	35	베트남	1996	대령 1
9	이태리	1961	대령 1	36	이집트	1996	중령 1
				37	남아공	2000	중령 1
10	일 본	1966	4(준장 1, 대령 1, 중령 2)	38	싱가폴	2002	중령 1
11	말레이시아	1967	대령 1	39	카자흐스탄	2003	중령 1
12	브라질	1969	대령 1	40	UAE	2005	3(대령1, 중령2)

98) 미국 무관부는 본토 외에 하와이 별도 파견

99)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제10조(정원)** ① 주재무관의 정원은 별표와 같이 하고, 국방부장관은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이를 운영하되, 정원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원 범위에서 주재무관의 재외공관별 정원을 배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순번	소재지 (국가, 도시)	설치 연도	인원(계급)	순번	소재지 (국가, 도시)	설치 연도	인원 (계급)
13	스위스	1970	중령 1	41	오 만	2006	중령 1
14	스웨덴	1970	대령 1	42	우크라이나	2007	중령 1
15	호 주	1970	대령 1	43	알제리	2008	대령 1
16	에티오피아	1972	중령 1				
17	멕시코	1973	대령 1	44	이라크	2015	중령 1
18	스페인	1973	대령 1	45	아제르바이잔	2015	중령 1
19	인 니	1974	대령 1	46	레 바 논	2015	대령 1
20	벨기에	1974	대령 1	47	투르크	2015	중령 1
21	사우디	1975	대령 1	48	몽 골	2015	대령 1
22	콜롬비아	1975	중령 1	49	우간다	2015	중령 1
23	페 루	1975	중령 1	50	헝가리	2016	대령 1
24	캐나다	1978	대령 1	51	캄보디아	2016	대령 1
25	칠 레	1980	중령 1	52	우즈베키스탄	2016	대령 1
26	미얀마	1983	대령 1	53	라오스	2018	중령 1
				54	요르단	2018	중령 1
27	나이지리아	1983	대령 1	55	**루마니아**	**2024**	**중령 1**

자료: 국방부

○ 국방부는 러·우 전쟁간 루마니아 방산 수출업무 소요 증가에 따라 2024년 8월 1일자로 정원 범위 내에서 인원 조정을 통해 루마니아 무관부를 신설[100]한 바 있음. 「재외공관 무관 주재령」 제10조에 따르면 무관부 신설은 정원 범위에서 주재무관의 재외공관별 정원을 배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때에는 외교부 장관과의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 외교부와 협의절차만 거치게 되면 무관부를 새롭게 신설하는 것이 가능함.

100) 국방부는 2024년 8월 1일부로 기존의 인도, 인도네시아, 튀르키예의 무관을 각각 1인씩 감축하여, 이를 폴란드, UAE, 루마니아 무관 증원 및 개설에 충당

○ 다만, 2024년도 예산안 편성시에는 루마니아 무관부 신설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여 국방부는 예산 조정을 통해 추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바, 국회의 예산심의시에는 루마니아 무관부를 예정하지 않은 예산규모를 심의·확정하였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예산집행방식은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목적 외 집행 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루마니아 무관부 신설에 따른 추가 예산집행액]

(단위: $)

구 분	항 목	집행액	구 분	항 목	집행액
상용임금	110-03	12,737	기타운영비	210-16	532
수용비	210-01	17,142	사업추진비	240-01	6,853
공공요금	210-02	1,986	관서업무비	240-02	196
특근매식비	210-05	18	자산취득비	430-01	72,092
임차료	210-07	20,616	차량유지비	210-09	1,296
유류비	210-08	905	계: 134,373(약 1억 8,700만원)		

자료: 국방부

○ 무관부 신설이 「재외공관 무관 주재령」에 따라 국방부의 권한 범위 내에 있어 기존의 편성예산 범위 내에서는 신설의 자율성(외교부 협의과정 필요)이 있다고 보여지나, 상당 규모의 예산증액을 수반하여 신설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확정 권한이 침해될 소지가 있어 보임.

○ 따라서 국방부는 예산이 상당규모로 수반되는 무관부 신설시에는 사전에 예산편성과 연계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② 무관부활동 평가 포상금 법령근거 마련 필요

○ 국방부는 「재외공관 주재무관부 운영규정」(국방부훈령)제39조에 따라 재외공관 주재 무관부를 대상으로 전·후반기 연 2회 무관평가를 실시하여 종합, 첩보, 방산, 군사외교 분야의 우수자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2024년도 무관부활동 평가 포상금 집행 현황[101]]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무관부활동 평가 포상금	23.188	23.175

자료: 국방부

○ 매년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기획재정부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배포하여 각 부처에서 예산집행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집행지침에서는 포상금의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는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금액 등은 하위 규정(행정규칙)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101) 세부 집행내역

○ 시 기: 연 2회 ○ 규 모: 종합 우수 2명 및 분야별 우수 6명 ＊ 첩보수집, 방산수출입지원, 국방외교분야 ○ 집 행: 등급별 차등지급 ＊ 최우수 1,800$, 우수 1,200$, 분야별 최우수 1,000$, 우수 500$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95

<공통지침>
보상금 및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는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금액 등은 하위 규정(행정규칙)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 그런데 국방부는 무관평가에 따른 포상금을 법령이 아닌 훈령에 근거하여 집행하고 있어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하고 있음. 무관평가에 따른 포상금은 2014년 이후에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102].

「재외공관 주재무관부 운영규정」 제 39조 무관활동 평가

2. 무관활동 평가는 반기 1회 실시한다.
3.~9. (생 략)
10. 평가결과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나. 포상
1) 종합 우수무관은 종합 최우수와 우수무관 2명을 선발, 국방장관 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한다.
2) 첩보수집, 방산수출 지원, 국방교류 협력 분야는 우수무관을 2명씩 선발하여 본부장 **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한다.

○ 포상금은 현금성 경비로서 사업홍보, 참여율 제고 등의 사업효과가 상당함에도 예산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 집행지침에서 법령에 지급 근거 및 한도를 명확하게 마련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됨.

102) 2014년도 예산 집행지침에서도 포상금의 법령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었음.

○ 또한 국방부 수행사업 중 부대운영지원 사업, 예비전력운영지원 사업, 병양성교육 사업, 간부양성교육 사업, 군사대학교육 사업에 따른 포상금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집행이 되고 있는데, 사업에 따른 다른 기준(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적용하는 것도 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보여짐.

[2024년도 법령 근거 포상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집행액	지급 근거
부대운영지원	558	적극행정 운영규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예비전력운영지원	108	예비군법
병양성교육	2	병역법
간부양성교육	31	사관학교설치법
군사대학교육	30	국방대학교설치법

자료: 국방부

○ 따라서 국방부는 무관활동 평가를 실시하여 지급하려는 포상금이 법령의 근거가 없이 집행될 경우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속히 법령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③ 재외공관 무관 계급별 정원 규정 준수 필요

○ 재외공관 무관의 정원은 「재외공관 무관 주재령」 제10조 및 별표에 따라 정해지고, 현재 정원은 육군 41명, 해군 18명, 공군 18명 등 총 77명으로 정해져 있음.

○ 또한 각 군별로 장성급과 영관급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바, 육군은 장성 2명, 영관 39명, 해군은 장성 1명, 영관 17명, 공군은 장성 1명, 영관 17명으로 정해져 있어 장성급은 총 4명, 영관급은 총 73명으로 구분되어 있음.

[주재무관 정원표(재외공관 무관주재령 별표)]

구분	총계	육군		해군		공군	
		장성	영관	장성	영관	장성	영관
인원(명)	77	2	39	1	17	1	17

자료: 국방부

○ 주재무관은 국방외교 및 국방교류협력에 관한 활동 및 이와 관련된 지원, 국가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의 수집·보고, 방위산업물자의 수출입에 관한 지원 및 주재국 및 주재국에 근무하는 다른 나라의 주재무관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홍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국방외교의 한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예산 사정, 재외공관 및 해당국의 상황 등이 종합적

으로 고려되어 정해진 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정원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재외공관별 배정·변경시 기획재정부, 외교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각 군별 정원과 계급별 정원을 따로 정하고 있어 각 군별 및 계급별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으나, 현재 실제 운영되는 계급별 정원은 규정상의 정원과 불일치하고 있는 문제가 나타남.

○ 규정상 계급별 정원을 보면 장성 4명, 영관 73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운영되는 계급별 정원은 장성 3명, 영관 74명으로 되어 있음. 구체적으로 규정상의 공군 장성 주재무관 1자리를 영관급으로 운영하고 있음.

[주재무관 군별·계급별 현황]

구분	총계	육군		해군		공군	
		장성	영관	장성	영관	장성	영관
인원(명)	77	2	39	1	17	-	18

자료: 국방부

○ 국방부는 필요한 경우, 계급별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인 재외공관 무관 주재령에 따른 계급별 정원을 법령상 근거없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법·제도적 위반이 되어 내부적 사기저하, 인력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

고 외부적으로도 조직의 신뢰도 저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짐.

○ 인력운용 상 계급별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규정에 담으려는 절차가 사전에 있었어야 한다고 보임.

○ 따라서 국방부는 재외공관 무관의 운영에 있어 계급별 정원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법령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1) 정책기획지원(5136-302): 정책연구비 성격 일반연구비로 편성·집행 지양 필요 등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정책기획지원(5136-302) 사업은 원활한 국방정책활동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귀환포로국군지원 사업, 전작권 전환 지원 사업, 북핵 및 WMD 대응 지원 사업, 국방정책지원 연구 생태계 조성 사업, 국방외교 및 국제협력 사업, 한미동맹 유대강화 사업 등으로 구성됨.

○ 2024년도 예산액 236억 7,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3억 9,700만원과 이·전용 등(감) 12억 2,1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28억 5,000만원 중 195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8,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9억 9,2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4년도 정책기획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정책기획지원	23,674	397	△1,221	22,850	19,574	284	2,992	9,084
북핵 및 WMD 대응 지원	1,071	93	146	1,309	1,234	15	60	4,058
정책지원 연구 생태계 조성	800	259	-	1,059	510	242	66	800
한미동맹 유대강화	1,663	45	△6	1,703	1,650	-	7	1,638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① 정책연구비 성격의 연구과제 일반연구비로 편성·집행 지양 필요

○ 내역사업 중 북핵 및 WMD 대응 지원 사업은 북핵 및 WMD 대응지원 전담조직 강화, 탄도미사일 위협억제·대응 능력 확보 등 핵·WMD 대응능력 강화를 추진하는 사업임.

○ 동 내역사업의 일반연구비(260-01) 2024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편성된 예산은 2억 700만원 중 1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연구과제를 보면 총 4건 중 3건이 정책연구비(260-02) 성격의 연구로 보임.

[2024년도 북핵 및 WMD 대응 지원 사업
일반연구비(260-01)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세부내역
일반연구비(260-01)	207	190	북한의 핵WMD 고도화와 대북제재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연구(119)
			한반도 위기관리 연구(37)
			군사우주력 발전 연구용역(20)
			전략사 영구 주둔지 후보지 선정 연구용역(15.4)

자료: 국방부

○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WMD 고도화와 대북제재 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연구, 한반도 위기관리 연구, 군사우주력 발전 연구용역 등은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연구용역으로 일반연구비(260-01)

성격이 아닌 정책연구비(260-02)로 집행했어야 할 성격으로 보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일반연구비(260-01) : 국가로부터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 비용

정책연구비(260-02) : 각 부처에서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학술연구 포함) 관련 비용(사업명 : '정책연구'로 통일)

○ 정책연구비(260-02)는 「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에 따라 국방정책연구심의위원회 심의, 연구과제 관리 감독,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 등록 등 엄격하게 관리되는데 반해, 일반연구비(260-01)는 그렇지 않아 상대적으로 과제선정, 관리 등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내용상 정책연구비 성격이나, 비목 편성을 일반연구비로 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한 관리를 적용받지 않기 위해 우회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음.

○ 따라서 국방부는 정책연구 성격에 대한 과제 선정 등 사전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적정한 비목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일반연구비(260-01)로 우회 편성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② 한미동맹 발전 세미나 회의장소 임차 관련 예산지출 최소화 필요

○ 내역사업인 한미동맹 유대강화 사업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의 한국 역사·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한미 연합성 강화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지원하는 사업임.

○ 2024년도에 내역사업인 한미동맹 유대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미동맹 발전 세미나가 개최되었는데, 세미나 주제는 '미래를 준비하는 연합사의 한미동맹 유대강화와 정책발전'으로, 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사 등의 주요 직위자 및 역대 연합사 사령관·부사령관, 안보·국방 전문가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하였음.

[한미동맹 발전 세미나 개최 현황]

구분	주제	장소	발표자	집행액	행사업체	참석자
2023	국방부 한미동맹 70주년 행사예산으로 전용					
2024	미래를 준비하는 연합사의 한미동맹 유대강화와 정책발전	**신라호텔 영빈관**	강석율 (한국국방연구원), Mason Richey (한국외대)	91,000,000원 **※ 임차료 38,322,909원 (만찬, 다과 포함)**	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단독입찰로 2회 유찰 후 수의계약)	국회, 정부기관(국방부,외교부,통일부,국정원), 합참, 전략사령부, 각군본부, 연합사, 주한미군사 장성급주요 직위자와 한·미 장병, 역대 연합사령관, 역대 연합사 부사령관, 안보·국방 전문가 등 약 150여명

자료: 국방부

○ 동 사업은 점차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군사전력과 정책, 동북아 안보지형의 변화에도 대북 억제를 위한 주한 미군의 역할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된 의미있는

자리로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동 세미나는 외부용역업체를 통해 일반용역비(210-14)로 집행되어 9,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세미나 장소가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진행되었는데, 세미나 장소 선정이유에 대해서 국방부는 국내·외 전문가들과 주요 언론기관들의 접근 용이성, 참석 대상자(군 주요직위자)의 긴급복귀 등 대비태세 유지를 고려하여 서울에 소재한 호텔로 선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국회는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정부에 대하여 예산집행시 주의해야 할 점을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촉구한 바 있는데, 그 중 회의장 사용과 관련하여서 정부로 하여금 부처와 산하기관이 자체 회의장을 우선 사용허가나 공공기관 회의장을 임차하도록 하여 예산 지출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한 바 있음.

<2024년도 예산 국회 부대의견>

(4) 정부는 부처와 산하기관이 자체 회의장을 우선 사용하거나 공공기관 회의장을 임차하도록 하여 예산 지출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한다.

○ 한미동맹의 중요성, 현 안보상황 및 한미동맹발전 세미나의 참석자 등을 고려하고 또한 2024년도에 동 세미나가 최초로 개최되어 한미동맹의 가치 및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장소의 상징성 또한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예산 지출의 최소화 및 예산낭비 방지 등 국회 부대의견의 취지

또한 고려될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짐.

○ 따라서 국방부는 향후 한미동맹 발전 세미나의 장소 섭외시 세미나 개최의 성과 및 예산 지출의 최소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32) 한국국방연구원운영(R&D)(5137-301): 연구원 수시채용 활성화로 공석 최소화 필요 등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한국국방연구원(R&D) 사업은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 수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국방연구원(KIDA[103])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건비, 경상경비 등을 출연하는 사업으로,

국방부는 2024년도 예산액 544억 2,700만원 중 539억 7,600만원을 한국국방연구원에 출연하고, 4억 5,100만원은 불용(정원 대비 결원 인건비)하였음.

그리고 한국국방연구원은 동 교부액에서 524억 9,600만원을 집행하고, 14억 8,0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4년도 한국국방연구원운영(R&D)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예산액	출연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교부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한국국방연구원 운영(R&D)	54,427	53,976	-	451	53,976	52,496	-	1,480

자료: 국방부

103) KIDA: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is

(나) 검토의견

① 연구원 수시채용 활성화로 결원 및 공석기간 최소화 필요

○ 2024년도 한국국방연구원운영(R&D) 사업은 인건비, 기관운영비, 사업비 및 시설비로 구분되며, 인건비 예산은 358억 2,300만원인데 이 중 353억 7,200만원을 실집행하고 4억 5,100만원은 불용(미교부)하였음.

[2024년도 인건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예산액	출연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교부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인건비	35,823	35,823	-	451	35,372	35,372	-	-

자료: 국방부

○ 2024년도 동 사업의 인건비 불용액 규모는 4억 5,100만원인데, 이는 출연기관 정원대비 결원이 발생한 인건비를 교부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연구개발 출연금(360목)에 대해 인력 미충원 등으로 발생한 인건비 잔액은 마지막 분기 또는 월에 예상되는 집행잔액 만큼 배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일반 출연금(350목)·연구개발 출연금(360목) 집행지침)
인력 미충원 등으로 발생한 인건비 잔액은 기존 직원의 인건비 인상액,연구개발 적립금, 성과급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주무부처는 마지막 분기 또는 월에 예상되는 집행잔액 만큼 배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한국국방연구원의 인건비 미교부금은 2022년도 3억 6,100만원, 2023년도 4억 2,100만원, 2024년도 4억 5,100만원 등 매년 일정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연구직 및 관리직의 정원과 현원의 차이발생으로 공석기간이 평균 8~10개월[104] 발생하는 것에서 기인하고 있음.

○ 이렇게 연구원 공석의 장기화가 진행된 것은 한국국방연구원이 채용의 방식을 정기채용에 의존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채용실적을 보면, 2022년도에는 정기 2회, 수시 1회, 2023년도에는 정기 2회, 수시 2회, 2024년도에는 정기 2회, 수시 1회 등으로 주로 정기채용을 통해 결원을 충원하고 있어 공석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임.

104) 연도별(22-24) 평균 공석 기간

(단위: 월)

구분	2022	2023	2024
평균 공석 기간	8.3	8.8	10.1

[연도별 한국국방연구원 직원 채용 현황]

(단위: 명)

구분	채용시기	채용횟수	공고일	채용자 수
2022	정기	2	1차: '22.1.4. 2차: '22.7.19.	17
	수시	1	'22.4.11.	7
2023	정기	2	1차: '22.10.12. 2차: '23.5.2.	24
	수시	2	1차: '22.12.29. 2차: '23.9.27.	7
2024	정기	2	1차: '23.11.14. 2차: '24.9.2.	29
	수시	1	'24.6.5.	0

자료: 국방부

○ 한국국방연구원은 군사전략, 군사력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상시적인 결원 발생 및 공석의 장기화는 이러한 국방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정책 방향의 추진력 약화, 연구의 연속성·품질 저하, 대외 신뢰도 및 예산·행정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따라서 한국국방연구원은 정기채용 외에 수시채용 활성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연구원 결원 및 공석기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② 사업비 불용발생 최소화 및 학술사업 지속적·안정적 추진 필요

○ 한국국방연구원 운영(R&D) 사업 중 사업비는 예산이 140억 7,200만원으로, 전액 교부되어 128억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억 2,8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4년도 사업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예산액	출연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교부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사업비	14,072	14,072	-	-	14,072	12,808	381	1,028

자료: 국방부

○ 2024년도에 동 사업비는 10억 2,800만원의 불용규모를 나타내었는데, 최근 연도별 사업비(연구과제비, 학술사업비, 연구지원비) 집행현황을 보면, 매년 10억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음.

[연도별('22～'24) 사업비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 포함)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2	15,856	14,568	-	1,288
2023	16,870	14,974	863	1,033
2024	16,578	15,169	381	1,028

자료: 국방부

○ 연구수행에 따른 집행잔액은 일정 부분 발생할 수 있으나, 매년 유사한 규모의 불용액 발생은 예산 편성이 과다계상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불용액은 반납하지 않고 다음연도에 세입조치됨에 따라 세입규모를 확장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한국국방연구원은 연구수행 및 예산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정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은 원칙적으로 '혁신법' 제13조에 따라 처리한다. 非연구개발사업은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처리하되,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시 주무부처가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별도의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는 등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다만, 출연기관의 기관운영 출연금(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의 경우에는 기관 세입에 계상하되, 필요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 인건비의 경우 인건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

○ 한편, 사업비 중 학술사업비는 국내·외 학술회의를 개최·참석하는 데 사용하는 예산으로, 2024년도 학술사업비에서 2억 6,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기관장 참석 국내·외 학술회의가 2023년도에는 11건이었으나, 2024년도에는 1건으로 줄었기 때문으로 보임.

[2023·2024년도 기관장 참석 국내·외 학술회의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집행액	행사명
2023 (11건)	10.5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 특별세미나
	6.1	2023 한국국방연구원 미디어데이
	5.7	제3회 홍릉군사전략포럼
	13.5	제62회 KIDA 국방포럼
	5.7	4개 국책연구기관 공동 학술회의
	5.7	제62차 국방아젠다포럼
	19	북한군사포럼
	12.1	2023 국방 군수발전세미나
	12.6	한영 국방 사이버 세미나
	4.3	KIDA-ESIWA 공동 학술회의
	174.3	제2회 홍릉국방포럼
2024 (1건)	12.4	제63회 KIDA 국방포럼

자료: 국방부

○ 한국국방연구원은 학술사업비의 집행부진과 학술회의 개최 건수가 적은 것에 대해서 기관장의 공석 등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기관장의 공석기간이 5~6개월(2024.2.~2024.7.)에 불과했던 점,

기관장의 직무를 대리할 부원장(2023.10.~현재)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학술회의에 대한 사업추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보여짐.

○ 국내·외 학술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행사가 개최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방 정책 논의의 장 상실, 정책 수요자의 신뢰 저하, 연구 성과 확산의 지연, 학문적 교류 및 협력의 위축, 대외 위상 및 국제 협력 저하 및 내부 연구 동기 저하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

○ 따라서 한국국방연구원은 학술사업 추진시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와 상관없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33) 국방행사지원 (7131-313): 국군의날 행사 용역계약 반복적 긴급공고 제도개선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국방행사지원 사업은 국위선양을 위한 국방 관련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2024년도 예산액 232억 2,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900만원, 이·전용 등(감) 21억 3,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11억 1,900만원 중 209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1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4년도 국방행사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국방행사지원	23,224	29	△2,133	21,119	20,907	11	201	21,797
국군의날행사	7,985	-	△313	7,672	7,617	-	55	1,200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국군의날 행사는 매년 10월 1일 국군 창설을 기념하여 시행되는 국가 차원의 군 행사로, 장병 사기 진작 및 국민 안보의식 고취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국군의날 행사는 5년 주기로 대규모 행사를 실시하며, 그 이외 연도에는 비교적 소규모로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으나, 2023년(제75주년) 행사 이후 2024년(제76주년)에는 최근 안보상황에 따른 국민 안보 불안 해소와 국군의 사기 고양 등을 위하여 전년도와 유사한 대규모의 행사를 진행하였음.

○ 2024년도 국군의날 행사 용역은 주식회사 ○○과 총 37억 554만원의 규모로 수의계약을 체결되어 진행되었으며, 행사는 다수의 장병과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음.

○ 다만, 국방부는 국군의날 행사가 매년 10월 1일에 정례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사계약을 매년 긴급공고 방식으로 추진[105]하고 있어 계약 절차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105)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원칙적인 입찰공고 기간은 아래와 같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③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국군의날행사기획단은 국방부 본부 내에 매년 ‘00주년국군의날행사기획단’ 형태로 한시조직으로 편성·운영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행사 전년도 12월에 구성되어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를 진행하고 10월 말에 해산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어 사실상 연중 10개월 이상 운영되는 준상설조직의 성격을 띄고 있어 행사를 연초부터 준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 보임.

[2024년 제76주년국군의날행사기획단 인원변동 현황]

구분	인원수	지휘관 계급
2023.12.	7	대령
2024.01.	19	대령
2024.02.	23	대령
2024.03.	27	대령
2024.04.	52	준장
2024.05.	59	중장
2024.06.	62	중장
2024.07.	65	중장
2024.08.	64	중장
2024.09.	64	중장
2024.10.	54	중장

주: 인원은 각 달 말일 기준임. 국군의날행사기획단은 매년 유사한 수준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됨
자료: 국방부 제출 자료를 재구성

○ 국군의날행사기획단은 국군의날 행사 용역계약에 있어 2024년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긴급공고를 내어 왔으며, 긴급공고 사유는 다음과 같음.

[국군의날 행사 용역계약 긴급공고 사유]

연도	사전공고 및 입찰공고일	긴급공고 사유
2018 (70주년)	사전공고일 : 7.26.~7.28. 입찰공고일 : 7.31.~8.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의 긴급한 행사[106]에 해당함. 구체적으로는, 용역계약 절차에만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되고, 계약 후 과업 수행 준비기간이 최소 2주 이상 필요하며, 행사일 1주일 이전에 시험운영이 계획되어야 하는 등의 긴급공고 사유가 존재함.
2019 (71주년)	사전공고일 : 8.16.~8.18. 입찰공고일 : 8.21.~8.30.	
2020 (72주년)	사전공고일 : 8.14.~8.17. 입찰공고일 : 8.18.~8.27.	
2021 (73주년)	사전공고일 : 7.20.~7.26. 입찰공고일 : 7.30.~8.10.	
2022 (74주년)	사전공고일 : 7.14.~7.19. 입찰공고일 : 7.28.~8.8.	
2023 (75주년)	사전공고일 : 6.5.~6.8. 입찰공고일 : 6.16.~6.27.	
2024 (76주년)	사전공고일 : 5.23.~5.28. 입찰공고일 : 6.5.~6.28.	

자료: 국방부 제출 자료를 재구성

○ 2024년의 경우에는 5월 23일 긴급공고를 통해 주식회사 ○○가 단독 응찰하였고, 7월 8일 적격 판정 이후 8월 1일 수의계약 체결, 이후 수정계약까지 포함하여 총 37억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었음.

○ 국방부는 공고 시점부터 행사일까지 준비기간이 촉박하고 계약 절차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대통령실 및 군 수뇌부 대상 사전 리허설 등의 일정까지 고려할 경우 수의계약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며, 해당 계약 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10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긴급한 행사)[107]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는 입장임.

그러나 국군의날 행사는 매년 동일한 날짜에 시행되는 정례 행사이고, 사실상 상시 운영되는 기획단이 존재함에도 해마다 반복적으로 긴급공고를 통한 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임.

○ 따라서 국방부는 국군의날 행사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공고 시기를 조정하여 반복적인 긴급공고를 통한 계약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구조적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10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34) 전력발전지원(7131-314): 예산의 목적 외 집행의 재발 방지를 위한 연구보조비 등의 지급기준 재정비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전력발전지원(7131-314)은 미래전에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 미래 작전개념 및 부대구조 등에 대한 각종 연구 및 시험평가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력업무지원 및 안보학술연구지원 등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2024년도 예산액 197억 1,000만원에 이·전용등(감) 15억 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83억 8,300만원 중 173억 3,300만원이 집행되어 3억 4,200만원이 불용됨.

[2024년도 전력발전지원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력발전지원	19,710	180	△1,507	18,383	17,333	708	342	20,499
안보학술연구지원	2,045	2,045	△98	1,947	1,900	-	47	2,179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안보학술연구지원에는 포상금 비목(310-03)으로 국방대학교 특정직 교수에 대한 연구보조비[108], 성과급[109] 및 교수연구조성비[110](이하, “연구보조비 등”)가 2024년 6억 641만원이 편성되었고, 국회에서 심의·확정하였음.[111]

[2024년도 특정직교수 관련 지원 예산 편성내역]

(단위: 원)

내역 사업	편성내역
특정직연구보조비	26명*1,916,000원*12월*0.7544=450,974,000
특정직교수성과급	26명*344,000원*12개월*0.7544=80,968,000
교수연구 조성비	교수 34명*140,000원*12개월*0.7503=42,857,000 조교수 16명*130,000원*12개월*0.7748=19,339,000 부교수 11명*120,000원*12개월*0.7748=12,273,000 합 계 : 74,469,000원
합계	606,411,000원

자료: 국방부

108) 기존 기성회계가 없는 국방대는 특정직 교수와 국립대 교수와의 보수 격차를 해소하고 우수교수 유치를 위해 교육부 훈령을 준용하여 1989년부터 “정액연구보조비”를 예산으로 지급하여왔으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특정직(민간인) 교수에게 직급별 정액으로 지급하던 연구보조비를 실적급에 따라 지급

109) 특정직(민간인) 교수중 봉사실적,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교육/연구 활동의 활성화와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는 특정직교수 성과급

110) 전임직 교수의 연구활동 활성화와 연구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학술서적 초판, 국제전문학술지, 국내전문학술지를 대상으로 등 연구실적물 게재 실적을 평가하여 연구조성비를 지급

111) 이는 2023년 편성액 7억 4,300만원(비목: 포상금)과 2024년 국방대학교 최초요구안 8억 1,996만원 및 국방부편성안 7억 4,354만원에 비하여 적은 것이나, 기획재정부의 정부 예산편성과정을 거쳐 2025년 예산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고,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 그러나 국방대학교와 국방부는 기획재정부가 2025년 예산안 편성 시 국방부안보다 추가로 2억 7,000만원 증액해준 일반연구비(260-01목) 중 1억 8,000만원을 예산변경을 통해 국방부의 다른 세부사업에 활용하기로 하고,[112] 그에 상응하여 다른 세부사업인 민간보상(7131-301)에 편성된 손실보상금(310-01) 1억 8,000만원을 동 세부사업의 연구보조비 등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세부사업 변경(2024년 3월 7일)함 동시에 기존의 포상금 6억 641만원과 1억 8,000만원을 합한 7억 8,641만원을 합한 기타보전금(310-04)으로 세목조정하고, 이중 7억 1,2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4년도 특정직교수 관련 지원 예산 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에서	예산변경액	~으로	특정직 교수 관련 지원예산 집행내역
안보학술지원 (일반연구비)	180	○ 부대운영지원 50백만원 (세부사업변경) ○ 주요기관 기본경비 39백만원 (국외업무여비로 자체전용)	○ 예산액: 606 ○ 세부사업변경: 180 ○ 예산현액: 786 ○ 집행액: 712
민간보상 (손실보상금)	180	○안보학술지원 (기타보전금)	

주: 특정직교수 관련 지원예산은 당초 편성되었던 포상금(310-03)이 아닌 기타보전금(310-04)으로 조정하여 집행함(예산현액도 기타보전금임).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 재구성

112) 국방부는 동 내역사업의 일반연구비(260-01) 1억 8,000만원을 활용하여 부대운영지원 세부사업으로 5,000만원 세부사업변경, 주요기관 기본경비 세부사업으로 3,900만 국외업무여비로 자체전용 등을 하였음.

○ 그러나 2024년 예산액은 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전년 대비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예산편성권 및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에 기반하여 확정된 예산이고, 앞에서 제시한 「2024년도 특정직교수 관련 지원 예산 편성내역」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구체적인 인원, 1인당 단가, 지원 개월 등이 구체적으로 편성되어 있었음.

이에 따라 국방대학교와 국방부는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보상비 등을 집행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민간에 대한 손실보상금(310-01) 지급의 취지로 의결한 민간보상 세부사업의 예산 1억 8,000만원을 세목조정 및 세부사업변경하여 임의로 증액하여 집행한 것은 「국회법」 제84조[113] 등에 따른 국회의 예산심의 및 확정권 등[114]을 실질적으로 침해한 것이고, 「국가재정법」 제45조[115]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집행지침」[116]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한 예산집행으로 보임.

---

113) 「헌법」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①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이하 항들 생략)

114) 「헌법」 제54조제2항 및 「국가재정법」 제32조에 따른 정부의 예산편성권 등을 형해화한 측면도 있음.

115)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116) 집행지침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동 집행은 가, 나, 다에 모두 해당하는 집행임.
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나.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다. 연도말에 다른 사업예산의 집행 잔액을 전용하여 불요.불급한 소요에 충당하여 집행하거나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경우 등

○ 따라서 국방부와 국방대학교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직 교수에 대한 연구보조비, 성과급 및 교수 연구조성비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117]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117) 국방대학교 「교수업적평가에 관한 예규」에 관련 지급기준이 있음.

(35) 군 배상금(7136-301): 대규모 이용액 발생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군 배상금(7136-301)은 민간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군용 비행장·사격장 소음(‘소음피해배상금’) 또는 국방부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민간 피해(‘일반배상금’)로 구분됨.

○ 2024년도 예산액 176억 8,900만원에 이·전용등(증) 1,184억 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357억 3,800만원 중 1,357억 3,800만원이 집행되어 불용액이 없었음.

[2024년도 군 배상금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군 배상금	17,689	-	118,409	135,738	135,738	-	-	17,689
일반배상금	17,089	-	118,043	135,132	135,132	-	-	17,089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일반배상금은 2021년 이·전용 규모가 10억원으로 소규모였으나, 2022년 162억 9,400만원, 2023년 606억 9,300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데 이어, 2024년에도 국방부 이·전용 사업 중 중 가장 큰 규모의 이용 증액 1,180억 4,900만원이 발생하였음.

이러한 이용의 큰 폭으로 증가는 대부분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위자료) 배상을 위한 것임.[118]

[연도별 일반배상금 편성요구 대비 예산변경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편성요구	예산 (A)	이·전용 등 (B)	현액 (C)	집행 (D)	집행률 (D/A)
'20년	164,832	100,440	6,317 (△5,100)	101,657	101,358	100.9
'21년	195,780	186,909	1,000	187,909	185,000	99.0
'22년	82,709	82,709	16,294	99,003	98,908	119.6
'23년	27,705	27,705	60,693	88,398	87,898	317.3
'24년	122,089	17,689	118,049	135,738	135,738	767.4
'25년	31,897	17,689	-	17,689	17,689	100.0
'26년	70,855	20,012 (정부편성안)				

자료: 국방부

118) 「국가재정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용 예산의 이용이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장(분야), 관(부문), 항(프로그램)의 금액을 상호 융통하는 것을 의미함. 이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군 배상금인 경우 같은 항 단서의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2024년도 예산총칙 제10조)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됨.
그러나 예산의 이용은 예산심의를 통하여 국회가 결정한 거시적인 정책결정을 행정부가 임의로 수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예산상 긴급상 필요가 있거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자체이용을 필요최소한에 그치지 않으면 「국가재정법」 제45조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할 소지가 적지 않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이용 규모가 확대된 관련 경과를 살펴보면, 1990년 제정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119]은 보상을 받은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는데, 2021년 헌법재판소는 재판상 화해의 범위에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음.[120]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旣 보상금 수령 피해자들이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2022년 대법원이 최종 지급판결을 하면서 배상금 소요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2020년 재출범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121]가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의 범위를 과거보다 넓게 인정함에 따라 피해자인원 자체도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정신적 손해 위자료 소송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122]

이상과 같은 사유로 국방부 일반 배상금 소요가 크게 증가하여 5.18 배상금이 2023년 56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2024년도 854억원을 지급하였음.[123]

---

119) 현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전신 법률임.

120) **구법 제16조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등과의 관계등)** ②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단순위헌**, 2019헌가17, 2021. 5. 27.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0. 8. 6. 법률 제4266호로 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가운데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12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①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둔다.

122) 2023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배상금 소멸 시효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함(대법원 2020다270633)

123) 군(국방부)과 경찰(법무부) 공동 소송수행 사건은 판결문상 가해정도, 군·경찰간 이송 등 수많은 변수를 감안할 때 책임 비율 계산의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 범위에서 부처간

[일반배상금 지급 현황]

(단위: 건, 명,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 5.현재		
	건수	인원	지급액	건수	인 원	지급액	건수	인 원	지 급 액	건수	인원	지급액
합 계	**591**	**971**	**16,193**	**845**	**2,646**	**77,591**	**684**	**3,817**	**131,889**	**264**	**642**	**16,042**
5.18 민주화운동	10	34	1,796	228	1,664	56,344	131	1,844	85,431	31	121	4,481
삼청교육 등 기타 과거사	11	147	2,937	51	276	10,824	109	1,385	39,989	61	317	9,592
무 단 점 유	17	148	1,306	33	41	2,691	32	53	1,726	7	16	1,202
소 송 비 용	99	104	637	74	75	545	37	38	225	15	15	77
기타 손해배상 구 상 금	36	80	8,469	53	153	5,923	32	61	3,296	8	11	304
지배심·특배심	418	458	1,048	406	437	1,264	343	436	1,222	142	162	386

자료: 국방부

○ 5.18 사건은 ’21.5.27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22년~’24년 증가하다가 이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위 표의 삼청교육대·제주4.3사건·한국전쟁·5.18광주민주화·여순사건 등 타 과거사 수행이 점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124)]

협의하여 지급하고 있음.
또한, 배상금은 법정 지급기한을 7일로 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하여야 함. 이에, ’24년 국방부는 배상금 조기 지급을 위해 사전 재원부서를 찾아서 이·전용을 사전에 시행하여 추가이자 발생 없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임의변제의 절차등)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변제청구서를 받은 지급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특별회계 소관사건에 관하여는 2주일 이내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24) 2022년 시행된 여순사건 희생자를 구제를 위한「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이와 같이 과거사 등으로 인한 배상금 수령자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배상금 소송이 지속될 것이 거의 확실히 예견되는 상황이고,[125] 2025년도의 경우에도 5월 기준으로 이미 편성된 예산 176억 8,900만원이 모두 소진되어 다시 적지 않은 이용이 불가피한 실정임.

○ 따라서 국방부는 관련 소송 경과 및 기존 피해자 통계 등을 분석하여 배상금 소요를 면밀히 추계하여 연례적으로 다른 사업으로부터의 대규모의 이용 재발을 방지하기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여순사건위원회가 설립됨에 따라 희생자 유족결정을 받은 당사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급증하고, 관련 법령 개정으로 조사기간이 추가적으로 연장되는 등 향후 여순사건에 대한 소송사건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배상금 지급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판단됨.

125) 그 외에 기존 피해자가 아닌 신규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배상금 소요도 제기될 수 있음. 다만, 이들의 숫자는 기존 피해자보다는 규모가 적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2.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1) 환경조사 및 치유(4232-302): 정화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집행관리 강화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환경조사 및 치유(4231-302)은 주한미군 반환 및 공여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문화재 조사 포함) 및 치유하는 사업임.

○ 2024년도 예산액 542억 2,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43억 4,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85억 6,300만원 중 270억 3,600만원을 집행(집행률 46.2%)하고 315억 2,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2024년도 환경조사 및 치유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A)	집행액 (B)	다음년도 이월액	집행률 (A/B)	
환경조사 및 치유 사업	54,223	4,340	-	58,563	27,036	31,527	46.2	45,349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환경조사 및 치유 사업의 추진방식을 보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위·수탁 협약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 및 한국환경관리공단(이하 “공단)에 사업비를 교부하고, 각 수탁기관이 협약대상 기지별로 정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 사업은 매년 예산의 대부분을 수탁기관에 정화사업비로 교부하고 있음.

2024년도에는 캠프마켓, 극동공병단 등 10개 기지에 대한 정화예산이 편성되었음.

[2024년도 기지별 정화사업 현황]

(단위: m^2, %, 억원)

구분	기지명	부지면적(A)	정화면적(㎡)	정화 예산 (‘24년 배정)
1	501정보대	5,624	1,209 (21%)	80억원(44억원)
2	종교휴양소	19,699	2,122 (11%)	
3	극동공병단	42,096	33,970 (75%)	293억원(84억원)
4	캠프 킴	48,399	33,560 (69%)	287억원(85억원)
5	캠프 마켓(A,B)	216,153	125,604 (58%)	1,019억원(0억원)
	캠프 마켓(D)	229,235	미 정	440억원(54억원)
6	캠프 잭슨	85,369	38,537 (47%)	221억원(40억원)
7	레드클라우드	662,941	204,131 (31%)	876억원(36억)
8	캠프 모빌(부분)	57,060	35,320 (62%)	341억원(70억원)
9	성남골프장	853,760	84,164 (9%)	935억원(129억원)
10	H-805(워커)	66,884	24,576 (36%)	95억원(0억원)

자료: 국방부

○ 동 사업의 연도별 집행률은 2021년과 2022년 70%대였고, 2023년 95.1%에 달하였으나, 2024년 46.2%로 급격히 하락하였음.[126)]

[연도별 환경조사 및 치유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1	56,754	-	56,754	-	20,491	-	77,245	56,754	73.5	20,491
2022	64,524	-	64,524	20,491	-	-	85,015	64,524	75.9	20,491
2023	65,002	-	65,002	20,491	2,399	-	87,892	83,552	95.1	4,340
2024	54,223	-	54,223	4,340	-	-	58,563	27,036	46.2	31,527

자료: 국방부

[기지별 집행부진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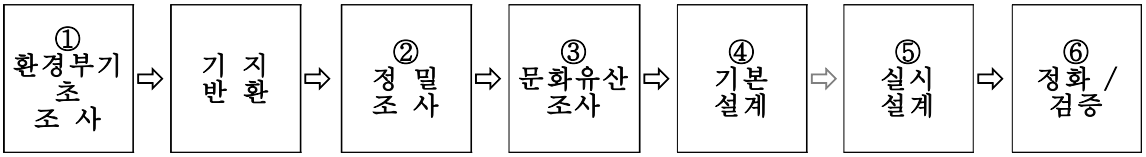
- (캠프 마켓 D) 기지반환 지연('22년→'23. 12월)으로 사업 정상추진 제한
  - '23년 정밀조사, '24년 문화재조사/기본설계 계획이었으나 사업 지연
- (캠프 킴) 문화유산조사로 인한 정화용역 일시중지('23.5~'24.7월) 및 지연
  - 시굴조사 결과 정밀발굴조사 시행으로 문화재 조사기간 연장(5개월)
- (캠프 마켓 B) 조병창병원 철거 취소 소송에 따른 정화사업 추진 지연
- (캠프 마켓 A) 주변지역(7구역) 정화 유예에 따른 집행금액 감소
- (캠프 모빌) 정화명령 상 불소 기준 완화 지자체 협의 지연

자료: 국방부 제출

126) 국방부는 환경정화사업은 기지반환 관련 한미 협의 진행 상황 변화, 법정 절차 진행 과정의 변수 발생(문화재 발견에 따른 문화유산조사, 시민단체 소송, 지자체 협의 지연) 등 외부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이라는 입장임. 국방부는 기지반환 지연, 문화유산조사, 소송발생및 지자체 협의 지연으로, 외부적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사업 지연이 2024년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기지별 정화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기본적으로 6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2024년도 집행부진 기지들은 주로 2번 정밀조사, 3번 문화유산조사 등의 단계에서 집행부진이 발생하였음.

[기지별 정화사업 추진 단계]



2025년도에는 대부분의 기지별 정화사업이 4번 기본설계, 5번 실시설계 및 6번 정화/검증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국방부는 향후 기지별 설계 및 정화사업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집행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3.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1) 부대개편 7차 사업(4131-482): 17사단 대관협의 절차 이행 소홀에 따른 사업 지연 주의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부대개편 7차 사업은 부대개편 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 착수한 41개 부대를 미래 부대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임.

2024년도 예산액 1,530억 2,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63억 3,500만원, 이·전용 등(감) 764억 2,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29억 3,000만원 중 750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57억 8,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1억 1,5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4년도 부대개편 7차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부대개편 7차 사업	153,024	6,335	△76,429	82,930	75,026	5,789	2,115	289,688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부대개편 7차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5건의 17사단 개편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각의 2024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은 아래와 같음.

[2024년도 부대개편 7차 사업 중 17사단 개편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년							이·전용 비율 (B/A)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B)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부대개편 7차 사업	153,024	6,335	△76,429	82,930	75,026	5,789	2,115	49.9
17사단 소계	50,714	1,342	△46,729	5,327	4,188	1,015	123	92.1
17사단 직할대	**22,094**	1,131	**△21,986**	1,239	1,187	1	50	**99.5**
17사단 10화생방대대	**15,208**	108	**△15,171**	146	119	-	27	**99.8**
17사단 항공단	**4,109**	24	**△3,935**	197	139	35	23	**95.8**
17사단 본부대	**7,079**	65	**△7,064**	80	78	-	2	**99.8**
17사단 포병여단 305·307 포병대대	2,224	14	1,427	3,665	2,665	979	21	64.2

자료: 국방부

○ 5건의 17사단 부대개편 내역사업 중 17사단 포병여단 305·307 포병대대 사업을 제외한 4건의 사업은 2024년도 예산액의 95% 이상을 이·전용, 조정을 통해 감액함으로써, 사실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음.

○ 2024년도에 17사단 직할대 개편, 17사단 10화생방대대 개편, 17사단 항공단 개편, 17사단 본부대 개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사유는 17사단이 소재한 인천광역시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설계가 지연되었기 때문임.

○ 인천광역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및 동 시행령을 잘못 적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으로 판단하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하였음.

그러나 동 사안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127]이었음. 인천시는 이를 뒤늦게 인지하고 국토교통부 협의를 진행하여 조건부 승인을 얻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관리계획 변경 승인까지 총 2년 4개월이 걸렸으며, 결과적으로 17사단 부대개편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

127) 경미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됨
-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의 최초 대비 10분의 2 이하로 증가되는 경우

※ 다만, 증가되는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은 경미한 사항에서 제외

○ 인천시는 최초 승인시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감소(1,131,583㎡ → 917,457㎡, △214,126㎡)하고,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 20% 이하로 증가(18.8%↑, 183,752㎡ → 218,266㎡, +34,514㎡)됨에 따라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승인하였음

○ 이후, 경미한 사항의 예외가 되는 "증가되는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은 경미한 사항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최초의 승인을 취소하였음
(* 본 건의 증가되는 건축 연면적은 +34,514.83㎡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등) ②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토석의 채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1.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건축하거나 연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 면적을 말한다)인 건축물의 건축 ④ 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5호 본문에 따른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감소 나.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의 최초 대비 10분의 2 이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최초 대비 10분의 1 이하의 증가(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누적된 면적을 말한다). 다만, 증가되는 면적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한편, 국방부 역시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128]에 따라 시설소요 제기 이전에 개발제한구역 관련 대관협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임.

128) **「국방 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 제7조(소요 제기 전 확인사항)** ④ 소요제기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협의 완료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등과 같은 대관협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⑥ 시설소요 작성기준은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5조의 관련내용을 적용한다.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5조(시설소요 작성)
⑨ **소요제기기관은 시설소요 제기 전** 사업부지를 명확히 지정하고, 토지소유자 현황을 확인하여 국·공유지, 사유지 등 국방부 소유의 토지가 아닐 경우 매입·사용동의 등을 통해 토지 사용에 대한 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시설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당 부지와 관련된 개발제한구역, 도시·군관리계획, 국가유산 보존영향검토 대상구역, 매장유산 유존지역 등의 대관협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책임이 있다**.

○ 부대개편 7차 사업은 2022년에 착수한 사업으로, 국방부는 2021년 5월 예산요구 이후 2022년 12월에야 관할 지자체(인천시)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협의서를 접수하였음.

이는 훈령상 시설소요 제기 전 사전 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천시의 승인 지연과 더불어 사업 정상 추진을 저해한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음.

[2022년~2025년 17사단 개편 사업 예산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17사단 직할대	950	6,227	22,094	24,616
17사단 10화생방대대	361	1,228	15,208	13,773
17사단 항공단	154	619	4,109	2,106
17사단 본부대	133	443	7,079	6,365

자료: 국방부

○ 따라서, 국방부는 부대개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관협의 등 규정상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지 않아 사업 승인 지연 및 예산 집행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4. 군인연금기금

(1)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 운용수익률이 중장기적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산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여유자금의 만기가 도래하여 회수 시에 발생하는 이자수입임.

○ 2024년도 계획액 124억 9,900만원이었으나, 연금지급금 부족으로 인한 책임준비금 사용을 위해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계획 대비 초과 회수에 따른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383억 7,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100%임.

[2024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계획액
	계획액	이체등 증감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기타재산이자수입	12,499	-	12,499	38,377	38,377	-	54,136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군인연금기금은 다른 특수직역 공적연금과 같이 정년 이후 퇴직자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적·생활보장적 성격 외에도 목숨을 담보로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한 근무 환경에서 근무한 군인들에 대한 국가보상적 성격도 포함하고 있으며,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가의 보전금(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운용수익률 및 재정건전성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함.

○ 먼저, 군인연금기금의 여유자금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2024년 당초 퇴직급여 계획액(3조 5,940억원) 대비 중장기 복무간부들의 퇴직 급증으로 인하여 퇴직급여 집행액(3조 8,195억원)이 급증함에 따라 2022년 9,054억원, 2023년 7,378억원, 2024년 5,983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2024년도 여유자금규모 및 퇴직급여 등의 결산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3년	2024년			
		당초 계획액(A)	수정액	결산 (B)	집행률 (B/A)
여유자금규모	7,378	-	-	5,983	-
퇴직급여	35,724	35,940	38,267	38,195	106.3
퇴직수당	3,630	3,085	3,916	3,781	122.6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 재구성

군인연금기금은 2024년말 기준 여유자금 5,983억원 중 76억원만 개별위탁[129]하고 있고, 나머지 5,907억원을 연기금투자풀에 위탁하여 자금운용 중임.[130]

○ 군인연금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은 2023년 7.93%에서 2024년 4.79%으로, 전년 대비 3.14%p 하락하였음.[131]

○ 한편, 당초 계획보다 높은 물가상승률 및 퇴직자 증가 등으로 인해 퇴직급여 집행액이 증가하여 군인연금기금의 기금적립금[132] 규모는 2021년말 1조 3,408억원에서 2024년말 8,903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기금 적립률은 2021년 4.6개월에서 2024년 2.5개월로 감소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음.

---

129) 2007년 투자 후 보유 중인 대체투자 자산평가액으로, 최근에는 추가적인 개별위탁 집행실적은 없음.

130) - 군인연금기금은 '11년부터 연기금투자풀에 위탁하여 자금 운용 중임. 자금 위탁 업체는 연기금투자풀 운영위원회(기획재정부)에서 선정한 주간운용사들(삼성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이며, 군인연금기금은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단의 권고에 따라 두개의 주간운용사를 통해 자금을 운용하고 있음.
- 군인연금기금 투자는 연간 단위로 “계획수립-운용-현황보고-평가”절차를 통해 진행됨.
- 연초에 연간 자산운용 계획을 수립 후 운용사에 계획을 통지하여 해당 계획에 맞춰 자금을 집행하고 운용함.
- 연중에는 분기마다 위원회(자산운용위원회,위험관리위원회,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주간운용사가 운용 현황과 향후 운용 계획을 보고하고, 월마다 운용전략회의를 하고 있음.
- 이후 연말에 기금에서 주간운용사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해 주간운용사 간 자금 배분을 결정하게 됨.
- 그리고 주간운용사는 연기금투자풀 제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하위 운용사와 상품 선정하고 있음. 주간운용사 선정은 연기금투자풀 운영위원회(기획재정부)에서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진행되고 있음.

131) 국방부는 2024년 목표수익률 대비로는 1.16% 높았다고 설명하고 있음.

132) 기금의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금액 등이 누적한 것으로서 여유자금과 달리 보유 부동산 평가액을 포함하는 금액임.

[연도별 기금적립금]

(단위: 억원, 개월)

연도	급여 지출액	기금적립금 (부동산+ 금융자산)	기금 적립률 (기금적립금/연 급여지출액)
2021	35,327	13,408	4.6개월
2022	37,258	12,003	3.9개월
2023	40,785	10,304	3.0개월
2024	43,449	8,903	2.5개월

자료: 국방부

○ 따라서 국방부는 군인연금기금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건정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유자금의 운용수익률을 더욱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자산운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5. 군인복지기금

(1)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 군 관사 장기 미퇴거에 대한 관리 강화 대책 마련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기금 집행내역

○ 주거지원계정의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은 민간주택임대자금 대부 지원금의 상환지연이자와 군 관사 퇴거대상자가 퇴거하지 아니할 경우에 징수하는 퇴거지연관리비를 수납하는 수입과목임.

○ 동 수입의 2024년도 계획액은 19억 9,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40억 7,600만원 중 25억 8,300만원은 수납되고 14억 8,7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600만원은 불납결손됨.

[2024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							
기타경상이전수입	1,997	1,997	-	1,997	4,076	2,583	1,487	6	1,867

자료: 국방부

○ 국방부는 「군인복지기본법」에서 국가가 군 간부에게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규정에 근거하여 관사 또는 간부숙소(독신자숙소)와 민간주택임대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군인복지기본법상 군 숙소 지원 규정]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은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제공한다.

1.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이하 이 조에서 "군 숙소"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가.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부
   나.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
   다. 월차임

② 국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거지원을 제공받은 군인에게 입주**보증금 등 주거지원에 따른 금전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군 숙소의 규모와 시설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민의 평균주거수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군 숙소의 관리,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및 금전 징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위 법률에 따른 주거지원은 관사 또는 간부숙소(독신자숙소)와 민간주택 전세자금의 이자지원으로 구분되는데, 관사·독신자숙소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에 비해 전세자금 이자지원은 군인복지기금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인에게는 월 16만원의 주택수당[133]을 지급하고 있음.

133) 관사·독신자숙소의 노후화 및 부족문제 및 민간주택 전세자금 이자지원 과소 편성 문제와 별개로, 주택수당은 실질적인 주거비용 보전에는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라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군 간부 주거지원 현황]

구분	군 관사	독신자 숙소	민간주택 임대지원
지원 대상	부양가족 有	부양가족 無	부양가족 有 (근무지 관사 부족 시)
종 류	일반(직접건립, 매입) BTL(민간건립)		이자지원 (시중은행 대출)
회 계	일반회계		군인복지기금

주: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인은 주택수당 지급(하사~중령)
자료: 국방부

○ 또한,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의3(주거지원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1항제1호나목에 근거하여 관사 퇴거 대상자가 퇴거하지 아니할 때 징수하는 퇴거지연관리비를 주거지원계정의 재원으로 하고 있음.

○ 군간부는 인사명령의 보임일을 기준으로 자신이 근무하게 될 부대 또는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군관사를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

그런데 해당 군관사에 입주해 있던 다른 군간부가 다른 지역의 부대 등으로 인사명령에 따라 이동하면서 퇴거기한[134]이 지나더라도 가족들은 계속해서 그 관사(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 위

134)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표 3

기 한	퇴 거 사 유
3일	· 다른 관사 및 간부숙소에 입주하거나 민간주택임대자금으로 임차한 주택에 입주 시 · 본인 및 부양가족의 자가 보유, 부양가족 상실(사망 및 이혼 제외), 주거지원 조건 상실시
1개월	· 다른 관사 및 간부숙소 배정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대출 실행일 기준
2개월	· 관리부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수반하는 전속 또는 파견 시
3개월	· 「군인사법」에 따른 전역, 제적, 퇴역 · 부양가족 사망 및 이혼에 따른 주거지원 조건 상실 시
기타	· 제10조제1항제3호(해당 명령발령일 기준 임대계약으로 인해 자가에 입주할 수 없음이 증빙서류를 통해 입증된 자)에 따라 입주한 자는 입주일 기준 3년 ·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입주한 자는 입주일 기준 2년 ·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입주한 자는 입주일 기준 1년

치한 관사)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어서 퇴거지연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새로운 전입자가 해당 군관사에 입주하지 못하여 가족들과 별거하여 지내거나 좁은 간부숙소(기존 독신자숙소)에서 생활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관사퇴거지연에 따른 각 군별 퇴거지연관리비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445건에서 2021년 591건, 2022년 732건, 2023년 900건, 2024년 1,279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음.

[각 군별 퇴거지연관리비 징수 현황]

(단위 : 건/백만원)

연도	구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계
2020	징수 건수	161	125	151	8	445
	징수액	403	136	110	37	687
2021	징수 건수	249	95	241	6	591
	징수액	431	91	175	7	704
2022	징수 건수	384	120	221	7	732
	징수액	536	162	314	23	1,035
2023	징수 건수	550	77	255	18	900
	징수액	775	153	351	29	1,308
2024	징수 건수	774	183	300	22	1,279
	징수액	903	183	255	26	1,366

자료: 국방부 제출

특히, 육군의 징수건수는 2020년 161건에서 2024년 774건으로 613건(380%) 급증함으로써 전체 징수건수의 증가분의 73%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육군의 관사 퇴거지연에 대한 관리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이와 같이 군관사의 퇴거지연이 급증한 이유로는 국방부가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라 부과하는 퇴거지연관리비 수준[135]을 해당 지역의 주거비용 대비 낮게 부과함에 따라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등에 위치한 관사에서 거주하는 군 간부들의 가족들이 기한 내에 퇴거하지 않고 관사퇴거지연금을 지불하더라도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임.[136]

이러한 문제 지적[137]에 대하여 국방부는 2025년 6월말 현재 관사퇴거지연금 징수 기준을 상향하는 훈령 개정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 따라서 국방부 및 각 군은 장기 관사퇴거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를 강화하고, 장기 관사퇴거지연에 대한 지연금 부과수준 인상 및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135)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표 5 (3.3제곱미터당 부과액)

경과 기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5급지
퇴거기한 종료 후 6개월까지	5만원	3만원	2만원	1.8만원	
7개월 부터 퇴거일 까지	7.5만원	4.8만원	3.2만원	2.7만원	

136) 예를 들어, 국방부가 위치한 용산구에 위치한 공급면적 102제곱미터 관사의 경우 6개월까지 관사퇴거지연금은 월 170여만원 수준이나, 근처의 유사한 면적의 아파트를 임대차할 경우 월세 수준은 240만원에서 320만원으로 나타남.

137) 2024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관사 퇴거지연관리 미흡 문제가 지적되었음.

(2) 군간부전세자금이자지원(2240-640): 협약은행 추가 등을 통해 시중 가산금리를 고려한 적정 가산금리 책정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기금 집행내역

○ 군간부전세자금이자지원(2240-640)은 군 관사 부족으로 입주 대기 중인 군 간부에게 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의 2024년도 계획액은 521억 700만원, 수정계획액은 779억 9,800만원으로 이 중 758억 4,700만원 집행하고 21억 5,1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년도 군간부전세자금이자지원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군간부 전세자금 이자지원	52,107	77,998	-	77,998	75,847	-	2,151	67,055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2024년도 동 사업의 당초 계획은 7,780세대에 대하여 평균 임차보증금 1억 8,200만원과 전세자금대출금리 3.68%을 근거로 521억 7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회계연도 중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고금리 지속과 전세 시세 상승 등의 여파로 인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계획액을 779억 9,800만원으로 증액수정하였음.

[2024년도 편성 근거 및 집행내역 현황]

구분		편성 근거 및 집행내역
예산 편성근거	(당초) 계획액	ㅇ 이차보전금 52,107백만원 - 지원세대 7,780세대 × 182백만원 × 3.68%
	수정 계획액	ㅇ 이차보전금 77,998백만원(기금운용계획변경) - (1~8월 실집행) 7,206세대 × 대출 209백만원 × 금리 5.20% × 8/12개월 - (9~12월 집행전망) 6,954세대 × 대출 231백만원 × 금리 5.11% × 4/12개월
집행내역		ㅇ 이차보전금 75,847백만원 - 지원세대 5,916세대 × 255백만원 × 5.16%

자료: 국방부 제출

○ 2024년 집행은 지원세대 5,916세대로 수정계획 6,954세대보다 감소하였으나, 평균 임차보증금이 2억 5,500만원으로 수정계획 2억 3,100만원 대비 2,400만원 증가하였고, 금리도 집행기준 5.16%으로 수정계획 5.11% 대비 0.05%p 증가하였음.

○ 한편, 동 사업은 주거지원계정의 자체적인 재원이 없음에 따라 2025년부터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집행되고 있으므로, 국가재정을 절감하고 지원세대를 증가시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음.

○ 사업체계를 살펴보면,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국방부와 해당 군 부대에서 추천받은 군 간부에게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하고 이에 대한 이자는 국방부가 해당 협약은행에게 정산하는 구조임.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2023년 11월 이후 계약자부터 신잔액기준 COFIX + 1.7%으로, 가산금리는 1.7%로 협약되었고,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인해 2024년 11월부터는 가산금리가 0.15%p 인하된 1.55%로 재협약되었음.[138)]

○ 가산금리 재협약 시점인 2024년 11월 기준, 우리나라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평균 (순)가산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는 약 1.07% 수준임.[139)]

---

138)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국방부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협약상품 이자율이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이자율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급격한 금리 인상기를 대비하여 지원금액 상한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기금 소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 채택됨(국방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2024년 9월)

139) 은행연합회 은행별 대출 비교공시사이트의 신규취급에 대한 공시기준으로, COFIX 신잔액 기준과 금융채 24개월(2년 고정금리) 기준이 분리되어 공시되고 있지는 않고 통합하여 공시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방부의 협약은 COFIX 신잔액 기준보다 다소 넓은 전세자금대출을 대상으로 한 가산금리로 이해되므로, 이러한 시중 가산금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방부는 군간부전세자금이자지원사업의 가산금리가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와의 협력을 통해 협약은행을 추가하는 등의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경우에는 적지 않은 국가재정을 절약하고, 이로 인해 지원세대를 증가시킬 수 있음.[140]

참고로, 군인공제회의 회원대여제도의 경우 기존 2개 은행에서 취급하였으나, 2024년 9월에 1개 은행을 추가함으로써 3개 은행에서 회원대여를 취급하도록 개편하는 등의 적극적 노력을 병행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가산금리를 적용하여 대여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141].

○ 따라서, 국방부는 군간부전세자금이자지원사업의 가산금리가 시중 가산금리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협약은행 추가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재정을 절약하고, 지원세대 수를 확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140) 국방부는 시중은행의 가산금리에서 차감되는 우대금리를 정할 때 상품을 통한 이윤을 고려하는 것으로 이를 전부 반영하는 것은 제한되며 상품운영에 따른 비용(보증료, 보험료, 시스템 구축비용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협약은행 추가 등의 정책적 추진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임. 일반 전세자금대출 상품과 달리 군인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 금리에서 개인별 우대금리 반영이 어려운 점은 시중 (순)가산금리를 고려한 적정 가산금리 책정 협의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라고 설명하고 있음.

141) A은행은 2024년 11월 가산금리 1.28%, 우대금리 0.5%임에 따라 순가산금리는 0.78%, 2025년 6월 가산금리 1.08%, 우대금리 0.7%임에 따라 순가산금리는 0.38%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서덕교)

1. 결산총괄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142]제정에 따라 설치된 독립 위원회로 2019년 12월 27일 출범하였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143]은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후 2년간 진상규명을 하되, 2회에 한정하여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위원회는 2차례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2023년 12월 26일에 위원회 조사활동 기간이 마무리되었으며, 2024년 6월 26일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최종 위원회 활동은 종료되었음.

---

142)「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정일: 2018. 3. 14, 시행일: 2018. 9. 14)
제1조(목적) 이 법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4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활동을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상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 세출예산현액은 예산액 68억 8,800만원이며, 이 중 55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13억 1,7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등	이체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4년도	6,888	-	-	-	-	6,888	5,571	-	1,317

1. 세입

○ 2024회계연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으나, 10억 5,2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10억 5,200만원을 수납함.

2. 세출

가. 총 괄

○ 2024회계연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68억 8,800만원으로, 이 중 55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13억 1,7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2024회계연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경비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로 20억 4,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기본경비로 23억 3,800만원, 사업비로 11억 9,200만원이 집행되었음.

[2024회계연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이체 전용 등	예비비				
▢ 합 계	6,888	-	-	-	6,888	5,571	-	1,317
○ 인건비	2,231	-	-	-	2,231	2,041	-	190
○ 기본경비	2,897	-	-	-	2,897	2,338	-	559
○ 5·18진상규명 지원	1,760	-	-	-	1,760	1,192	-	568

나. 인건비 및 기본경비

○ 2024회계연도 인건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22억 3,100만원이며, 이 중 20억 4,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9,0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2024회계연도 인건비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이체 전용 등	예비비				
▢ 인건비	2,231	-	-	-	2,231	2,041	-	190
- 인건비	2,231	-	-	-	2,231	2,041	-	190

○ 2024회계연도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28억 9,700만원이며, 이 중 23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5,9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2024회계연도 기본경비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이체 전용 등	예비비				
▢ 기본경비	2,897	-	-	-	2,897	2,338	-	559
- 위원회 기본경비	2,897	-	-	-	2,897	2,338	-	559

다. 주요 사업비

○ 2024년도 주요사업비 예산현액은 17억 6,000만원이며, 이 중 11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고, 5억 6,8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음.

[2024회계연도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이체 전용 등	예비비				
▢ 5·18진상규명 지원	1,760	-	-	-	1,760	1,192	-	568
- 5·18진상규명 지원	1,760	-	-	-	1,760	1,192	-	568

라. 이월내역

○ 2024회계연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액은 미발생하였음

마. 불용내역

○ 2024회계연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68억 8,800만원 중 13억 1,700만원임.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1억 9,000만원, 기본경비 5억 5,900만원, 5·18 진상규명 지원 사업비 5억 6,8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2024회계연도 불용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불 용 액
합 계	1,317
○ 인건비	190
○ 기본경비	559
○ 5·18 진상규명 지원	568

3. 재무제표 분석

가. 재정상태표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말 자산은 위원회 운영 종료에 따라 전년도 자산 13억 1,500만원 모두 감소하였고, 부채 또한 위원회 운영 종료에 따라 전년도 부채 2억 7,500만원 모두 감소함.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재정상태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A)	2024년 (B)	증감액 (C=B-A)	증감률 (C/A)
자 산	유동자산	1,055	-	△1,055	△100
	일반유형자산	255	-	△255	△100
	무형자산	5	-	△5	△100
	기타비유동자산	-	-	-	-
	자 산 계	1,315	-	△1,315	△100
부 채	유동부채	9	-	△9	△100
	장기충당부채	267	-	△267	△100
	부 채 계	275	-	△275	△100
순 자 산 계		1,040	-	△1,040	△100

나. 재정운영표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57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의 128억 4,100만원 보다 70억 7,900만원 감소하였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재정운영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A)	2024년 (B)	증감액 (C=B-A)	증감률 (C/A)
Ⅰ. 프로그램 순원가	12,841	5,957	△6,884	△53.6
Ⅱ. 관리운영비	-	-	-	-
Ⅲ. 비배분비용	-	-	-	-
Ⅳ. 비배분수익	-	195	195	100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12,841	5,762	△7,079	△55.1
Ⅵ. 비교환수익 등	-	-	-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12,841**	**5,762**	**△7,079**	**△55.1**

다. 순자산변동표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2024회계연도 기말순자산은 전년도 말 10억 4,000만원 모두 감소함.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순자산 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A)	2024년 (B)	증감액 (C=B-A)	증감률 (C/A)
Ⅰ. 기초순자산	2,024	1,040	△984	△48.6
Ⅱ. 재정운영결과	12,841	5,762	△7,079	△55.1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11,857	4,722	△7,135	△60.2
Ⅳ. 조정항목	-	-	-	-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1,040**	**-**	**△1,040**	**△100**

병무청 소관 (전문위원 서덕교)

1. 결산 총괄

○ 병무청은 일반회계 예산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

가. 세입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액 3억 3,600만원보다 2억 1,500만 원이 증가한 5억 5,100만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이 중 4억 4,400만 원이 수납되고 1억 7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 미수납액 1억 700만원은 징계부과금 5,900만원과 국외여행 미귀국자 귀국보증인 체납 과태료 4,800만원임.

[2024년도 세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연 도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24년	336	551	444	-	107
2023년	300	534	487	-	48

나. 세출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세출예산현액은 4,118억 7,300만원으로, 이 중 3,908억 9,200만원(94.9%)을 집행하고 209억 8,100만원(5.1%)은 불용처리 하였음.

[2024년도 세출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연 도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등	전용액 등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4년	411,873	411,873	-	±730	411,873 (100%)	390,892 (94.9%)	-	20,981 (5.1%)

○ 세출예산현액 4,118억 7,300만원은 당초 예산과 같으며,

전용액은 종합상황실 설치 4억 2,000만원, 병역판정검사 여비 2억 7,900만원, 한시임기제 및 청년인턴 고용부담금 600만원이고, 사회복무연수센터 공공요금 2,500만원은 내역변경임.

불용액은 인건비 4억 4,400만원, 기본경비 3억 3,600만원, 사업비 202억 100만원 등 총 209억 8,100만원임.

1. 세입

가. 총괄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 (C/B)	불납결손액 (D)	% (D/B)	미수납액 (E=B-C-D)	% (E/B)
합 계	336	551	444	80.7	-	-	107	19.3
○ 토지대여료 (511)	1	2	2	100.0	-	-	-	-
○ 건물대여료 (512)	106	104	104	100.0	-	-	-	-
○ 기타관유물 대여료 (513)	25	29	29	100.0	-	-	-	-
○ 과태료 (563)	5	54	6	11.2	-	-	48	88.8
○ 징계부과금 (564)	-	61	2	3.8	-	-	59	96.2
○ 변상금 (571)	-	18	18	100.0	-	-	-	-
○ 위약금 (572)	2	0	0	100.0	-	-	-	-
○ 가산금 (581)	-	0	0	100.0	-	-	-	-
○ 기타경상 이전수입 (596)	82	127	127	100.0	-	-	-	-
○ 기타잡수입 (691)	3	2	2	100.0	-	-	-	-
○ 기타고정 자산매각대 (713)	112	155	155	100.0	-	-	-	-

* 자료 : 병무청

나. 집행내역

(1) 수납액 내역

(단위: 백만원)

목별	수납액	수납액내역
계	444	
○ 토지대여료	2	○ 청사부지 일부 임대 수입 : 2
○ 건물대여료	104	○ 구내식당(서울청, 충북청) : 27 ○ 병역판정검사장 나라사랑카드발급소 임대 등 : 77
○ 기타관유물 대여료	29	○ 서울청 구내식당 물품 대여료 : 1 ○ 주거용 임차숙소(본청, 경남청) 사용료 : 28
○ 과태료	6	○ 병역법 위반 과태료 징수 : 6
○ 징계부과금	2	○ 징계부과금 2건 : 2
○ 변상금	18	○ 병무행정 보안체계 고도화 사업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 금액 : 18
○ 위약금	0	○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144] : 74천원
○ 가산금	0	○ 명예퇴직수당 환수분 납부지연 가산금 : 131천원
○ 기타경상이전 수입	127	○ 과오납 환수 등 : 17 ○ 정부구매카드 등 카드 적립금 : 9 ○ 명예퇴직수당 환수분(충북청) : 80 ○ 기타(여비 반납, 국고이자 등) : 21
○ 기타잡수입	2	○ 폐기문서 매각 대금 등 : 2
○ 기타고정자산 매각대	155	○ 의료장비 등 불용물품 매각대금 : 155

* 자료 : 병무청

(2) 미수납액 내역

(단위: 백만원)

목별	미수납액	미수납액내역
계	107	
○ 과 태 료	48	○ 국외여행 미귀국자 귀국보증인 체납 과태료(2건)
○ 징계부과금	59	○ 징계부가금 : 59

* 자료 : 병무청

144) 병역지정업체 복무관리 매뉴얼 발간 물품계약(계약금액:1,977만원) 납품 지연(5일)에 따른 지체상금

다. 집행실적 분석

○ 병무청 소관 2024년도 당초 세입예산액은 3억 3,600만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5억 5,100만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80.7%인 4억 4,400만원임.

○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많은 주요 원인은 징계부과금 6,100만원, 명예퇴직수당 환수분 8,000만원, 국외여행 미귀국자의 보증인에게 부과한 체납 과태료 4,800만원 등이 추가로 세입 조치됨에 따라 징계부과금, 기타경상이전수입, 과태료 등이 추가 징수 결정된 것에 기인함.

○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19.3%로 나타나고 있는바, 미수납액은 징계부과금 5,900만 원, 국외여행 미귀국자의 귀국보증인에게 부과한 체납 과태료(2건) 4,800만원임.

2. 세출

가.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본예산	예산변동		예산현액	집행액	%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전년이월	전용등					
합 계	**411,873**	**-**	**730 △730**	**411,873**	**309,892**	**94.9**	**-**	**20,981**
<병무행정(044)>	411,873	-	730 △730	411,873	309,892	94.9	-	20,981
□병역자원선발(1100)	19,551	-	279 △279	19,551	18,496	94.6	-	1,055
병역판정검사(1131-301)	19,551	-	279 △279	19,551	18,496	94.6	-	1,055
□병역자원충원(1200)	5,418	-	-	5,418	5,239	96.7	-	179
현역병모집(1232-303)	4,362	-	-	4,362	4,209	96.5	-	153
현역병입영(1232-305)	378	-	-	378	373	98.8	-	5
병력동원소집관리(1232-308)	678	-	-	678	657	96.9	-	21
□보충역복무지원(1400)	8,217	-	25 △25	8,217	8,114	98.8	-	103
산업지원인력(1434-309)	344	-	-	344	340	98.8	-	4
사회복무요원 교육(1434-319)	5,751	-	25	5,776	5,767	99.8	-	9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1434-320)	1,188	-	-	1,188	1,156	97.3	-	32
대체역 편입 및 소집(1434-323)	934	-	△25	909	851	93.6	-	58

(단위 : 백만원)

구 분	본예산	예산변동		예산현액	집행액	%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전년이월	전용등					
□병무행정지원 (7100)	378,687	-	426 △426	378,687	359,043	94.8	-	19,644
인건비 (7111-100)	137,873	-	△6	137,867	137,423	99.7	-	444
총액인건비대상기본경비 (7111-200)	3,333	-	6	3,339	3,200	95.8	-	139
총액인건비비대상기본경비 (7111-250)	6,855	-	-	6,855	6,658	97.1	-	197
병무행정안내 (7134-310)	1,890	-	-	1,890	1,854	98.1	-	36
병무청 건강보험부담금 (7134-313)	5,227			5,227	5,208	99.6	-	19
병무행정운영 (7134-317)	8,820	-	420	9,240	8,648	93.6	-	592
병무행정지원 인력운영 (7134-324)	4,336	-	-	4,336	4,133	95.3	-	203
병역의무자지원 (7135-314)	193,737	-	△420	193,317	175,675	90.9	-	17,642
사회복무요원운용 (7135-315)	6,137	-	-	6,137	5,914	96.4	-	223
시설관리 (7136-441)	2,491	-	-	2,491	2,380	95.5	-	111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7137-325)	340	-	-	340	339	99.7	-	1
병무행정정보화(정보화) (7137-501)	7,648	-	-	7,648	7,611	99.5	-	37

* 자료 : 병무청

나. 집행내역

(1) 전용액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별	전용액	전 용 사 유
계	730	
○ 병무행정운영	420	○ 지하 종합상황실 설치
○ 병역판정검사	279	○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면탈 단속 여비
○ 사회복무요원 교육	25	○ 사회복무연수센터 공공요금 (내역변경)
○ 총액인건비대상 기본경비	6	○ 한시임기제 및 청년인턴 고용부담금

* 자료 : 병무청

(2) 불용액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별	예산현액	불용액	%	불용액 내역
계	411,873	20,981	5.1	집행잔액 20,981백만원
○ 병역판정검사	19,551	1,055	5.4	집행잔액 1,055백만원
○ 현역병모집	4,362	153	3.5	집행잔액 153백만원
○ 현역병입영	378	5	1.2	집행잔액 5백만원
○ 병력동원소집관리	678	21	3.1	집행잔액 21백만원
○ 산업지원인력	344	4	1.2	집행잔액 4백만원
○ 사회복무요원 교육	5,751	9	0.2	집행잔액 9백만원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1,188	32	2.7	집행잔액 32백만원
○ 대체역 편입 및 소집	934	58	6.4	집행잔액 58백만원
○ 인건비	137,867	444	0.3	집행잔액 444백만원
○ 총액인건비대상기본경비	3,339	139	4.2	집행잔액 139백만원
○ 총액인건비비대상기본경비	6,855	197	2.9	집행잔액 197백만원
○ 병무행정안내	1,890	36	1.9	집행잔액 36백만원
○ 병무청 건강보험부담금	5,227	19	0.4	집행잔액 19백만원
○ 병무행정운영	9,240	592	6.4	집행잔액 592백만원
○ 병무행정지원 인력운영	4,336	203	4.7	집행잔액 203백만원
○ 병역의무자지원	193,317	17,642	9.1	집행잔액 17,642백만원
○ 사회복무요원운용	6,137	223	3.6	집행잔액 223백만원
○ 시설관리	2,491	111	4.5	집행잔액 111백만원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340	1	0.3	집행잔액 1백만원
○ 병무행정정보화	7,648	37	0.5	집행잔액 37백만원

* 자료 : 병무청

다. 집행실적 분석

○ 2024년도 병무청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4,118억 7,300만 원으로, 이 중 3,908억 9,200만 원(94.9%)을 집행하였음. 예산집행 과정에서 전용액 등은 7억 3,000만 원, 불용액은 209억 8,100만 원(5.1%)이 발생하였음.

○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용액 등 7억 3,000만 원의 내역은

- 지하 종합상황실 4억 2,000만 원
-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면탈 단속 여비 2억 7,900만 원
- 청년인턴 및 한시임기제 등 고용부담금 600만 원
- 사회복무연수센터 공공요금 2,500만 원임.

○ 불용액 209억 8,100만원의 내역은

- 병역자원 선발 10억 5,500만 원
- 병역자원 충원 1억 7,900만 원
- 보충역 복무지원 1억 300만 원
- 병무행정지원 196억 4,400만 원임.

3. 재무제표 분석

○ 병무청의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중앙관서 전반의 자산·부채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가. 총 괄

(단위: 백만원)

구분	구 분	2024년 (A)	2023년 (B)	증감(A-B)	
				금액	비율
재 정 상태표	자 산	380,298	377,214	3,084	0.8 %
	부 채	176,323	53,694	122,629	228.4 %
	순 자 산	203,975	323,520	△119,545	△37.0 %
재 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29,658	28,650	1,008	3.5 %
	관리운영비	503,721	332,306	171,415	51.6 %
	비배분비용	-	-	-	-
	비배분수익	451	2,189	△1,738	△79.4 %
	재정운영순원가	532,929	358,767	174,162	48.5 %
순자산 변동표	기초순자산	323,520	357,640	△34,120	△9.5 %
	재정운영결과	532,929	358,767	174,162	48.5 %
	재원의조달및이전	413,540	324,907	88,633	27.3 %
	조정항목	△157	△260	103	39.6 %
	기말순자산	203,975	323,520	△119,545	△37.0 %

* 자료 : 병무청

나. 재무제표 분석

○ 2024년 병무청 자산은 3,802억 9,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8,400만원(0.8%)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1,763억 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26억 2,900만원(228.4%)이 증가하였음.

자산의 증가는 무형자산 10억 6,700만 원, 기타비유동자산 6억 9,700만 원, 투자자산 1,700만 원이 감소한 반면, 일반유형자산 31억 4,200만 원, 유동자산 17억 2,100만원이 증가함에 기인함.

부채의 증가는 유동부채 84억 2,700만 원, 장기차입부채가 19억 8,200만원 감소한 반면, 장기충당부채 1,330억 3,700만원이 증가함에 기인함.

○ 2024년 재정운영결과는 5,329억 2,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41억 6,200만원(48.5%) 증가하였음. 이는 프로그램순원가(296억 5,800만원)에서 관리운영비(5,037억 2,100만 원)와 비배분비용(0원)을 더하고, 비배분수익(4억 5,100만 원)을 차감한 값임.

○ 2024년 기말순자산은 2,039억 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95억 4,500만원(△37.0%) 감소하였음. 이는 기초순자산(3,235억 2,000만원)에서 당기 재정운영결과(5,329억 2,900만원)를 차감하고, 당기 재원의 조달 및 이전(4,135억 4,000만원)과 당기 조정항목(△1억 5,700만원)을 가산한 금액임.

1. 세출

가. 총괄 개요

○ 2024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총 4,118억 7,300만원이며, 4개 프로그램 20개 세부사업에 3,908억 9,200만원을 지출하고 209억 8,100만원을 불용함.

병무청의 예산 집행률은 94.9%, 불용률은 5.1%로서 최근 5개년간 불용률에 비하여 소폭 감소함.

○ 병무청 예산은 일반회계 단일회계로 구성되어 있고, 인건비, 기본경비 등 경상비 성격 예산의 비율(32.3%)이 일반 부처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2024회계연도는 최근 5개년에 비해 그 집행률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하기 이전인 2019년 이전 병무청 예산 집행률(97.0%)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률임.

○ 이는 전체 불용률의 83.4%에 가까운 금액(174억 9,200만원)이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사업 단일 항목에서 발생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예산 편성시 가입률, 가입기간 등을 과도하게 추계한 결과라 할 수 있음.

[병무청 최근 10년간 세출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집행율(%)	95.9	95.9	95.7	97.0	95.3	90.2	90.0	88.8	92.3	94.9

○ 병무청이 2024회계연도 예산 집행을 통해 신규로 추진한 사업은 없으며, 대부분의 사업들이 성과계획서상의 성과지표를 무난히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만,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이용 활성화, 국외병역자원 관리 사업 다각화 모색 필요성, 사회복무요원 교육 과정 관리 강화, 대체역 심사위원회 사무국 조직 합리화 필요성 등 일부 사업에는 보완이 필요함.

나. 현역병모집(1232-303):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이용 활성화 필요

(1) 사업 개요

○ 현역병모집 사업(1232-303)은 징집으로 획득하기 어려운 각 군의 주요 군사특기를 개인의 자격·전공·면허 등 적성과 연계하여 선발하고, 군 복무가 개인의 취업·진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입영 전, 복무 중, 전역 후를 아우르는 병역진로설계를 추진하는 사업임.

○ 이를 위하여 병무청은 43억 6,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 중 96.5%인 42억 900만원을 집행하여 3.5%인 1억 5,3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현역병모집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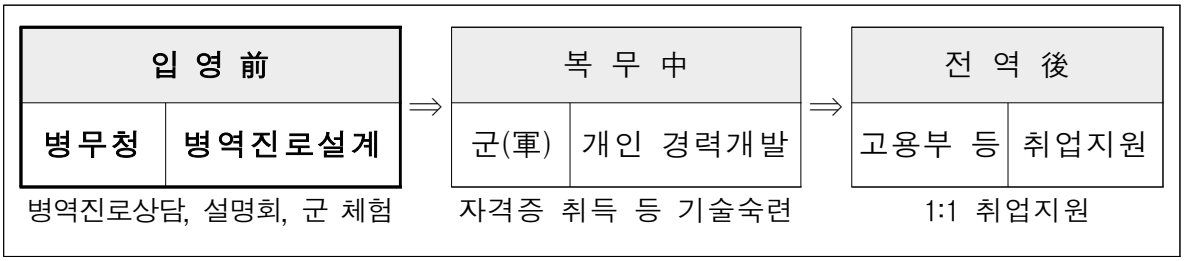
구 분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o 현역병모집	4,362	4,362	-	±60	4,362	4,209 (96.5%)	153 (3.5%)
- 현역병모집	544	544	-	-125	419	413 (98.6%)	6 (1.4%)
- 병역진로설계	3,818	3,818	-	+185 -60	3,943	3,796 (96.3%)	147 (3.7%)

(2)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접근 편의성 제고 대책 마련 필요

전문적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병역진로설계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 센터 방문 여건을 개선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병역진로설계 사업'은 군 복무가 개인의 취업·진로와 연계되어 사회 진출의 디딤돌이 되기 위하여 입영 전 직업선호도 검사[145]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상담관이 병역진로 상담을 진행하여 개인의 전공·경력에 맞는 군 특기를 추천하고, 군 복무시 추천받은 군 특기 분야에서 개인 경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역 후에는 군 경력을 바탕으로 복학·취업 등 사회 진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임.

[병역진로설계 사업 추진 체계도]



* 자료 : 병무청

145) 한국고용정보원이 개발한 직업선호도 검사 프로그램으로 개인이 좋아하는 활동, 관심 있는 직업 및 학문분야 등을 측정하여 흥미유형 6가지(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에 적합한 직업정보를 제공함. 병무청은 2019년도 정책연구용역('진로·적성-군 특기 연결방안 등')을 실시하여, 직업선호도 검사 결과와 자격 등을 고려한 군 특기 연계 방안을 도출해 이를 병역진로설계 상담 시 활용하고 있음.

○ 동 사업은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146] 설치·운영과, 각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관할 내에 있는 대학교, 중·고등학교 등에 방문하여 병역진로상담 등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서비스를 제도 수혜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로 구성됨.

- 2020년 서울지방병무청 내에 수도권 관할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설치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 총 11개소의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운영 중임.

○ 병역진로설계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147] 결과 2024년 기준 서비스 만족도가 90.7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병무청이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병역 의무 이행자 편익 증진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결과로 보임.

- 특히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사업의 경우 과거 외부업체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했을 당시 전국 직업계고를 중심으로 매년 10여회 가량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비하여,

- 2024년부터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사업 방식이 변경된 이후 2024년 총 352회, 2025년 6월 말 기준 총 221회를 실시하여 그 실적이 크게 향상되었음.

---

146) <참고자료1>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인력 및 시설 현황

147) 만족도 조사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받은 사람에게 설문조사 알림톡을 발송해 서비스 이용 만족도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실시함.(2024년 기준 조사대상 32,605명, 응답인원 2,596명)

[센터별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실시 현황]

('25. 6. 30. 기준, 단위: 건)

센터명	2024년	2025년	합계	센터명	2024년	2025년	합계
서울	20	15	35	수원	37	16	53
대구	41	25	66	인천	15	6	21
광주	74	59	133	울산	13	7	20
대전	50	35	85	창원	22	9	31
부산	38	22	60	의정부	10	9	19
춘천	32	18	50	**총 계**	**352**	**221**	**573**

* 자료 : 병무청

○ 하지만,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이용률[148] 현황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그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2024년 기준으로 이용률이 25.01%에 그치고 있어 아직은 센터 이용률이 다소 미흡함.

148) 이용률 산출 산식 : 센터 이용자 ÷ 의무자 수(해당 연도 기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및 직업계고 3학년 남학생 수 합산) × 100

[연도별 병역진로설계지원 센터 시설 이용률 현황]

('24. 12.31. 기준, 단위: 명, %)

센터명	의무자수	2022년		2023년		2024년	
		이용자수	이용률	이용자수	이용률	이용자수	이용률
서울	40,841	8,424	20.6	8,624	21.1	8,352	20.5
대구	25,868	6,852	26.5	7,104	27.5	7,128	27.6
광주	31,622	7,379	23.3	6,522	20.6	10,386	32.8
대전	29,547	6,516	22.1	7,753	26.2	7,072	23.9
부산	15,312	2,122	13.9	7,124	46.5	6,383	41.7
춘천	7,544	994	13.2	4,308	57.1	4,540	60.2
수원	38,908			4,846	12.5	8,344	21.4
인천	28,131			2,453	8.7	6,845	24.3
울산	6,227					1,709	27.4
창원	16,812					2,257	13.4
의정부	18,059					1,750	9.7
합 계	258,871	**32,287**	**21.4**	**48,734**	**22.4**	**64,766**	**25.0**

* 자료 : 병무청

○ 센터 이용률이 미흡한 원인 중에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병역판정검사 등 주요 병무 행정·민원 처리가 이루어지는 각 지방병무청(지청)과 지리적으로 분리·설치되어 있어 시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있다고 봄.

[지방청별 관할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위치 현황]

(단위: ㎞)

지방청명 (소재지)	지방청-센터간 이격거리	지방청명 (소재지)	지방청-센터간 이격거리
서울지방병무청 (서울시 영등포구)	청내 위치	경인지방병병무청 (경기 수원시)	2.4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대구 동구)	1.5	인천병무지청 (인천 미추홀구)	8.9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광주 동구)	0.1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부산 수영구)	53(울산센터)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대전 중구)	1.7	경남지방병무청 (경남 창원시)	1.4
부산울산지방병무청 (부산 수영구)	7.4(부산센터)	경기북부병무지청 (경기 의정부시)	0.6
강원지방병무청 (강원 춘천시)	2.2	평균 이격거리	7.2

* 지방청-센터간 이격거리 기준 : 네이버 지도 기준
* 자료 : 병무청

○ 따라서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한 필수적인 행정 절차인 병역판정검사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11개 지방청별 병역판정검사장과 해당 지방청 소속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간에 물리적, 행정 절차적인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병무 행정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병역 의무자의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현재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와 병행하여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로 '찾아오게 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별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 대학교 등 유관 교육기관 중 병역진로설계 서비스에 대한 소요는 있으나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로 센터 방문이 어려운 교육 기관과 이동 일정 계획을 협의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접근성 강화 대책을 수립하여 센터 방문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찾아오게 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의 경우 물적·인적 인프라가 구축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정책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수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현역병입영(1232-305) : 국외병역자원 관리 방식 개선 필요

(1) 사업 개요

○ 현역병입영 사업(1232-305)은 군에서 필요한 현역병 소요를 적정 충원하여 군의 안정적 병력운영 지원 및 전투력 증강에 기여하고(현역병입영), 국외병역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자발적 병역이행 분위기를 확산(국외자원관리)하는 사업임.

○ 이를 위하여 병무청은 3억 7,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 중 98.8%인 3억 7,300만원을 집행하여 1.2%인 5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현역병입영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아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 현역병입영 사업	378	378	-	-	378	373 (98.8%)	5 (1.2%)
- 현역병입영	242	242	-	-	242	238 (98.1%)	5 (1.9%)
- 국외자원관리	136	136	-	-	136	136 (100.0%)	- (0.0%)

(2) 국외병역자원 관리 사업 다각화 방안 모색 필요

국외병역자원 관리 사업 수행 방식 다각화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국외 병역 자원을 충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방개혁 2.0이 목표로 하는 상비 병력 50만명 규모[149]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20만명 가량의 신규 병력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추산[150]됨.

그러나, 국내 병역 자원은 감소 추세에 있고 이는 추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외 병역 자원의 관리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음.

[20세 병역자원 규모 변동 예상 추이]

(단위 : 만명)



* 자료 : 병무청(2024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149)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5조(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①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하여 2020년까지 50만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

150) 국방중기계획(2023년~2027년)에 따라 현역병은 상비병력 50만명의 60%(30만명) 수준이고, 현역병이 1.5년(18개월) 복무하므로 이를 감안 시 연간 약 20만명 충원 필요(병무청 설명)

○ 2024년 기준 현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병역 자원은 약 11만명 가량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그 중 약 3만명은 학업 수행, 단기 해외여행 등을 사유로 하는 국외 일시체류자이고, 약 8만명은 영주권자, 복수 국적자 등으로 해외 거주 목적 국외 이주자임.

- 2024년 말 기준 국외 병역 자원 규모는 국내 총 병역 의무 미이행자(입영·소집 대상자) 규모 약 65만 7,000명의 약 16.6% 수준으로 적지 않은 병역 자원이 국외에 체류·거주하고 있음.

[연도별 국외 체류·거주 병역 자원 현황]

(단위 : 백명)

구분	계	국외일시체류자			국외이주자				
		소계	24세 이하	25세 이상	소계	24세 이하	25세 이상		
							영주권 등	부모 동거	복수 국적
2020년	1,166	220	186	34	946	209	564	100	73
2021년	1,140	211	179	32	929	209	533	108	80
2022년	1,149	271	227	44	878	188	493	110	87
2023년	1,143	305	265	40	838	170	460	112	96
2024년	1,093	292	254	38	801	154	429	114	104

* 자료 : 병무청

○ 병무청은 2024년 국외 병역 자원 관리를 위하여 현역병입영 세부사업(1232-305) 내에 국외자원관리 내역사업을 두고 예산 1억 3,6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재외공관에 배포하는 병역 이행 정보 제공을 위한 안내 책자 발간, 출국 시 병역

의무자에게 배부하는 안내문 제작 및 SNS 광고를 위한 일반수용비(1억 1,900만원)가 대부분(전체 예산액의 87%)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유사한 사업 내역 및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국외자원관리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금액	116	111	114	107	116	112	136	136
예산 내역	<2021년~2024년 주요 예산 편성 비목 내역> -국외병역자원관리 및 병역이행 정보제공 등 수용비 -국외이주자 중 국내 장기 체류 실태조사 등 국내여비							

* 자료 : 병무청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히 병역 이행 안내에 그치는 소극적인 사업 수행 방식으로는 국외 병역 자원 충원 규모를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이며, 실제로 국외 체류 병역 자원의 병역 의무 이행 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국외 체류·거주 병역 자원 병역 의무 이행 현황]

(2025.6.30. 기준, 단위 : 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국외이주자 중 병역 의무 이행자	155	283	306	315	341	136

* 자료 : 병무청

○ 따라서 병무청은 국방부, 외교부, 재외동포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국외 병역 자원이 병역을 이행할 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재외 국민 사회에 병역 이행 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 등 국외 자원 관리 사업 수행 방식의 다각화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국외 병역 자원을 충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국가별 국외병역자원 분포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독일	브라질	기타
'20년	116,561	49,665	30,398	8,349	3,829	3,254	1,504	1,657	17,905
'21년	114,041	49,582	22,917	8,442	3,417	3,062	1,415	1,641	23,565
'22년	114,924	47,738	29,263	8,230	3,420	2,895	1,736	1,613	20,029
'23년	114,294	45,021	30,087	7,562	3,466	2,840	1,725	1,541	22,052
'24년	109,324	42,158	28,613	7,190	3,304	2,653	1,674	1,500	22,232

* 자료 : 병무청

라. 병력동원소집관리(1232-308) : 전시업무교육 강화 필요

(1) 사업 개요

○ 병력동원소집관리 사업(1232-308)은 군 복무를 마친 사람 등을 예비군으로 편성하고 병력동원(전시근로)소집 대상자로 지정·관리하며 병력동원(전시근로)훈련소집을 통한 동원절차 숙달 및 전시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지자체 전시 병무담당자의 병무행정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전시업무 병무담당 임명 및 전시업무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하는 사업임.

○ 이를 위하여 병무청은 6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 중 96.9%인 6억 5,700만 원을 집행하여 3.1%인 2,100만 원을 불용하였음.

[병력동원소집관리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o 병력동원소집관리	678	678		±8	678	657 (96.9%)	21 (3.1%)
- 병력동원(훈련)소집	456	456		+8	464	462 (99.6%)	2 (0.4%)
- 지자체 병무담당 전시업무교육 운영	222	222		-8	214	195 (91.1%)	19 (8.9%)

* 자료 : 병무청

(2) 집합·대면 방식 전시업무교육 확대 및 합리적 자체평가 반영 기준 마련 필요

집합·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전시업무교육 비중을 확대할 방안과 전시업무교육 실적이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시업무교육 점검 결과의 평가 반영 기준을 사전에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병역법」151)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교부 등 전시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일시에 많은 병력의 동원이 요구되는 동시에 인력부족, 통신마비 등으로 인한 행정력 약화가 예상되어 적기에 전시 상황 대응에 필요로 하는 병력을 동원하는 임무를 병무청 단독으로 수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임.

○ 또한, 「병역법」152)은 지방자치단체 전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

151) 「병역법」 제83조(전시특례) ③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시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현역병입영 통지서, 병력동원소집 통지서 및 전시근로소집 통지서의 교부와 교부 결과의 통보
2. 병역판정검사 독려, 현역병입영,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대상자에 대한 입영의 독려
3. 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기피자에 대한 고발·색출 및 단속의 지원
4. 병력동원에 따른 차량·급식 및 수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병역자원 관리와 관련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전시업무를 전담하는 병무담당 직원을 평시에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 업무 담당자 현황]

1.1.1. ('25. 6. 30. 기준, 단위 : 개, 명)

구 분	계	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 관 수	3,798	17	228	3,553
병무담당자	13,001	102	2,280	10,619

* 자료 : 병무청

○ 지방자치단체 병무담당 직원의 전시업무교육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이후 꾸준히 교육 이수율이 증가하여 2024년 기준 전체 병무담당 직원이 전시업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파악되나,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약 절반에 해당하는 59% 가량의 직원만 집합·대면 방식으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파악되어, 각 지방병무청별로 관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 일정 협의 등을 통하여 집합·대면 방식 교육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52) 「병역법」 제83조(전시특례) ⑥ 지방병무청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임명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하여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평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전시업무교육 집합·대면/비대면 교육 현황]

(단위 : 명)

교육연도	교육 대상자	계	교 육 실 적			
			비대면	%	집합·대면	%
2020년	6,500	6,282	6,282	100	-	-
2021년	12,812	9,409	8,598	91.4	811	8.6
2022년	12,876	9,645	7,239	75.1	2,406	24.9
2023년	12,881	11,015	7,379	67.0	3,636	33.0
2024년	12,998	13,236	5,344	40.4	7,892	59.6

* 자료 : 병무청

○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나라배움터를 통하여 수강할 수 있는 전시업무 비대면(온라인) 강의는 주제별 4차시로 구분해 총 90분 강의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하여,

집합·대면 교육은 병무청 소속 전시업무 담당 직원과 현직 지역방위부대 군 간부(예: 동원계획장교 등)를 강사로 하여 총 180분 동안 강의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오프라인 교육을 매개로 지방자치단체 병무당담 직원 간에 정보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집합·대면 교육이 보다 효과가 있을 것임.

○ 또한, 비대면 교육 콘텐츠를 강화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품질을 집합·대면 교육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어 보임.

○ 한편, 최근 「병역법」 제83조를 개정[153](2025. 7. 8. 시행)하여 ①지방자치단체의 병무담당 직원에 대한 전시업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②지방자치단체장이 전시업무교육 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③병무담당 직원의 교육 이수 여부를 병무청장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였음.

○ 따라서 병무청은 이러한 「병역법」 제83조 개정 취지에 맞게 전시업무교육 실적이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에 합리적,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평가 방법, 항목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 전시업무교육 점검 결과의 평가 반영 기준을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음.

153) 「병역법」 제83조(전시특례) ⑦ 제5항에 따라 임명된 병무담당 직원은 제6항에 따른 전시업무 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속 병무담당 직원이 해당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병무청장은 제7항에 따른 병무담당 직원의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반영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⑨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 전시업무 수행 및 병무담당 직원에게 드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⑩ 제6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방법·절차, 제7항에 따른 교육 이수시간 및 교육 이수에 필요한 조치, 제8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 사회복무요원 교육(1434-319) : 사회복무요원 교육 과정 관리 강화

(1) 사업 개요

○ 사회복무요원 교육(1434-319) 사업은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복무기본교육과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를 유도하고, 사회복무연수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유류비, 여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이를 위하여 병무청은 57억 7,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 중 99.8%인 57억 6,700만 원을 집행하여 0.2%인 900만 원이 불용되었음.

[사회복무요원 교육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아 전용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o 사회복무요원 교육	5,751	5,751	-	+122 -97	5,776	5,767 (99.8%)	9 (0.2%)

(2) 사회복무요원 교육 과정 관리 강화를 위한 전임교수제 도입 검토 필요

병무청은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교육의 일관성 및 통일성 유지와 장기적·체계적인 교육 과정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교육 전임교수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함양 및 기본 소양 교육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7년 5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 실시 근거를 병역법[154]에 마련함.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통일적·지속적인 교육 여건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2016년 충청북도 보은군에 사회복무요원 통합 교육기관인 '사회복무연수센터'[155]를 설치하여 전체 사회복무요원 기본교육 및 각종 복무지도교육[156]을 실시하고 있음.

---

154) 「병역법」 제33조의2(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복무기본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55) <참고자료2> 사회복무연수센터 인력 및 시설 현황

156) 「병역법」 제33조의2(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병무청장이 복무지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2. 제3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사회복무연수센터는 2024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기본교육으로 기본과정 27,320명(전체 인원을 36개 기수로 구분 실시), 디딤과정 418명(전체 인원을 5개 기수로 구분 실시) 총 27,738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157]

- 사회복무연수센터는 복무기본교육 과정과 함께 복무지도교육 과정도 운영 중인데 나래과정 563명(7개 기수로 구분 실시), 새롬과정 425명(7개 기수로 구분 실시), 이음과정 47명 총 1,035명을 교육함.

[사회복무요원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

구 분	과정명	기 간	교 육 대 상
복무기본교육	기본	4박5일	모든 사회복무요원
	디딤	2박3일	사회복무요원 대표, 10개월 이상 성실복무자, 미래설계·진로탐색 교육 희망자
복무지도교육	나래	2박3일	복무규정 위반자, 벌금이상의 형 선고자
	새롬	4박5일	반복 복무규정 위반자, 반복 벌금이상의 형 선고자, 복무지도교육 대상자 중 필요한 자
	이음	2박3일	현역복무부적합자 중 군 복무 적응 곤란자 중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 자료 : 병무청

157) <사회복무연수센터 교육 실적 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38,830명	29,861명	30,733명	28,773명
복무기본교육	37,538명	28,919명	29,775명	27,738명
복무지도교육	1,292명	942명	958명	1,035명

○ 사회복무연수센터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기본교육 및 복무지도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각 교육 과정별로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이수 필요 과목 선정, 기본 교재 개발 등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간 교육 일정 계획[158]을 수립하고 있으며,

연간 교육 일정 계획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약 260여명 내외의 외부 강사 인력풀을 구성하고 각 과목별로 강사의 전공 분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강사를 선정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연도별 교육과정별 투입 강사 인원 및 강사료 지급 현황]

(단위: 명, 천원)

구 분	기본과정		디딤과정		나래과정	
	강사수	강사료	강사수	강사료	강사수	강사료
2022년	252	2,055,630	5	44,600	8	34,400
2023년	253	1,848,740	5	13,600	8	34,580
2024년	240	1,780,450	5	14,300	8	41,560

* 새롬·이음과정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실시, 전문교육기관 소속 강사로 운영
* 자료 : 병무청

○ 사회복무연수센터가 채택하고 있는 외부 강사 인력풀 활용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주로 전문적인 지식 전달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외부 인력 자원을 폭넓게 활용할

158) <참고자료3> 사회복무연수센터 2025년 사회복무요원 교육 일정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장기적인 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과정의 체계적인 관리는 용이하지 않음.

○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 과정의 경우, 임무·규정 이해, 성실 복무 유도, 책임의식 함양 등 일반적·보편적인 교육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사회복무요원은 전국적인 단위로 사회복지, 보건의료, 환경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무 예정임을 고려했을 때,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지식·소양에 대하여 매 교육과정마다 일관성과 통일성이 유지되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함.

[기본교육과정 교육프로그램 구성]

모 듈	모듈1			모듈2						모듈3			모듈4
모듈명	정체성 인식			건강한 복무생활						성실한 복무생활			미래 설계
과목명	임무 이해	규율 규정 이해 와 활용	우리의 자긍심	인권에 대한 이해와 실천	사회재난과 응급처치	개인정보 보호와 실천	4대 폭력 예방	4대 중독 예방	생명존중 / 마음검사	협력하는 복무생활	복무생활 의미발견	슬기로운 복무생활	취·창업 / 금융

* 자료 : 병무청

○ 현재 사회복무요원 교육 과정을 외부 강사 인력풀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방식만으로는 매년 대규모로 실시되는 사회복무요원 교육의

일관성 및 통일성 유지와 교육 과정의 장기적·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전임교수 제도를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와 교육 대상에서 차이는 있으나,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 공공 교육기관을 살펴보면 교육 프로그램을 외부 강사 인력풀 활용 방식과 전임교수 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음.

[타 교육기관 전임강사 운영 현황]

(단위: 명)

구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우정인재 개발원	국세공무원 교육원	관세인재 개발원	감사 교육원
전임강사	6	12	23	8	3
연간 교육인원	136,865	9,000	8,000	4,300	9,611

* 자료 : 병무청

○ 따라서 병무청은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교육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유지하고, 장기적·체계적인 교육 과정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교육 전임교수 제도를 도입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바. 대체역 편입 및 소집(1434-323) : 대체역 심사위 사무국 조직 재검토 필요

(1) 사업 개요

○ 대체역 편입 및 소집(1434-323) 사업은 병역의무자 중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대체역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실조사와 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대체역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임.

○ 이를 위하여 병무청은 9억 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 중 93.6%인 8억 5,100만 원을 집행하여 6.4%인 5,800만 원을 불용하였음.

[대체역 편입 및 소집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o 대체역 편입 및 소집	934	934	-	△25	909	851 (93.6%)	58 (6.4%)

* 자료 : 병무청

(2) 대체역심사위원회 사무국 조직 개편 방안 검토 필요

대체역 편입 신청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대체역심사위원회 행정 업무 소요가 줄어든 점을 고려하여 사무국 조직 구성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조직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체역 편입 및 소집 사업(1434-323)은 병역의무자 중 현역, 보충역,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대체역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실조사와 대체역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를 주 내용으로 하는 사업임.

○ 헌법재판소가 (舊)「병역법」제5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159](2018.6.28.)을 함에 따라 대체복무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2020년 1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0. 1. 1. 시행)됨.

159)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만을 규정한 「병역법」제5조제1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며 2019. 12. 31.을 시한으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판시함.(2011헌바379, 2018.6.28.)

대체역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체역 편입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2020.6.30.)한 이후로 2025년 6월말 기준으로 878명이 대체역으로 복무를 완료하였고 1,688명이 소집되어 복무 중인 것으로 파악됨.[160]

[법무부 교정시설 별 대체역 복무 인원 현황]

('25. 6. 30. 기준, 단위: 명)

계	서울	인천	서울남부구	화성직훈	의정부	여주	서울남부교	춘천	원주	영월	경북제1	부산	포항	진주	대구	안동
1,688	94	60	75	72	42	69	66	42	47	52	41	42	45	47	42	44
	경북제2	김천소년	울산	통영	대전	청주	천안	공주	충주	광주	전주	순천	목포	군산	제주	교육센터
	35	40	35	34	92	50	80	43	40	72	40	66	51	58	28	44

* 자료 : 병무청

○ 대체역 편입 및 소집 절차를 살펴보면 대체역으로 편입을 원하는 사람이 대체역심사위원회에 편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체역심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사실조사관이 신청인·참고인 조사 등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사전심사위원회에 보고함.

사전심사위원회는 신청인 진술 청취 등 사전심사[161]를 실시해 그 결과를 전원위원회에 보고하고 사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원위원회

160) <대체역 소집해제자(복무만료) 현황>

('25. 6. 30. 기준, 단위: 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인 원(명)	-	1	2	105	531	239	878

161) 사전회의 : 5~6명의 대체역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며, 사무국 소속 조사관의 사실 조사를 토대로 신청인에 대한 대면 질의 등 실질적인 심사 진행(의결권 없음)

전체회의[162]에서 최종 심사 의결을 하여 대체역 편입 신청인에게 편입 여부에 대한 결정서를 송부함.

- 통상 편입 신청 접수부터 결정서 송부까지 3개월이 소요되며 대체역으로 편입된 인원은 소집 후 법무부 소속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배치되어 합숙근무 형태로 교정시설 관리, 교정·교화 업무 보조 등을 수행하며 복무기간은 36개월임.

[대체역 편입 심사 절차 개요]



* 자료 : 병무청

○ 대체역심사위원회는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2020년 6월에 설치된 병무청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현재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163]되어 있고, 대체역

162) 전체회의 : 대체역 심사위원 전원(13명)으로 구성되며, 사전회의 결과를 토대로 심의 후 대체역 편입 최종 결정(의결권 있음)

163)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의2(구성) ①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행정 지원 조직인 사무국[164](정원 : 31명, 현원 : 30명)을 두고 있음.

○ 대체역심사위원회는 최초 2020년 6월 설치될 당시 연간 약 1,000건의 대체역 편입 심사를 예상하고 사전심사위원회를 4개조로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29인의 위원으로 구성[165]하였으나, 실제 위원회 운영 상황(사전심사 위원회를 2개조로 운영)과 지속적인 대체역 편입 신청 감소 등을 감안하여,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3.6.30. 시행)을 통하여 대체역심사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으로 축소한 바 있음.

[대체역 편입 신청 접수 및 대체역심사 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2025. 6. 30. 기준, 단위: 건)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종교적 신념		1,951	565	445	361	333	123	3,778
비종교적 신념		11	9	8	7	5	3	43
편입 신청 건수		1,962	574	453	368	338	126	3,821
사전 회의	개최건수	30	144	112	72	58	29	445
	심사건수	180	1,089	574	457	344	175	2,819
전원 회의	개최건수	6	33	25	23	22	12	121
	심사건수	731	1,297	656	468	348	161	3,661

* 자료 : 병무청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164)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의4(사무국) ①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직한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165) 국회 국방위원회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률안 검토보고서(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 제2118206호) 8page 참조

○ 그런데 대체역심사위원회 위원 수는 그 규모를 축소하였으나 위원회 지원 기관인 대체역심사위원회 사무국은 2020년 사무국 설치 이후 약간의 조직 구성의 변경만 있었을 뿐, 전체 정원 규모는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대체역 심사위원회 사무국 조직 변경 현황]

구 분	조직 구성	정원	현원
2020.6.30. (위원회 출범 시)	1국 3과 (심사총괄과, 조사1과, 조사2과)	33명	30명
2022. 12.31.	1국 2과 (심사기획과, 심사운영과)	31명	31명
2025.6.30. (현 재)	1국 2과 (심사기획과, 심사운영과)	31명	30명

* 자료 : 병무청

○ 대체역심사위원회 사무국의 주요 임무가 대체역심사위원회의 대체역 편입 심사·의결에 관한 사무를 보좌하기 위한 사실조사, 행정지원 업무임을 고려할 때, 대체역 편입 신청 감소로 위원회 회의 실적이 매년 줄어들고 이에 부수한 사무국의 대체역 편입심사 요건 검토, 사실조사 업무 또한 매년 감소하고 있음.

[대체역 사실조사관 조사업무 실적 현황]

(2025. 6. 30. 기준, 단위: 건)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실조사 건수	180	1,089	574	457	344	175
조사관 수	18	18	18	16	16	16
1인당 사실조사 건수	10.0	60.5	31.9	28.6	21.5	10.9

* 자료 : 병무청

○ 따라서 병무청은 사무국 조직 구성 및 규모를 감소하는 행정 소요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사무국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2025년 7월 현재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166]에 따라 대체역심사위원회 사무국에 대하여 정원 규모의 적정성 등 조직 평가 업무를 진행 중임.

166)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신설 조직 및 정원에 대한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하부조직을 신설하거나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행정수요와 업무량 등이 적정한지 여부
2. 소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할지 여부
3. 소관 업무의 성과 또는 실적
4. 그 밖에 신설되는 하부조직 또는 증원되는 정원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중 평가가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사. 병무행정운영(7134-317) :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지하상황실 구축 사업 집행

(1) 사업 개요

○ 병무행정운영 사업(7134-317)은 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 병역의무 부과 통지서 송달 등과 같은 병무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소요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이를 위하여 병무청은 88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 중 93.6%인 86억 4,800만원을 집행하여 6.4%인 5억 9,200만 원을 불용하였음.

[병무행정운영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o 병무행정운영	8,820	-	+440 -20	9,240	8,648 (93.6%)	592 (6.4%)

* 자료 : 병무청

(2) 예산 미반영 지하상황실 구축 사업 집행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병무청은 지하상황실 구축을 위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벗어난 전용을 통해 사업을 집행한 바, 향후 이러한 사업 추진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병무청은 정부 방침에 따라 2024회계연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대전 정부종합청사(지하 1층) 내 지하상황실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지하상황실 구축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예산 전용 승인을 요청(2024.7.23.)하였으며 기획재정부는 병무청의 승인 요청을 받아들여 예산 전용 승인을 통보(2024.7.24.)함.[167)]

- 병무의무자지원 세부사업(7135-314)에서 기타보전금(310-04) 4억 2,000만원을 전용 재원으로 하여, 병무행정운영 세부사업(7134-317) 중 자산취득비(430-01)에 2억 8,000만원, 공사비(420-03)에 1억 4,000만원을 각각 전용함.

[병무청 지하상황실 구축을 위한 예산 전용 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전용재원)	예산액(감액)	예산과목(부족재원)	예산액(증액)
병역의무자지원-기타보전금	420,161	계	420,161
		병무행정운영-공사비	140,411
		병무행정운영-자산취득비	279,750

167) 지하상황실 구축 관련 양 기관 간 예산 전용 실무 협의는 2024년 6월경부터 시작함.

○ 병무청 지하상황실 구축 사업의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국가정보원이 중앙행정기관 비상대피시설(상황실, 대피시설) 점검 결과를 대통령실에 보고(2023.8.14.)하였고, 뒤이어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비상대피시설 점검 결과 후속 조치를 대통령실에 보고(2024.1.9.)함.

이후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비상대피시설 구축을 위한 추진 사항을 담은 공문(제목: '중앙행정기관 비상대피시설 구축 관련 추진사항 통보', 비상안전기획관-140, 2024.1.12.)을 발송하여 비상대피시설 구축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병무청에 예산 전용에 대한 협조 조치를 재정 당국에 취하도록 요청함.

○ 병무청은 기획재정부 승인에 따른 예산 전용 후 2024년 10월 초 지하상황실 구축 사업을 시작하여 약 2개월 간의 시설공사, 실내공사 후 2024년 11월 말 지하상황실 구축을 완료함.

[병무청 지하상황실 공사일정 및 공사비용]

구 분	공사일정	집행내역
계	-	127,207천원
실 내 공 사	2024.10. 7.~11. 4.	48,866천원
전 기 공 사	2024.10. 7.~11. 4.	32,510천원
통 신 공 사	2024.10. 7.~11. 4.	19,860천원
소 방 공 사	2024.10. 7.~11. 4.	8,250천원
국가지도통신 이전공사	2024.11.4~11.30.	17,721천원

* 자료 : 병무청

○ 병무청의 지하상황실 구축 사업은 국회가 2024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시 심의·확정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의 편성 목적 및 범위를 초과한 사업 집행으로 판단됨.

○ 병무청은 지하상황실 구축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46조제1항[168]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국가재정법」 제46조제1항은 기획재정부 승인을 얻어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에도 사업간 유사성, 재원 사용의 시급성, 기관운영 필수경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하상황실 구축 사업은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소지가 있음.

- 주로 사회복무요원의 사회복귀준비금 지급에 소요되는 예산을 담고 있는 병역의무자지원 사업과 병무행정운영 사업간 사업의 유사성은 거의 없으며,

- 재원 사용의 시급성 또한 지하상황실 구축 기간이 단시간 소요(약 2개월)된 것으로 보아 재정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 예산안 편성 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거쳐 2025년 연초에 사업을 수행하여도 무방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168)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따라서 병무청은 지하상황실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맞지 않게 사업을 집행한 바, 향후 이러한 사업 추진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아. 병역의무자지원(7135-314): 원격강좌 지원 사업 확대 필요 등

(1) 사업 개요

○ 병역의무자 지원 사업(7135-314)은 병역의무자가 징·소집 등 병역의무 이행 시 소요되는 경비(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지원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및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등을 지원하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후 만기해지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적금 입금액의 연도별 매칭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임.

○ 이를 위하여 병무청은 1,933억 1,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 중 90.9%인 1,756억 7,500만 원을 집행하여 9.1%인 176억 4,200만 원을 불용하였음.

[병역의무자지원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아 전용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o 병역의무자 지원	193,737	193,737	-	△420	193,317	175,675 (90.9%)	17,642 (9.1%)
- 원격강좌 수강료	261	261	-	213	474	474 (100%)	-
- 원격강좌 수수료	29	29	-	11	40	40 (100%)	-
- 의무자여비 등	193,447	193,447	-	△644	192,803	175,161 (90.8%)	17,642 (9.2%)

(2)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사업 지원 확대 및 적정 예산 편성 필요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하여 보다 많은 사회복무요원이 사업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연례적으로 사업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병역법」 제73조[169]에 따르면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려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원격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병무청은 2020년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대학 원격강좌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원격강좌 수강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이듬해 2021년부터 수수료 지원에 더하여 원격강좌 수강료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170]

---

169) 「병역법」 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② 제1항의 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학력인정을 받은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려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입영부대 또는 복무기관의 장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한 복무로 휴학 중인 사람이 제2항에 따라 등록이 허용된 경우 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원격수업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수업의 수강에 필요한 통신장비 및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70) 원격 강좌 수수료(건당 11,000원)는 2020년부터 100% 지원하고 있으며, 원격 강좌 수강료는 '21년부터 수강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기 시작하여 2022년부터는 80% 지원으로 확대하였음.

- 원격강좌 수강 신청은 군인공제회에서 운영 중인 '나라사랑포털'을 통해 가능하고, 지원 범위는 학기당 6학점 이내(연 최대 12학점 이내)이며, 원격강좌 수강 신청이 가능한 대학교는 2020년 160개교에서 2024년에는 184개교로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사회복무요원 원격강좌 수강료·수수료 지원 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1,585명 지원에서 2024년 2,650명을 지원하여 4년간 지원자 수 기준으로 총 1,065명이 증가(2020년 기준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사회복무요원 원격강좌 수강료·수수료 지원 사업 실적 현황]

(매년 12. 31.기준 / 단위: 명, 건, %)

구 분	복무인원	지원실적		
		지원인원(명)	지원비율(%)	지원건수(건)
2020년	56,306	1,585	2.8	1,953
2021년	57,769	1,941	3.4	2,495
2022년	53,214	2,070	3.9	2,710
2023년	49,130	2,188	4.5	2,904
2024년	45,213	2,650	5.9	3,668

* 자료 : 병무청

○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2025년 5월말 기준으로 전체 사회복무요원 45,349명 중 대학생은 35,528명[171]으로 약 78.3%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사업 대상인데 비하여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실적은 전체 사회복무요원의

171) 2025년 5월말 기준 사회복무요원 복무 인원 학력별 현황(출처 : 병무청 자체 통계)

5.9% 수준(대학생 대비 7.4%)에 그치고 있음.

○ 이 실적으로는 병역 의무 이행 중 학업 공백을 최소화하고 자기 개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많은 사회복무요원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병무청은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국방부도 현역으로 군 복무중인 병사를 대상으로 동일한 원격 강좌 수강료·수수료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2024년 기준 총 복무 인원 약 299,000명 중 24,464명을 지원(지원율 8.2%)하였는 바[172], 동일한 수업료 지원 사업 수행 결과 병사에 대한 지원율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원율 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병사 원격 강좌 수강료·수수료 지원 사업 실적 현황]

(매년 12. 31.기준 / 단위: 명, 건, %)

구 분	복무인원	지원실적		
		지원인원(명)	지원비율(%)	지원건수(건)
2020년	35.6만명	19,160	5.4	21,595
2021년	32.9만명	17,827	5.4	19,452
2022년	29.9만명	17,535	5.9	21,191
2023년	29.9만명	19,792	6.6	24,478
2024년	29.9만명	24,464	8.2	31,035

* 자료 : 국방부

172) 2024년 현역병으로 입영한 인원 185,866명 중 155,102명이 대학생으로 현역병의 대학생 비율은 83.% 내외로 추정됨.

○ 한편, 병무청은 2024회계연도에 원격 강좌 수강료·수수료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강료 2억 6,100만원, 수수료 2,9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수강료 4억 7,435만원(예산 대비 181.7% 집행), 수수료 4,034만원(예산 대비 139.1% 집행)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됨.

이는 편성된 예산 범위를 크게 초과하여 집행한 것으로, 예산 초과 집행은 2024회계연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한 이후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 병무청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 등에 따라 별도의 예산 변경 절차 없이 동일한 내역사업 중 재원의 여유가 있는 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사업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였다고 설명함.

[원격 강좌 수강료·수수료 지원 사업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수 강 료			수 수 료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021년	73	165	225.9%	13	27	211.1%
2022년	261	318	121.8%	29	30	102.8%
2023년	261	363	139.1%	29	32	110.2%
2024년	261	474	181.7%	29	40	139.1%

○ 그러나, 연례적으로 국회에서 정한 예산 범위를 크게 초과하여 집행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 확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관행으로 판단되므로,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방위사업청 소관 (수석전문위원 송수환)

(생 략)

Ⅴ. 대체토론 요지

【국방부 소관】

○ 국방부는 군 인건비의 전반적인 증액 방안을 검토해 볼 것

○ 국방부 한시 편제 인력 운용 관련, 행정안전부와 직제 협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 없 음

【병무청 소관】

○ 병무청 지하상황실 사업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할 것

【방위사업청 소관】

○ KDDX 사업 관련,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함. 그동안 관행은 수의계약 방식이었지만, 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할 것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소위원장 강대식)

□ 국방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시정 9건, 주의 17건, 제도개선 20건 등 총 4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전제로 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함.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없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함.

□ 병무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주의 2건, 제도개선 8건 등 총 10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전제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함.

□ 방위사업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시정 1건, 주의 17건, 제도개선 8건 등 총 26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전제로 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함.

Ⅷ. 심사결과

1. 국방부 소관

○ 일반회계 세입세출 : 원안의결

○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세입세출 : 원안의결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세입세출 : 원안의결

○ 군인연금기금 수입지출 : 원안의결

○ 군인복지기금 수입지출 : 원안의결

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세입세출 : 원안의결

3. 병무청 소관

○ 일반회계 세입세출 : 원안의결

4. 방위사업청 소관

○ 일반회계 세입세출 : 원안의결

Ⅷ. 부대의견

1. 국방부 소관

○ 국방부는 소형자폭드론 구매 관련 과도한 예산 이·전용에 대해 자체 정책감사를 실시한다.

2.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 없 음

3. 병무청 소관

○ 없 음

4. 방위사업청 소관

○ 없 음

Ⅸ.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Ⅹ. 시정요구사항

1.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결과 : 총 82건

(단위: 건)

부 처 명	변 상	징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중 복)	합 계
국방부	-	-	9	17	20	(2)	46
병무청	-	-	-	2	8	-	10
방위사업청	-	-	1	17	8	(7)	26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	-	-	-	-	-	-
합계	-	-	10	36	36	(9)	82

2. 시정요구사항(결산)

가. 국방부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미수납 채권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시정	국방부
		지적사항	○ 미수납액이 2020년 678억원에서 2023년 852억원, 2024년 1,009억원으로 급증하였음 ○ 2024년도 미수납액 1,009억 3,000만원이 전년 852억 300만원 대비 157억 2,700만원 증가한 이유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방부에서 승소한 결과 140억대 채권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기타 연체료 등이 패소자의 재력부족 등 사유로 미수납되었기 때문임.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2025년도말까지 국방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채권관리 전산망의 연계를 추진하고, 채권추심 관련기관과 지속 협조하여 미수납액 채권의 수납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td><td rowspan="3">불용 군수품 매각 관련 제도 정비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기타잡수입(69-691)</td><td rowspan="3">시정 및
제도개선</td><td rowspan="3">국방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국방부의 고철 매각 중 사회복지법인 굿피플과의 수의계약 단가가 현저히 낮고, 고철 매각 요건에는 사업장 보유 여부 및 직접 처리 가능 여부에 대한 검증 절차가 부재함
[2024년 국방부 고철 판매 품목별 단가 비교] (단위 : 원/kg)
<table>
<tr><th>품목</th><th>평균단가</th><th>굿피플 매각단가</th></tr>
<tr><td>동</td><td>12,515</td><td>3,227</td></tr>
<tr><td>알루미늄</td><td>1,799</td><td>726</td></tr>
<tr><td>스테인리스</td><td>1,689</td><td>703</td></tr>
<tr><td>경철</td><td>217</td><td>77</td></tr>
<tr><td>연철</td><td>188</td><td>38</td></tr>
<tr><td>주철</td><td>140</td><td>72</td></tr>
</table>
- 국방부의 고철 매각 체계는 수의계약 요건을 갖춘 단체라는 이유만으로 고철 적재 사업장이 없고 수집·운반은 제3의 업체가 수행하는 단체에 헐값 매각을 허용하는 제도적 허점이 있음
○ 불용군수품 수의계약 제도는 수익성이 아니라 공익성에 기반한 제도이므로, 수의계약 단가만을 근거로 사회적 약자 단체의 참여 자체를 위축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일반 고철 수거와 달리 직접 현장 수거 방식을 수행하는 경우 단가가 낮을 수 있음</td></tr>
<tr><td>시정요구
사항</td><td>○ 국방부는 고철 매각 지침에 수의계약 당사자의 직접 처리 의무를 명시하고, 향후 수의계약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체결된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단가 산정 및 계약 이행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할 것(시정)
○ 국방부는 수의계약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을 존중하여 현장 실태를 반영한 균형 잡힌 고철 매각 제도 운영에 힘쓸 것(제도개선)</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직제에 반영 없이 상설 운영하고 있는 T/F장 제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교인건비(1101-151)	시정	국방부
		지적사항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르면 국방부의 조직 및 정원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하여 운영되어야 하나, 국방부 국방정책실은 2007년부터 해당 3직위를 한시기구인 'TF장' 직위로 사실상 상설 운영함 - 국회, 감사원 등에서 이미 여러 차례 관련 지적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원 소속 부대에서는 해당 TF장 인사를 '정책연수'로 처리하여 야전부대의 인력 공백 및 작전 수행에 차질을 줄 수 있음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장기간 한시조직을 운영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직제에 정식으로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 인력 운영의 효율성및 합법성을 확보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장교·부사관 명예퇴직수당의 연례적 조정 집행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교인건비(1101-151)·부사관인건비(1101-152)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장교·부사관 명예퇴직수당은 반복적으로 과소 편성되어 인건비 기본급여 내역사업으로부터 반복하여 조정하여 충당·집행하고 있음 - 2024년의 경우 482억 8,000만원을 조정을 통해 집행하였으며, 부사관의 경우 가용 재원이 부족해 명예전역 선발률이 70.7%에 그침(지원: 1,720명, 선발: 1,216명) - 국회의 2022회계년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수당 예산이 반복적으로 과소 편성되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음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명예퇴직 지원 인원의 예측 정확도를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고, 장교·부사관 명예퇴직수당이 매년 대규모로 조정 집행되지 않게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도록 주의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5</td><td rowspan="3">예비전력관리군무원 시간외근무 실태 점검</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군무원인건비(1102-15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방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예비전력관리군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의 예산은 매년 지속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그 부족 규모는 최근 들어 더욱 확대되고 있음

(단위: 명, 백만원, %)
<table><tr><th>연도</th><th>정원</th><th>현원</th><th>시간외근무수당
예산 편성액(A)</th><th>시간외근무수당
예산 집행액(B)</th><th>집행률
(B/A)</th><th>조정액</th></tr><tr><td>2021</td><td>4,101</td><td>3,992</td><td>17,122</td><td>20,212</td><td>118.0%</td><td>3,099</td></tr><tr><td>2022</td><td>4,064</td><td>3,930</td><td>17,223</td><td>28,412</td><td>165.0%</td><td>11,284</td></tr><tr><td>2023</td><td>3,966</td><td>3,927</td><td>19,185</td><td>32,564</td><td>169.7%</td><td>14,125</td></tr><tr><td>2024</td><td>3,917</td><td>3,863</td><td>19,204</td><td>35,413</td><td>184.4%</td><td>16,211</td></tr></table>-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인당 월 평균 시간외근무는 각각 30.72시간, 43.24시간, 48.97시간, 53.23시간 수준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국방부에 의하면 최근 예비전력관리군무원의 업무량이 과도하게 증가할 만한 사유는 없다는 입장이므로,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급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td></tr>
<tr><td>시정요구사항</td><td>○ 국방부는 특별한 사정 없이 지속적으로 시간외근무시간이 증가하는 예비전력관리군무원의 시간외근무 실태를 점검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국외직무파견 신설 시 국회 예산심의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무원인건비(1103-101)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국방부는 국외직무파견 2직위를 신설하기 위해 2024년 다른 세부사업들의 예산 등을 활용하여 총 3억 6,120만원을 집행하였고, 과장급 공무원 2명을 각각 주)NATO 대표부와 38North(미국 워싱턴DC 소재 연구소)로의 신규 국외직무파견을 실시하였음 ○ 국방부는 2023년도부터 국외직무파견 2직위 신설을 추진하였으나 이를 정부의 예산편성안에 반영하지도 않았고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가재정법」 제45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업들의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부적절함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지 않은 신규 국외직무파견 추진으로 인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7</td><td rowspan="3">야전조리병
교육재료비
연례적 과다편성
지양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기본급식(1231-30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방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연도별 야전조리병 교육재료비 예결산 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 이어 2024년도에도 30%대의 집행률을 유지하면서 저조하였는데, 2년 연속 남은 잔액은 기본급식비 부족분에 모두 활용되었음.
[연도별 야전조리병 교육재료비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table>
<tr><th>구분</th><th>예산액</th><th>집행액</th><th>집행률</th><th>잔액 활용</th></tr>
<tr><td>2023</td><td>378</td><td>143</td><td>37.8</td><td>기본급식비 부족분 활용(235)</td></tr>
<tr><td>2024</td><td>378</td><td>132</td><td>34.9</td><td>기본급식비 부족분 활용(246)</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
사항</td><td>○ 국방부는 야전조리병 교육 편성인원을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8	**급식재료 납품시 납품업체에 대한 철저한 확인절차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본급식(1231-301)	주의 및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2024년 국군체육부대는 구매계약을 통해 납품업체로부터 축산물을 납품받았으나, 실제 납품은 계약한 납품업체가 아닌 불법 하도급을 통한 타 업체가 납품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있었음.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불법 하도급을 통한 저품질 식재료 납품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주의) ○ 국방부는 식재료 납품 검수 시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검증 확인 절차가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영양사 배치, 급식방침 반영 등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제도개선)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9	**전투식량 유통기한 관리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특수식량(1231-303)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2024년 12월 경 유통기한이 지난 전투식량이 상황 발생에 따른 군 이동시에 지참되는 일이 발생 ○ 전투식량은 전시 또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예산을 통해 일정 규모의 비축을 위해 확보되어야 하는 급식품으로서 유통기한이 존재하여 위생상 유통기한이 도래되기 전에 소모되어야 함. ○ 예산으로 구입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되지 않기 위해 폐기되기 전에 소모되어야 함에도 유통기한 도래된 전투식량이 창고에 보관되고 또한 군병력 이동시 지참되었다는 것은 급식방침 위배일 뿐 아니라 예산낭비 방지 측면에서도 부적절한 관리임.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전투식량이 유통기한 도래 전에 순환급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 폐기되거나 훈련시 등에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0	**특전식량 국방규격 개정시 조달가능성 고려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특수식량(1231-303)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2024년 특전식량 조달사업은 변경된 국방규격을 준수하는 생산업체의 응찰이 없어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함. ○ 이로 인해 2024년말 특전식량의 비축률은 99.3%에서 26.3%로 저하 ○ 국방부는 2018년부터 신형 전투식량 체계개발을 추진하여 2024년 조달을 추진할 때까지 국방규격에 맞출 수 있는 생산업체의 생산능력 확인절차 또는 시장·업체 조사 등을 내실있게 거치지 않아 결국 정상 조달 실패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향후 연구개발된 품목이 적시에 조달될 수 있게 시장 및 업체의 능력 확인 등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1	**민간조리원 처우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민간조리원 운영(1231-305)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2024년도 동 사업의 집행결과를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87.3%로 12.7%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 매년 집행률이 80% 중후반대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민간조리원의 결원 및 중도퇴사자가 많이 발생하는 인력운용률에 기인하고 있음. ○ 국방부에 따르면 민간조리원의 낮은 인력운용률과 상당 규모의 중도퇴사자 발생은 주로 격오지 근무 및 보수수준 등에 기인하고 있어,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특수지근무수당 및 위험근무수당 등 처우개선이 동반될 필요가 있어 동 수당들이 예산편성단계에서 반영 필요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집행가능한 수준의 예산편성 노력과 더불어 특수지근무수당 및 위험근무수당 편성 등 민간조리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인력운용률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일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2</td><td rowspan="3">기본피복 사업의
미집행액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기본피복(1241-301)</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방부</td></tr>
<tr><td>지적사항</td><td>○ 최근 기본피복 사업의 예결산 현황을 보면, 본예산에서 이전용 등(감) 및 불용액 등 편성예산을 본래의 사업목적에 전혀 사용되지 못하는 미집행액 규모가 2024년에는 352억원 수준임

[연도별 기본피복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table>
<tr><th>구분</th><th>예산액(A)</th><th>이전용
등(B)</th><th>집행액</th><th>불용액(C)</th><th>미집행액
(B+C)</th><th>미집행 비율
(B+C/A)</th></tr>
<tr><td>2021</td><td>401,446</td><td>△7,128</td><td>379,689</td><td>3,311</td><td>10,439</td><td>2.6</td></tr>
<tr><td>2022</td><td>385,824</td><td>△12,966</td><td>352,381</td><td>10,480</td><td>23,446</td><td>6.1</td></tr>
<tr><td>2023</td><td>374,810</td><td>△35,702</td><td>321,990</td><td>25,115</td><td>60,817</td><td>16.2</td></tr>
<tr><td>2024</td><td>374,184</td><td>△18,525</td><td>345,877</td><td>16,687</td><td>35,212</td><td>9.4</td></tr>
</table>
○ 또한 미집행액 중 연도별 이전용 등 현황을 보면, 공공요금 부족(2023년), 배상금 부족(2024년) 등 예측하지 못한 예산소요 발생 시 기본피복 사업에서 전용하여 우선 충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예측하지 못한 소요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기본피복 예산의 일정규모를 과다계상하는 측면이 있어 보임.</td></tr>
<tr><td>시정요구
사항</td><td>○ 국방부는 기본피복 사업의 예산규모가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미집행 예산액 규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 및 집행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의무시설개선(2231-305)	시정	국방부
		지적사항	○ 2024년 의무시설개선사업 중 2024년 준공예정이었으나 집행률 75%이하를 기록하여 연기된 사업들은 6건으로, 해병대 6여단 의무대 신축, 해군사관학교 의무대 신축, 육군 22사단 의무대 신축, 해군 해양의료원 격리병동 리모델링, 의무사 대전병원 격리병동 리모델링임 ○ 공통 집행 부진사유로는 설계 변경, 계약 지연에 따른 공기 부족, 건축승인 지연 및 정산 지연 등으로 계획 및 집행상의 관리 미흡임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의무시설개선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단계부터 지자체 승인 및 설계 반영 필요사항을 충분히 검토함으로써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며, 계약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의 종합적인 집행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긴급공고 지양 등을 통한 경쟁계약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건복지지원(2242-303)	시정	국방부
		지적사항	○ 국방부는 2024년의 총 4건의 연구 중 1건만 국가계약법상 경쟁입찰을 거쳐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연구수행업체를 선정하였고, 나머지 3건에 대하여는 재공고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연구수행업체를 선정하였음 ○ 국방부가 일반연구의 75%인 3건을 모두 재공고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경쟁계약 원칙과 부합하지 않은 계약관리라고 볼 수 있음. ○ 수의계약된 3건 중 2건은 일반공고가 아닌 긴급공고에 의하여 각 일반연구 입찰에서 1개 업체만 입찰하여 해당 업체가 선정되었으나, 긴급공고로 인한 입찰 기회의 제한은 연구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 확보 등이 어려울 수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일반연구 계약 추진에 있어서 향후 긴급공고 방식이 아닌 일반공고 방식으로 조달공고를 하여 충분한 입찰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경쟁계약을 확대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미편성된 신규사업 추진 지양 등 사전관리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정비장비(2331-309)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2024년도 정비장비 중 예산안 편성시와 집행시 간 장비를 비교해 보면, GP부분복원 경계력보강 중거리 카메라, 전기차 급속 충전기, 정비용 리프트, 유도가열기, 증류수생산기 등에 대해서는 예산안 편성시에는 없던 사업을 신규로 추진 ○ 화력정비 장비(14건), 궤도정비 장비(2건), 기동(차륜)정비 장비(8건), 항공정비 장비(5건), 함정정비 장비(1건), 일반정비 장비(3건) 등 33건에 대해서 업체 무응찰 및 군요구사항 미충족, 기보유장비 수명연장 및 시설공사 순연 등으로 장비획득을 추진하지 못하였음.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향후 미편성된 신규사업의 추진을 지양하고 면밀한 시장조사 등 사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장비가 적시에 획득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본래의 목적으로의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16	**국외정비의 국내정비로 전환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정밀측정장비(유지)(2333-312)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연도별 정밀측정장비의 국내 및 해외 정비의 비율을 보면, 해외정비 비율이 거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정밀측정장비 유지를 위한 정비에 대해서 국외정비를 국내정비로의 전환한 현황을 보면, 그 건수가 전무한 상황임 ○ 자주국방 실현, 전시 대응력 향상, 비용 절감, 관련 산업 육성 및 기술 자립 등 전략적·경제적·기술적 측면에서 국내정비로 전환 필요성도 또한 적지 않다 할 것이며, 또한 장비별 특성 및 전환 용이성 측면에서 다른 점이 있겠지만 항공장비에 대해서는 매년 상당한 규모로 국내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밀측정장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국외정비의 국내정비로의 전환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임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정밀측정장비에 대한 정비 체계를 국외 의존에서 국내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주의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안)</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7</td><td rowspan="3">TMO 수송지원 위법·불법 사용 근절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수송활동(2336-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방부</td></tr>
<tr><td>지적사항</td><td>○ TMO 위법·불법 사용사례는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연간 120~140여건이었던 TMO 위법·불법 사용사례가 2024년도에는 이전과 비교하여 250건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연도별 TMO 지원관련 위법·불법 현황]

(단위: 건)
<table>
<tr><th>구 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h>2024년</th></tr>
<tr><td>위법·불법 건수</td><td>142</td><td>124</td><td>138</td><td>250</td></tr>
</table>
</td></tr>
<tr><td>시정요구
사항</td><td>○ 국방부는 장병들에게 TMO의 목적과 규정 등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고, 구조적으로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TMO 수송지원의 위법·불법 사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18	**예산에 미편성된 신규사업 추진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주요기관 교육용탄약(2339-304)	시정	국방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액은 3억 8,600만원었으나, 이전용 등(증)을 통해 예산현액은 209억 2,000만원이 되었는데, 이는 드론작전사령부에 배치할 소형자폭드론 총 100대를 구매할 목적이었음. ○ 소형자폭드론 획득을 위해 사용된 이전용 등(증) 규모는 204억 9,000만원으로 내역변경(함포교육용탄약, 항공교육용탄약, 지상교육용탄약) 및 자체전용(특수장비(유지))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였음. ○ 소형자폭드론 구매사업은 2024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으로, 예산 조정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 및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받지 않고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국회의 예산심의·확정 권한을 침해하였고,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목적 외 집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부적절한 예산집행이라고 보여짐.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향후 국회의 예산심의·확정 권한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고, 집행방식 등에 대해 국회가 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 조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9	**첨단과학훈련장비에 대한 계약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과학화훈련(2434-301)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첨단과학훈련장비 내역사업은 2024년 예산현액 531억 1,800만원 중 432억 3,3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86.3%으로 부진하였고, 70억원을 이월하였으며 28억 8,500만원을 불용했음 ○ 불용액은 4건의 집행부진 내역사업에서 발생했으며, 발생 원인은 계약지연 2건, 사업취소 1건, 낙찰차액 과다발생 1건임.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첨단과학훈련장비사업에 대해 사전검토와 단가산정 및 계약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0	**훈련장 시설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관리 강화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2436-302)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내역사업인 훈련장 시설사업은 연례적 집행부진사업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2022년 85.9%, 2023년 80.3%, 2024년 77.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육군 1사단 15여단 실내사격장 신축은 집행률 3.5%로 매우 저조하였다는 점에서 특별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임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훈련장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자체와의 협의사항 및 설계 시 고려사항 등을 반영하고, 집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연례적 집행부진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1	신규 사업 추진 시 국회 심의 준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부대훈련 및 지원(2438-301)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육군 국제 저격수 경연대회 신규추진(3억 5,400만원 집행)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신규사업을 국회 심의를 받지 않고 추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재정법」 제4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임. ○ 육군 국제 과학화전투 경연대회(K-ICTC)는 당초 편성액이 2억 2,100만원에 불과하였으나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8억 300만원을 집행한 것은 일부 부족한 예산에 대한 조정 수준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규모와 다르게 임의로 3배 이상 사업규모를 확대·집행한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와 육군은 기존에 편성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을 과다하게 확대하여 집행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조정 및 세부사업변경에 대한 심의기준을 강화하고, 향후 국회에서 심의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2	단기복무장려금 예산 편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간부확보장려사업(2439-301)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2024년도 단기복무장려금은 1인당 1,200만원으로, 예산현액 397억 3,700만원 중 329억 1,80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68억 1,900만원에 달함 - 예산 편성 대비 집행 인원이 적었던 근본적 이유는, 2024년 예산 편성 시 「군인사법」상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졸업생)을 대상으로 신규 예산 60억원을 편성하였다가 전액 불용한 데 있음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단기복무장려금 예산에 대한 근거 법률 개정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3	**충분한 정책 검토를 통한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방식 변경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사정책지원 (2439-306)	시정	국방부
		지적사항	○ 육군 학군사관후보생(ROTC) 선발 사업의 2024년도 예산은 필기시험 시행을 전제로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폐지 이후 온라인 인성검사와 추가 선발 모집에 해당 예산을 집행함 ○ 또한, 제도 변경을 예고 없이 즉시 시행함으로써 기존에 필기시험을 준비한 응시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함 ○ 대학 성적 반영 비율이 전체 배점의 20%에 불과하고 불합격 기준 역시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필기시험 폐지를 계기로 면접 비중을 40%까지 확대하였으나 AI 면접을 상반기에만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미실시하는 등 운영 일관성이 결여됨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육군)는 예산 목적 외 집행 문제를 방지하며,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발 제도를 보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4	비목 설정 오류에 따른 예산 과다 편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관사 및 간부숙소 (2532-301)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국방부(육군)는 2024년도에 새롭게 편성한 대관협의 및 신축 내역사업 중 일부 사업에 대하여 대관협의 목적의 예산 비목을 대관협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건설보상비(410-00)로 편성함으로써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됨 - 이에 따라, 2024년도에 추진된 육군 관사 및 간부숙소 관련 14건의 사업에 대해 기본설계비 및 건설보상비 31억 2,500만원은 과다 편성되어 집행되지 못하였고, 이는 공공요금 등 타 비목으로 전용하거나 조정하여 집행됨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육군)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사업 소요 및 예산 비목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5	**공공요금 예산의 적정한 편성을 통해 과도한 이·전용 발생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공요금(2536-302)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2024년도 공공요금 예산액 5,381억 1,000만원에 이·전용을 통해 증액한 1,688억 8,7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7,069억 9,700만원 중 7,068억 700만원을 집행함 - 국방부는 과소한 공공요금을 편성해 예산액의 31%에 달하는 금액을 이·전용을 통해 집행함 - 2020년 감사원, 2023년 국방위 결산심사과정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해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아니함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적정한 예산 편성을 통해 과도한 공공요금 이·전용을 통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6	**계룡대 주전력·예비전력 변전소 분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일반지원시설(2533-303)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계룡대는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따라, 주전력이 차단될 경우에도 예비전력을 통해 작전 수행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력 공급체계를 이중화하여야 하나, 주·예비전력 모두 상시공급 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아 전력 공급체계가 이중화되어 있지 않음 - 2024년 9월 11일 한국전력 서대전지사 송전선로 이상으로 약 36분간 정전이 발생함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국방·군사시설 기준」에 따라 계룡대와 같은 군 핵심시설의 예비전력이 주전력과는 다른 경로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과의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여 전력설비에 대한 정상작동 여건을 확보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7	**동원훈련장 현대화 사업 관리 강화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예비군훈련시설확보(2631-302)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2024년 전국 64개소 동원훈련장 중 생활관 16개소, 안보교육관 2개소, 식당 2개소에 대하여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생활관 개선 사업은 13곳이, 안보교육관 및 식당 개선 사업은 2건 모두 사고이월 됨. ○ 동원훈련장 현대화 사업의 일정 지연에 따른 과도한 사고이월 발생은 최근 5년간의 사업 수행 실적을 감안했을 때, 2024회계연도에 국한된 이례적 현상이 아니라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로 파악됨.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현재의 사업 집행 관리 방식을 개선할 방안을 검토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 추진 계획이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28	**연합지휘통신체계 사용 연례적 이전용 재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연합지휘통신체계사용(5132-302)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2024년도에서는 동 사업의 부족 예산을 위해 2300프로그램 예산(기동장비(유지)(2333-305), 항공장비(유지)(2333-307))에서 총 73억 1,400만원을 전액 이용(예산이 정한 각 기관·장(분야)·관(부문)·항(프로그램) 등 입법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충당 ○ 동 사업은 5100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 프로그램의 목표는 국방정책 전반의 체계적인 연구분석으로 합리적인 국방정책 수립 및 정책 대안 개발이라는 점에서 장비·물자·탄약 등의 획득·운영 및 유지로 전투준비태세 확립 및 전투지원 능력을 확보하고, 군 재난의 예방·대응·복구를 위한 장비·물자 확보로 재난대비태세 확립 및 적극적인 대민업무 지원을 목표로 하는 2300 프로그램과 성격이 상이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연례적 이전용을 통해 예산을 충당하는 현 방식을 주한미군사와 협의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고, 예산 충당이 필요한 경우 최대한 동일 프로그램 내에서 재원을 마련하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29	**재외공관 주재무관 포상금 집행 근거의 법제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무관부 활동(5135-301)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국방부는 무관평가에 따른 포상금을 법령이 아닌 훈령에 근거하여 집행하고 있어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하고 있음. 무관평가에 따른 포상금은 2014년 이후에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대한 이해도 부족 ○ 또한 국방부 수행사업 중 부대운영지원 사업, 예비전력운영지원 사업, 병양성교육 사업, 간부양성교육 사업, 군사대학교육 사업에 따른 포상금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집행이 되고 있는데, 사업에 따른 다른 기준(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적용하는 것도 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무관활동 평가를 실시하여 지급하려는 포상금이 법령의 근거가 없이 집행될 경우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속히 법령의 근거를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0	타부처와의 공동 사업 진행시 예산소관과 계약 주체 일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방행사지원(7131-313)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국방부는 외교부와 국제회의(제2차 REAIM 회의) 공동개최시 운영대행 업체 또는 임차업체와의 계약을 국방부 명의로 체결하지 않고도 그 대금을 국방부 예산으로 집행(25억 600만원)하여 정산하였음 ※ REAIM: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 (Responsible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Military domain Summit) ○ 이와 같이 지출원인행위 없는 예산의 집행은 국가재정법, 국가계약법 등에서 규정한 집행방식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향후 다부처 공동사업을 시행 시 법률상 계약의 당사자성을 확보하여 예산 집행의 근거를 명확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1	**대규모 이용액 발생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군 배상금(7136-301)	시정	국방부
		지적사항	○ 일반배상금은 2021년 이·전용 규모가 10억원으로 소규모였으나, 2022년 162억 9,400만원, 2023년 606억 9,300만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데 이어, 2024년에도 국방부 이·전용 사업 중 중 가장 큰 규모의 이용 증액 1,180억 4,900만원이 발생하였음 ○ 이용규모의 증가는 국방부가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위자료) 배상에 관한 2022년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하여 과거사로 인한 배상금 지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예산을 170억 8,900만원으로 과소편성하였기 때문임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군 배상금에 대하여 관련 소송 경과 및 기존 피해자 통계 등을 분석하여 배상금 소요를 면밀히 추계하여 연례적으로 다른 사업으로부터의 대규모의 이용 재발을 방지하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2	**이·전용 규모 축소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총괄(이·전용액)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2024년도 국방부의 이용액은 1,293억원이고, 전용액은 3,929억원으로, 이를 합한 이·전용액은 5,222억원으로, 전년 대비 2,186억원 증가하였음 ○ 이·전용 규모의 확대는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배상금 등의 일반배상금 지급이 증가할 것이 예상되었고, 전기요금의 인상 등으로 공공요금 집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산을 과소편성하였기 때문임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예산 편성과 집행의 불일치를 축소하기 위하여 예산소요에 대한 면밀한 추계를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전용의 요건인 예산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에 부합하지 않는 전용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3</td><td rowspan="3">각군
관서운영경비
지급범위
초과집행 주의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총괄</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방부</td></tr>
<tr><td>지적사항</td><td>○ 2024년도 각군의 운영비(210) 집행내역을 보면,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따른 관서운영경비 지급범위(건당 500만원)를 초과하여 집행한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어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과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를 위반하는 문제 발생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초과집행 현황]
<table>
<tr><th>구분</th><th>비목</th><th>초과
집행 건수</th><th>비고</th></tr>
<tr><td rowspan="3">육군</td><td>210-01</td><td>7건</td><td>해외파병부대 긴급항공수송(5) 및 긴급행사지원(1), 교통안전체험(1)</td></tr>
<tr><td>210-03</td><td>2건</td><td>신병 명찰부착비, 정비피복 구매비</td></tr>
<tr><td>210-04</td><td>16건</td><td>자율운영 급식(4), 지역상생 장병특식(4), 특수근무자 증식(4) 등</td></tr>
<tr><td>해군</td><td>210-01</td><td>1건</td><td>국제 해양안전대전 참가비</td></tr>
<tr><td>공군</td><td>210-01</td><td>4건</td><td>차량정비능력향상교육비(4)</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
사항</td><td>○ 국방부(각군)는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 예규」등 재정관련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관서운영경비 지급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4	**관서운영경비 법인카드의 체크카드 비중 확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총괄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관서운영경비는 정부구매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정부구매카드의 종류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체크카드)을 규정 ○ 2025년도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보면, 신용카드의 경우 연간 매출액에 따라 0.40~1.45%인데 반해, 체크카드는 0.15~1.15%로 체크카드의 수수료율이 더 낮게 책정 ○ 현재 국방부 정부구매카드 중 체크카드 보유비율은 4.3%로 낮은 수준임.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영세·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 부담 완화를 위해 체크카드의 발급건수 및 사용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5	군 드론 정의·인력·관리 전반의 제도 정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총괄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국방 영역에서 드론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혼선 발생 - 「군 차량 및 드론 보험업무 훈령」에서는 드론을 협의의 '무인비행장치'로 한정하고 있으나,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에서는 '무인비행장치·무인항공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드론법상의 광의 개념과도 혼재되는 상황임. ○ 드론 전문 운용인력의 확보·양성 및 운용 지침 마련이 미흡한 실정 - 현재 각군에서 드론 특기병 및 전문부사관을 선발하고 있으나, 규모와 방식이 군별로 상이하며 중·장기적 인력 양성 로드맵도 부재함. 또한 드론 운용 절차서·교범 등이 부대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정 여부조차 파악이 어렵고, 총괄적인 관리지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드론 등록·관리체계의 미비 문제 - 현행 「군 차량 및 드론 보험 업무 훈령」에서만 DTIS(국방수송정보체계) 등록을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가입 대상이 되는 '협의의 드론'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실제로 DTIS는 보험가입 업무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비행실적은 전혀 입력되지 않고 있고, 제원 입력 오류 사례도 다수 발생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군사영역에서 드론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임무·기능에 따른 체계적인 분류 기준을 정립하며 드론 전문인력의 양성 제도와 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국방부 차원의 표준화된 운용 지침을 제정하며 모든 군 보유 드론이 국방수송정보체계(DTIS)에 등록될 수 있도록 등록해야 하는 드론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목적·기능·제원 등을 정확히 입력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보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6	**군 드론 보험가입 기준 및 관리체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총괄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군 차량 및 드론 보험업무 훈령」은 2024년 소형자폭드론 도입과 함께 ‘지휘관 판단 하 보험가입이 불필요한 경우 제외’라는 단서를 추가하였음. ○ 그러나 판단 가능한 지휘관의 범위와 판단 요건이 제시되지 않아, 지휘관에게 가입 여부 판단에 관한 과도한 재량을 허용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보험가입 후 조정’ 원칙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음. ○ 「군 차량 및 드론 보험업무 훈령」제3조는 DTIS에 입력된 운행실적을 근거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 그러나 현재 국방부는 시스템 미비로 운행실적을 입력하지 않고 있어, 군 차량과 달리 드론은 운행실적과 무관하게 일괄 보험료가 책정되고 있음.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군 차량 및 드론 보험업무 훈령」 규정의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하고, 보험 미가입 드론 운용 시 피해배상 대책도 마련하며 드론 등록·운행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누락을 방지하고, 종류별 적정 보험료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7	초빙강사 지급 기준 정립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총괄(초빙강사 지급 기준)	시정	국방부
		지적사항	○ 국방부 및 각 군별 초빙강사료 지급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군에서 양성되지 않는 특정 분야에 대해 이루어져야 할 외부전문가 초빙강연이 내부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용역사업으로 악용되고 있음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초빙강사 지급 실태를 확인하여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국방예산운영지침」에 명시하고, 초빙강사료 오집행이 남용되지 않도록 국방부 감사 시 확인을 통해 시정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8</td><td rowspan="3">민간근로자
퇴직급여 적립
미흡 및 형평성
저해</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총괄</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방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국방부 민간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받으며 기관·제대별 노사협약에 따라 퇴직금·퇴직연금제도를 각각 운영하고 있으나,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제대 중 최소 5개소가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하지 않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최소 11개 기관은 법정 최소적립금 요건에 미달하여 법 위반 가능성이 확인됨
[‘퇴직금 제도’ 선택 기관 중 퇴직금 미적립 사례]
<table>
<tr><th>기관명</th><th>근로자 수</th></tr>
<tr><td>국방부 본부</td><td>34</td></tr>
<tr><td>육군본부(전투준비안전단)</td><td>466</td></tr>
<tr><td>해군본부</td><td>40</td></tr>
<tr><td>공군본부</td><td>47</td></tr>
<tr><td>국방부 조사본부</td><td>26</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
사항</td><td>○ 국방부는 고용부담금에 포함된 퇴직부담금을 각 근로자의 퇴직적립금으로 관리하고, 적립 미이행 기관·제대에 대해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으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법정 최소적립 의무도 철저히 준수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9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군수품 지원 내역 조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총괄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관련해서, 전 정부에서 장애물 개척전차, 카고트럭, 지뢰제거장비 등 17종·300억원 이상의 군사장비를 무상대여 형식으로 지원함 - 국방부는 무상대여 계약에 대해 이미 회계상 불용·재산삭감 처리를 완료함 - '장애물 개척전차'는 국군에 2027년 보급 예정이나 우크라이나에 먼저 무상 제공됨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해당 군수품 지원이 감행되었는지에 대해 자체 조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0	**정화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집행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환경조사 및 치유(4232-302)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동 사업의 연도별 집행률은 2021년과 2022년 70%대였고, 2023년 95.1%에 달하였으나, 2024년에는 정밀조사 및 문화유산조사 등의 절차가 지연되어 집행률이 46.2%로 급격히 하락하였음.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향후 기지별 설계 및 정화사업 추진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집행관리 미흡으로 집행률 저조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1	**17사단 대관협의 절차 이행 소홀에 따른 사업 지연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 부대개편 7차 사업(4131-482)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2024년 17사단 직할대 개편, 17사단 10화생방대대 개편, 17사단 항공단 개편, 17사단 본부대 개편 사업 예산액 중 각각 사업별로 95% 이상을 이·전용, 조정을 통해 감액함으로써 사실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음 - 이는 인천광역시의 관련 법령 오인으로 인한 대관협의 지연 및 국방부의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 관리훈령」에 따라 시설소요 제기 이전에 개발제한구역 관련 대관협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기인함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부대개편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관협의 등 규정상 절차를 적기에 이행하지 않아 사업 승인 지연 및 예산 집행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2	**운용수익률 상향을 위한 자산관리 강화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군인연금기금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군인연금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수익률은 2023년 7.93%에서 2024년 4.79%으로, 전년 대비 3.14%p 하락하였음 ○ 군인연금기금의 기금적립금 규모는 2021년말 1조 3,408억원에서 2024년말 8,903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기금 적립률은 2021년 4.6개월에서 2024년 2.5개월로 감소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었음.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군인연금기금의 여유자금의 운용수익률을 상향하기 위한 종합적인 자산운용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3	군 관사 장기 미퇴거에 대한 관리강화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군인복지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관사퇴거지연에 따른 각 군별 퇴거지연관리비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445건에서 2021년 591건, 2022년 732건, 2023년 900건, 2024년 1,279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음 ○ 육군의 징수건수는 2020년 161건에서 2024년 774건으로 613건(380%) 급증함으로써 전체 징수건수의 증가분의 73%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육군의 관사 퇴거지연에 대한 관리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장기 관사퇴거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를 강화하고, 장기 관사퇴거지연에 대한 지연금 부과수준 인상 및 제재 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4	**적정 가산금리 책정과 협약은행 추가 필요**	관련사업명	군인복지기금 -군간부전세자금이자지원(2240-640)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2024년 11월부터 계약자부터는 계약자부터 신잔액기준 COFIX + 1.55%로 재협약되었음. ○ 가산금리 재협약 시점인 2024년 11월 기준, 우리나라 5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평균 (순)가산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는 약 1.07% 수준임 ※ 군인공제회의 회원대여제도의 경우 기존 2개 은행에서 취급하였으나, 2024년 9월에 1개 은행을 추가함으로써 3개 은행에서 회원대여를 취급하도록 개편하는 등의 적극적 노력을 병행하여 전반적으로 낮은 (순)가산금리(A은행 기준, 2024년 11월 0.78%, 2025년 6월 0.38%)를 적용하여 대여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군간부전제자금이자지원사업의 가산금리가 시중 가산금리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협약은행 추가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나. 병무청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1	**병역판정검사 사업 예산 불용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병역판정검사(1131-301)	제도개선	병무청
		지적사항	○ 병역판정검사 수요는 매년 비교적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불용이 5% 이상 발생하여 예산 편성의 정확성이 떨어짐. ○ 불용 사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고, 검사 대상자 규모 등 예측 능력이 미흡함. ○ 예산 불용이 반복될 경우, 다른 긴급 사업 재원 분배에 영향을 주어 예산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 사항	○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인원 및 소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계획을 정밀히 수립하여 불용률을 최소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2	**잠복결핵 위탁검사 예산 불용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병역판정검사(1131-301)	제도개선	병무청
		지적사항	○ 잠복결핵 위탁검사 예산은 당초 예산 편성되었던 단가(16,000원)보다 계약단가(12,400원)가 낮게 형성되어 과도한 예산 불용이 발생함. ○ 지속적으로 계약단가가 예산 편성 단가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고, 그 차이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할 시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시정요구 사항	○ 병무청은 향후 잠복결핵 위탁검사 예산 편성 시 단가 변동 추세를 보다 면밀히 반영하여 예산 과다 편성으로 인한 불용을 최소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3	**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 이용 활성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현역병모집(1232-303)	제도개선	병무청
		지적사항	○ 현역병모집 사업 예산 중 37억 9,600만원(예산 현액 대비 약 87%)이 병역진로설계 사업에 사용됨. ○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이용률(의무자 수 대비 센터이용자 수)은 다소 낮은 수준임.(2024년 25.0%) ○ 센터 이용률이 낮은 원인 중에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주요 병무행정·민원 처리가 이루어지는 각 지방병무청과 지리적으로 분리·설치되어 있어 시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있다고 파악됨.		
		시정요구 사항	○ 병무청은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방문 여건을 개선하고, 통합적인 병무 행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센터 이용률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4	**국외병역자원 관리 실효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현역병입영(1232-305)	주의	병무청
		지적사항	○ 국외자원관리 사업에 1억 3,600만원을 예산 편성하고 있음. ○ 예산 대부분이 병역 이행 정보 책자 발간, 병역 의무자 출국 시 배부하는 안내문 제작 및 SNS 광고에 사용되고 있음. ○ 단순히 병역 이행 안내에 그치는 소극적인 사업 수행 방식으로는 국외 병역 자원 충원 규모를 확대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임.		
		시정요구 사항	○ 병무청은 저조한 국외 병역 자원의 병역 의무 이행 제고를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 홍보 확대, 병역 이행 유인책 마련 등 국외 자원 관리 사업 수행 방식의 다각화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국외 병역 자원을 충원하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5	**집합·대면 방식 전시업무교육 확대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병력동원소집관리(1232-308)	제도개선	병무청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 전시업무교육을 현재 집합·대면 방식과 온라인·비대면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전면 집합·대면 방식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전시업무교육 실적이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시업무교육 점검 결과의 평가 반영 기준 수립이 필요함.		
		시정요구 사항	○ 병무청은 전시업무교육 실효성 증대를 위하여 집합·대면 방식 교육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에 전시업무교육 실적이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평가 반영 기준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6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인원 감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1434-320)	제도개선	병무청
		지적사항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인원이 2019년 이후 매년 만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소집 완료자 대비 전시근로역 처분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2024년 43.6%) ○ 병역자원 감소 시대에는 병역 의무의 형평성이 중요한데 이에 비추어 볼 때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인원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음.		
		시정요구 사항	○ 병무청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수요 감소, 지역별 수급 불균형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인원을 감소시킬 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7	**대체역심사위원회 사무국 조직 개편 방안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대체역 편입 및 소집(1434-323)	제도개선	병무청
		지적사항	○ 대체역심사위원회 운영 상황과 대체역 편입 신청 감소 등을 감안하여,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3.6.30. 시행)을 통하여 대체역심사위원회 위원을 13인으로 축소한 바 있음. ※ 대체역 편입 신청 건수 : 1,962건(2020년) → 574건(2021년) → 338건(2024년) ○ 대체역심사위원회 지원 조직인 사무국은 출범 당시부터 현재까지 약 31명 규모의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시정요구 사항	○ 병무청은 대체역심사위원회 행정 업무 소요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체역심사위원회 사무국 조직 구성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8	**지하상황실 구축 사업 예산 전용 집행 적정성 검토 및 재발 방지**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병무행정운영(7134-317)	주의	병무청
		지적사항	○ 병무청은 정부 방침에 따라 2024회계연도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지하상황실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총 2개월간의 공사를 통해 지하상황실을 구축 완료함. - 기획재정부 예산 전용 승인을 거쳐 병역의무자지원 세부사업에서 기타보전금 4억 2,000만원을 전용 재원으로 하여, 병무행정운영 세부사업 중 자산취득비에 2억 8,000만원, 공사비에 1억 4,000만원을 각각 전용함. ○ 지하상황실 구축 사업은 국회가 2024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심의·확정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집행한 것으로, 예산 전용 시 요구되는 사업 간 유사성, 재원 사용의 시급성, 기관운영 필수 경비 여부 등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 ○ 지하상황실 구축은 비상 대비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병무청의 시설 점검 및 개선 차원이었을 것임		
		시정요구 사항	○ 병무청은 지하상황실 구축 사업이 진행된 사유 및 경위를 조사하고, 향후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예산 전용을 통해 추진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9	**사회복무요원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사업 실적 제고 필요 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병역의무자지원(7135-314)	제도개선	병무청
		지적사항	○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원격강좌 수강료 및 수수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사회복무요원의 원격강좌 수강료·수수료 지원 실적이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2024년 지원비율 5.9%) ○ 원격강좌 수강료·수수료 지원 사업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매년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고 있음.		
		시정요구 사항	○ 병무청은 보다 많은 사회복무요원이 원격강좌 수강료·수수료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 강화 등 사업 실적 제고 방안과 사업 수요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방안을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10	**병역의무자지원 사업 불용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병역의무자지원(7135-314)	제도개선	병무청
		지적사항	○ 2024년도 병역의무자지원 사업 예산 1,933억원 중 176억원이 불용되어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의 정확성이 부족함. ○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집행 수요가 비교적 예측 가능한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산 편성의 신뢰성이 저하됨. ○ 사회복무요원 지원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금 지급 등은 대상 규모와 지급 단가가 명확히 산정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용이 크게 발생함.		
		시정요구 사항	○ 병무청은 사업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편성 정확성을 높여, 사업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것.		

다. 방위사업청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1	**대규모 연구개발사업의 사전 영향분석 등 절차 강화**	관련사업명	제2장 일반회계 - 425사업(R&D)(2131-310)	제도개선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다출처영상융합체계(기본형) 개발사업 결과와 기술적 변수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예산 증액과 사업 지연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운용 시기가 늦어져 전력화 공백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사항	○ 방위사업청은 대규모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사전 영향분석과 위험관리 절차를 강화하고 총사업비 증액과 일정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방위사업청은 다출처영상융합체계(기본형) 개발사업의 결과에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등 미진한 사업관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2	**사업추진 전 과정의 관리 부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관리체계 재정비**	관련사업명	제3장 일반회계 - 수중자율기뢰탐색체(R&D)(2131-358)	주의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당초 2023년 종료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체계개발계획 확정 지연, 운용시험평가 중 결함 발생, 재시험 등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의 관리 소홀로 사업이 1년 6개월 이상 지연되고, 후속 양산사업도 연기되어 전력화 일정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음. - 이는 사업계획 수립의 미흡과 시험평가 관리 실패, 품질관리 부재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2024년도에는 사업종료 연도임을 고려해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으나, 납품대금 잔액 지급을 위해 12억원을 전용 집행함.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수중자율기뢰탐색체 사업의 전 과정에서 드러난 관리 부실을 철저히 조사·분석하고, 후속 양산사업에서는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전 주기에 걸친 관리체계와 시험평가 절차를 재정비할 것 ○ 방위사업청은 수중자율기뢰탐색체 사업 등 핵심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산의 전용에 의존하지 않고 본 예산 단계에서 정확히 반영해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3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확인 및 개선방안 마련	관련사업명	제4장 일반회계 - 창공모델 성능개량(R&D)(2131-360)	주의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2022년 방첩사령부의 보안정책 강화에 따라 암호장비 및 망분리장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이후 일련의 절차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업종료 시점인 시험평가 단계에서 뒤늦게 반영되는 등 사업관리 부실이 발생함. ○ 방위사업청은 2023년 7월 해당 사정을 인식했음에도 2024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편의적으로 비용을 집행하여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함.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창공모델 성능개량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해 검토하여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향후 추가 사업소요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사전 검토 및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 집행하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 방위사업청은 창공모델 성능개량에서 중요한 서버용암호장비 등의 필요성이 시험평가 단계에서 비로소 검토되는 등의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전준비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4	**패키지시설사업의 공사비 중도금 집행 주의**	관련사업명	제5장 일반회계 - 항공관제레이더(PAR)(2132-332)	주의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의 해군항공사(포항)의 패키지시설사업은 사실상 계약 1년차인 2024년도에 공사대금 중도금 지급을 위하여 당초 2024년도 예산에 자체 조정액 등을 더하여 16억 1,400만원을 확보하였는데, 이것은 오히려 공사 계약금액 15억 2,300만원보다 많은 액수임. 그리고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실제로는 11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음. ○ 공사 기간이 2023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간이며, 당초 2024년도 예산액 및 공사의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면 불필요한 예산의 조정을 통한 공사비 집행으로 보임.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패키지시설사업에서 당초 계획된 연부액이나 공사 진행 정도에 부합하지 않는 중도금 집행 등을 지양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5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과 예산집행원칙을 저해하는 이·전용 지양**	관련사업명	제6장 일반회계 - 항공통제기 2차(2132-343)	주의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방위사업청은 사업 추진의 첫 단계인 대상기종 선정 및 구매계약 체결 등의 일정을 전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의 진척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미집행 예산을 그대로 불용하거나 일부만 이월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연말에 동 사업과 관련이 없는 '공지통신무전기 성능개량 사업'으로 자산취득비 예산액 307억을 자체 전용해 형식적인 예산 집행률만 높이고 있음. - 반복된 유찰과 협상 실패로 예산 집행률이 0.3%에 불과함.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실질적인 사업의 진전은 없으면서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률만을 높이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과 예산집행원칙을 저해하는 예산 이·전용 집행을 지양할 것 ○ 방위사업청은 대규모 해외 구매사업의 경우 계약 및 시험일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예산을 과다 계상하지 말고 집행가능성을 사전에 검증하여 편성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6	**전력화 추가 지연 방지를 위한 납품준비 등 세심한 사업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근거리 정찰드론(2132-359)	주의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2024년 예산안 국회 심사 시에는 2023년 12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예산액을 납품대금으로 집행하려 하였으나, 구매시험평가 일정 지연 및 후순위업체측의 고발에 따른 수사로 인해 업체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납품대금이 이월되어 전력화에 차질을 빚고 있음. ○ 2024년 예산 집행률이 25.4%에 불과하는 등 집행률이 매우 저조함.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당초 계획보다 3년 지연된 근거리 정찰드론 사업의 추가 지연을 막고 현대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정찰드론의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납품관리 등 세밀한 사업관리에 주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7	구매시험평가 지연 등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잠수함지휘통신체계 경미한 성능개량(2132-366)	제도개선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지적사항	○ 방위사업청은 동 사업의 구매시험평가는 「방위사업법」상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가 원칙임을 고려해 당초 구매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제안서평가 후에 업체의 사정이나 시험평가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구매시험평가 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음.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잠수함지휘통신체계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이 추가 지연되지 않고 적시에 전력화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계획을 세밀히 마련하고, 합동참모본부는 구매시험평가 계획 수립 지연의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8	**구매시험평가 및 성능 확인 등 공정한 절차 진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다목적무인차량(2132-386)	제도개선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방위사업청은 구매시험평가의 기종결정 과정에서 '최대성능 수치' 관련 경쟁업체 간의 이견 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 이는 경쟁업체가 다른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일반성적서 및 일부 공인성적서의 성능수치를 제출함으로 인해 최대수치 논란이 심화된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다목적무인차량 사업 추진 시 구매시험평가 및 성능 확인 등 절차를 공정하게 추진하여 집행률 저조와 대규모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동 사업이 신속한 전력화 필요성에서 긴급 소요결정으로 추진되는 만큼 조속히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구매절차 등에서 제안서에 기재되는 성능 수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인증자료를 제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9	**사업 지연에 따른 전력 공백 보완방안 마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40mm고속유탄기관총-II(R&D)(2231-343)	주의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방위사업청은 동 사업의 연구개발업체 선정을 위하여 2024년 3월과 5월 두 차례의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응모자가 없어 유찰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한 전력 공백이 우려됨. - 유찰 등의 원인은 현재 기술 수준과 업계의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작전요구성능의 과도한 설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2024년도 예산 집행률이 1.7%에 불과하고 연구개발비 대부분이 불용됨.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40mm고속유탄기관총-II 사업의 작전요구성능 수정 및 사업타당성 재검증 등 세밀한 준비를 통해 동 사업이 추가 지연되지 않고 시급히 전력화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와 예산집행에 각별히 주의하고, 사업 지연에 따른 전력 공백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10	국회의 심의 없는 감리비 예산의 증액 집행 지양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자주도하장비(2232-320)	주의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시설공사(정비고 등) 감리비를 당초 1억 8,500만원에서 15억 7,100만원으로 증액시키는 결과를 야기하였고, 예산 집행과정에서 감리비 증액 논의를 이유로 전력화가 시급한 사업을 사실상 중단시켜 사업 지연을 초래함. - 더구나 육군공병학교 시설사업의 경우 감리비가 2.8천만 원으로 공사비 대비 1%인 반면, 육군공병여단의 경우 공사비 182.8억 원에 감리비는 15.7억원으로 8.6%를 차지함. ○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시행되었으므로 2024년도 이전에 감리비 증액 등을 미리 검토하여 2024년도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그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심의를 받았어야 함.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전력화가 시급한 방위력개선사업의 중단과 지연을 초래한 자주도하장비 사업의 집행 과정에 대한 전후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여 바로 잡을 것 ○ 방위사업청은 향후 감리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예산편성지침 등을 준수하는 한편,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액을 초과해 집행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11	**신뢰도시험 일정을 고려한 적정 예산의 편성 및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단안형야간투시경 경미한 성능개량(2232-389)	주의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의 신뢰도시험 등 추진 과정에서 2023년도에는 30억 6,600만원 중 30억 4,000만원이 2024년도로 이월되었고, 2024년도에는 2023년도 이월된 예산액과 2024년도 예산액을 합한 64억 5,000만원이 2025년도로 재이월되었음. ○ 이와 같이 202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실질적인 진전이 없이 3년간 지체된 와중에도 2024년도 국내여비 등 예산액을 다른 사업으로 내역변경하는 등 예산을 집행하였음.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단안형야간투시경 경미한 성능개량 사업이 3년간 지연되었으므로 신속히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향후 신뢰도시험 일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12	**조종사 교육생 교육지연 보완방안 마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소형무장헬기(R&D)(2431-301)	주의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의 조종사 교육생 훈련센터 건설 사업은 동절기 공사중지, 레미콘 수급 지연,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조종사 교육 일정도 늦추어짐. ○ 연말에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선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미집행 예산을 이월하는 등 사업의 진척은 없으면서 관련 예산만을 형식적으로 집행하는 결과를 야기함.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소형무장헬기 사업의 조종사 교육생 훈련센터 건설 지연으로 전력 공백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진척도에 맞게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3	**사업지연에 따른 전력공백 방지 및 과도한 예산의 전용 등 방지대책 마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한국형구축함(KDDX)(2332-303)	주의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2029년 선도함을 양산할 계획이었으나, 상세설계 단계에서 경쟁업체의 고발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 2024년 예산액 498억 400만원 중 0.9%인 4억 5,100만원만 집행함. - 더구나 2024년 국회 예산안심사에서 사업 추진경과를 고려하여 정부 편성액에서 500억원을 감액한 바 있음. ○ 나머지 예산액 493억 5,100만원(99.1%)은 검독수리·장보고·울산급 함정 사업 등으로 전용함.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한국형구축함 사업이 당초 계획 대비 2년 이상 지연되어 전력 공백이 우려되므로 추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방위사업청은 한국형구축함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의 불용·전용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4	탄약 소요 예산을 사전에 반영해 국회 심의 받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검독수리-B Batch-II(2332-305)	주의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현재 운용중인 고속정이 노후화됨에 따라 유도로켓과 탄약이 탑재된 고속정을 국내 건조하는 사업으로, 예산 편성 시 최소주문수량 미달로 탄약 구매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으나, 2024년 도중 함정사업 전체 탄약 소요량과 해군본부에 반환할 탄약 소요량의 합계가 최소주문수량에 도달함으로써 계획에 없던 탄약 구매를 위해 관련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음. - 한국형구축함 사업에서 30억원을 전용하여 탄약 계약 납품대금으로 집행하였음.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향후 탄약 소요량을 미리 전수 조사하여 최소주문수량을 파악한 후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고 국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15	사업의 핵심변수에 대한 사전 검증 강화 및 정확한 예산 반영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Block-III(R&D)(2531-378)	제도개선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총사업비 8,687억 7,100만원 규모로, 2024년~2029년 기간 요격성능과 동시교전능력을 강화한 유도무기를 개발하는 연구개발사업임. ○ 탑재 플랫폼(트레일러, 트럭) 결정 지연으로 연구개발 및 계약 일정이 지체되었으며, 예산 불용의 주요 원인이 됨. - 2024년도 예산현액 2억 6,500만원 중 3,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12.1%임. ○ 동 사업은 북한 미사일과 장사정포 위협 대응을 위한 핵심 전력 사업임에도 불용이 발생하여 개발 및 전력화 일정이 지연되고 전력공백이 발생함.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체계개발사업의 편성 시 플랫폼 선정 등 핵심 변수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사업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과다 계상을 지양하는 등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확보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6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저해하는 예산의 과다 이·전용 주의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총괄(예산 이·전용 문제)	주의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2024년도 전용액은 1,308억원이고, 이월액은 전년 대비 327억원이 증가한 2,961억 9,550만원임. - 한국형구축함(KDDX) 사업은 예산의 대부분을 불용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용함(493억 5,100만원). -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체계(R&D) 사업은 패키지시설 사업에서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2억 4,284만원)을 자산취득비에서 전용해 집행함.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시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과 예산집행원칙을 저해하는 과다한 예산 이·전용을 지양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17	**국외출장 수요를 현실적으로 반영한 국외업무여비 편성**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제방산협력지원(2637-300)	제도개선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국제 방위산업 협력 내역사업 수행을 위한 2024년도 국외업무여비는 4억 6,100만원이었으나, 5억 3,700만원을 다른 사업 등에서 전용해 당초 예산액의 215%인 9억 9,500만원을 집행하였음. ○ 출장 수요가 예측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금액으로 편성한 뒤 전용으로 보전하는 방식이 반복되어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저해됨.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국외 출장 수요를 현실적으로 반영해 국외업무여비를 편성하고 다른 사업으로부터의 예산 전용에 의존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안)</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8</td><td rowspan="3">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실효성
확보 노력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방산분야 인프라 및 상생협력 환경조성(2637-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방위사업청</td></tr>
<tr><td>지적사항</td><td>○ 동 사업은 방위산업 전문인력으로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 학생 교육과정, 대졸 미취업자 과정, 방위산업 석·박사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음.
○ 그 중 특성화고 학생 교육 과정은 학교와 방산업체에서 교육을 실시한 후 방산업체에 취업 매칭하는 제도인데 2022년 과정 시행 이후 매년 중도 퇴사자가 발생하고 있음.
<table>
<tr><th>구분</th><th>2022년도</th><th>2023년도</th><th>2024년도</th></tr>
<tr><td>계획 교육생 수</td><td>10명</td><td>30명</td><td>30명</td></tr>
<tr><td>실제 교육생 수</td><td>6명</td><td>25명</td><td>32명</td></tr>
<tr><td>계획 취업자 수</td><td>6명</td><td>25명</td><td>32명</td></tr>
<tr><td>실제 취업자 수</td><td>6명</td><td>24명</td><td>32명</td></tr>
<tr><td>중도퇴사자 수</td><td>1명</td><td>9명</td><td>9명</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
사항</td><td>○ 방위사업청은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에서 중도 퇴사자 발생을 방지하여 방산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K-방산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td></tr>
</table>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안)</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9</td><td rowspan="3">소송 패소에 따른
국고 손실금
축소를 위한
개선방안 강구</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기타행정지원(7036-304)</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방위사업청</td></tr>
<tr><td>지적사항</td><td>○ 방위사업청은 최근 5년(2020~2025.8) 동안 총 298건의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연도별 소송제기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table>
<tr><th>구분</th><th>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h>2024년</th><th>2025년</th></tr>
<tr><td>제소</td><td>95</td><td>5</td><td>15</td><td>19</td><td>17</td><td>22</td><td>17</td></tr>
<tr><td>피소</td><td>203</td><td>37</td><td>42</td><td>31</td><td>38</td><td>46</td><td>9</td></tr>
<tr><td>계</td><td>298</td><td>42</td><td>57</td><td>50</td><td>55</td><td>68</td><td>26</td></tr>
</table>

○ 패소에 따라 5년간 약 3,032억원이 소송비와 패소금액으로 집행되어 국고 손실 발생하였음.

(단위 : 백만원)
<table>
<tr><th>구분</th><th>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h>2024년</th><th>2025년</th></tr>
<tr><td>패소건수</td><td>33</td><td>11</td><td>12</td><td>5</td><td>2</td><td>3</td><td>-</td></tr>
<tr><td>소송비</td><td>190</td><td>8</td><td>40</td><td>29</td><td>9</td><td>36</td><td>68</td></tr>
<tr><td>패소금액</td><td>303,042</td><td>106,610</td><td>58,766</td><td>65,088</td><td>1,956</td><td>70,585</td><td>37</td></tr>
<tr><td>계</td><td>303,232</td><td>106,618</td><td>58,806</td><td>65,117</td><td>1,965</td><td>70,621</td><td>105</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
사항</td><td>○ 방위사업청은 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의 원인분석을 토대로 관련 규정 개정 등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국고 손실을 방지할 것</td></tr>
</table>

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 해당없음

3. 시정요구사항(예비비) : 해당없음

4. 부대의견

○ 국방부는 소형자폭드론 구매 관련 과도한 예산 이·전용에 대해 자체 정책감사를 실시한다.